
난민업무 지침

2022. 9.



법 무 부
난 민 정 책 과

< 제·개정 연혁 >

- 2013. 06. 28. 난민인정업무 처리지침 제정
- 2013. 07. 24. 난민처우지침 제정
- 2014. 02. 07. 난민인정 심사, 처우, 체류지침으로 통합
- 2014. 07. 04. 일부 개정
- 2015. 04. 16. 일부 개정
- 2015. 04. 27. 일부 개정
- 2016. 07. 27. 일부 개정
- 2016. 10. 07. 일부 개정
- 2017. 06. 30. 일부 개정
- 2018. 02. 12. 일부 개정
- 2018. 07. 31. 일부 개정
- 2018. 10. 01. 일부 개정
- 2019. 07. 01. 일부 개정
- 2020. 04. 17. 일부 개정
- 2022. 09. 28. 일부 개정

목 차

I. 총 칙	1
1. 개 요	1
2. 안내자료 게시 및 업무처리 절차도	4
3. 관할구역	5
II. 난민인정 신청 및 심사 절차	7
1. 신청 및 접수	7
2. 면 접	14
3. 사실조사	30
4. 신원검증	33
5. 가족결합 심사 등	35
6. 난민 인정·불인정 결정	38
7. 난민 인정·불인정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41
8. 이의신청 접수·보고	44
9.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및 철회	46
10. 난민소송 제기 및 확정 시 조치사항	53
11. 자료 등의 열람·복사	54
12. 인적사항 등의 공개금지	57
III. 출입국향 난민인정 신청 및 심사	59
1. 일반사항	59
2. 신청 및 접수	59
3. 면담 및 사실조사	61
4. 회부·불회부 결정	63
5. 회부·불회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66
6. 난민임시상륙허가	69
7. 출입국향 면담조서 등 정보공개 및 열람·복사	70

IV. <u>난민인정자 등 체류관리</u>	71
1. 체류관리 일반원칙	71
2. 난민신청자 체류관리	75
3. 인도적체류자 체류관리	88
4. 난민인정자 체류관리	95
V. <u>난민인정자 등의 처우</u>	115
1. 개 요	115
2. 난민신청자의 처우	116
3.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129
4. 난민인정자의 처우	130
VI. <u>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u>	139
VII. <u>벌칙</u>	140
VIII. <u>행정사항</u>	141
IX. <u>시행규칙 별지 목록</u>	142
X. <u>붙임자료</u>	143

1. 개 요

가. 목 적

- 이 지침은 난민인정신청서 접수, 난민인정 심사,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처우 및 체류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난민업무 처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난민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 규정

-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규칙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등

다. 용어의 정의

- “난민”이란 ①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②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③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함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함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 또는 청장 등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함

-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제기기간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¹⁾을 말함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²⁾을 말함
- “난민심사관”이란 난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심사관 교육과정을 마친 자격을 갖춘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함
- “난민전담공무원”이란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 접수, 난민인정 심사, 사실조사, 이의신청 접수, 난민전문통역, 난민 관련 소송 등 난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함

라. 강제송환의 금지

-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이하 “난민신청자등”)는 난민협약 제33조³⁾ 및 고문방지 협약 제3조⁴⁾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1)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여부와 규모 및 출신지역 등은 난민법 제24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2) 무국적자를 포함하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이 아님

3) <난민협약 제33조 (추방 및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된다.

2.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한 이익은 그가 체류하는 국가의 안보에 위협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거나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 또는 송환되지 아니함

- 다만, 국가안보에 위협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중대한 범죄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이 내려져 국가공동체에 위험이 되는 난민신청자 등에게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5)

마. 난민신청자등의 의무

- 난민신청자등은 난민협약 제2조에 따라 6)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법규를 준수할 의무 및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를 의무가 있음

바. 다른 법률의 적용

- 난민신청자등의 지위와 처우, 체류관리 등에 관하여 난민법 및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
 -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권한이 있는 사항의 경우 인도적 사유의 유무 등 개별 판단*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 (예) 질환·자녀부양 등 인도적 사유, 체재 중 국가정황 변동 등

있고,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되는 난민에 의하여서는 요구될 수 없다.

- 4)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
 - 1.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위와 같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관련국가에서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존재하여 왔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한다.
-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며 (강제퇴거명령과 집행은 구분됨),
 -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난민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음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단서)
 - ※ 난민인정 가능성, 범죄의 중대성과 강제송환으로 인한 결과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강제퇴거 집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비례성 원칙)
- 6) <난민협약 제2조 (일반적 의무)>

모든 난민은 자신이 체재하는 국가에 대하여 특히 그 국가의 법규를 준수할 의무 및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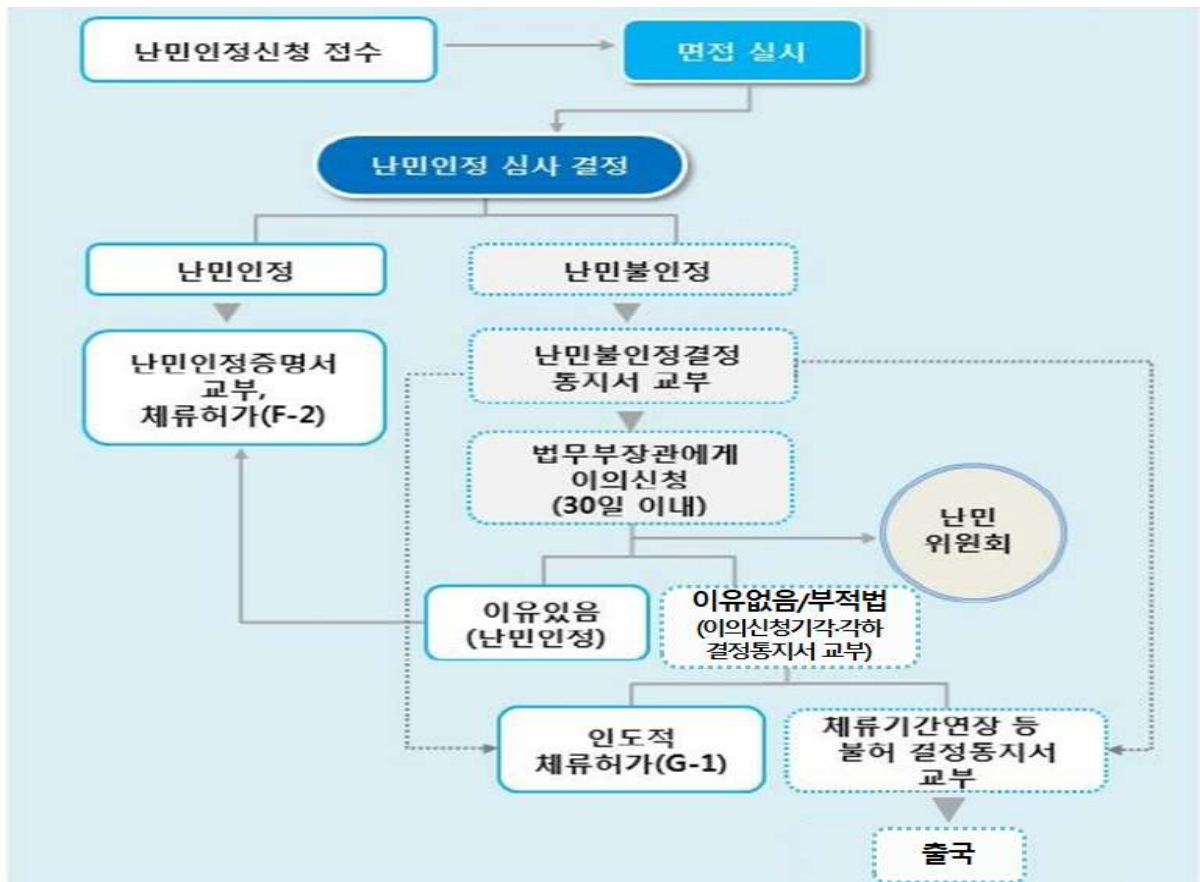
2. 안내자료 게시 및 업무처리 절차도

가.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게시 (난민법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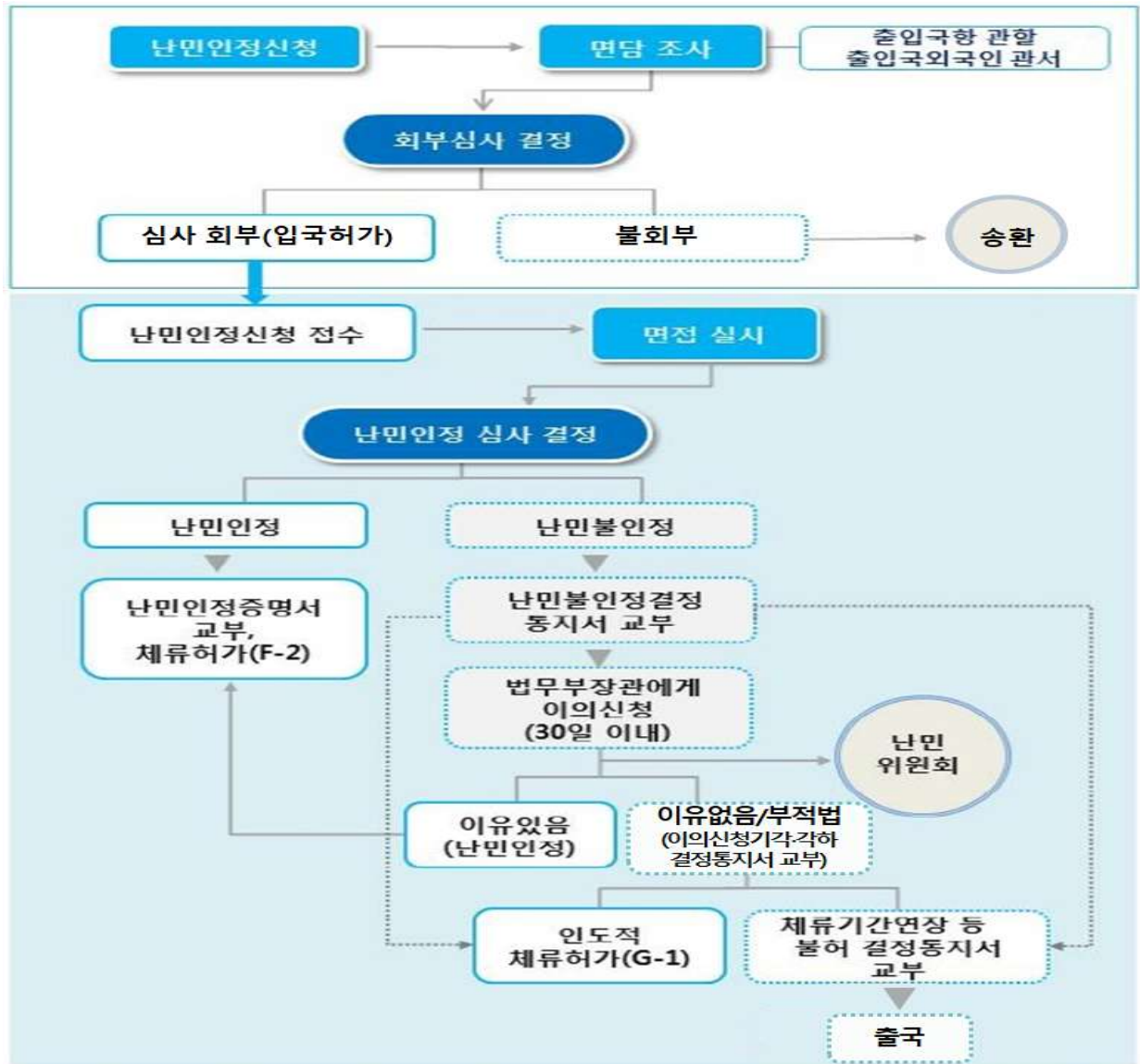
- 청장등은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절차, 난민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 등 게시자료(붙임1, 2, 3)를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한글 및 영문으로 게시하여야 함
 -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난민접수 창구에 게시
 - (출입국항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입국재심 사무실, 난민신청자 대기실 등에 게시
- 청장등은 난민인정 신청 절차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가이드북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
 - ※ 가이드북 내용은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도 게재

나.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도

-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의 난민인정 신청 절차도



○ 출입국·외국인관청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의 난민인정 신청 절차도



3. 관할구역

가. 난민인정신청서 접수

- 난민인정신청서 접수는 모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이하 “청등”)에서 가능
- 난민심사 거점기관 이외의 청 등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류지 관할 난민심사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으로 이첩

○ 등록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 후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 (면접 실시 전) 변경된 체류지 관할 난민심사 거점기관으로 이첩
- (면접 실시 후) 면접을 실시한 난민심사 거점기관에서 심사·결정

나. 난민인정 심사·결정(거점기관 등)

난민심사 거점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특별시	서울, 서울남부, 수원, 양주, 대전, 청주, 춘천 (출장소) 세종로, 고양, 평택, 천안, 서산, 당진, 동해, 속초, 고성 (보호소) 화성, 청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광역시	인천, 안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광역시	부산, 울산, 창원 (출장소) 감천, 김해, 통영, 사천, 거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 (출장소) 구미, 포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 전주, 여수 (출장소) 목포, 군산, 광양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

※ 인천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회부 결정된 사람은 외국인 등록을 한 체류지 관할 거점기관 등에서 난민인정 심사 실시

1. 신청 및 접수

가. 신청 적격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
-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자 중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대한 회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입국을 허가 받은 외국인⁷⁾
-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
 - ※ 출입국항 회부심사 결과 불회부 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긴급상륙허가 또는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더라도 난민인정 신청 대상이 아님

나. 신청 장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다. 신청 시기

-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난민인정 신청 가능

라. 신청 방법

- (원칙)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체류지 관할 청장등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난민인정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함(난민법 제5조 제3항)
 - ※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경우 통역인을 통해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음

7) 출입국항에서 회부 결정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라 회부 결정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함(난민법 제5조 제4항)
- 신청서 작성을 조력하기 위해 변호사, 통역인 등 동반 가능
 - ※ 접수 시 부모 등 보호자, 법률상 대리인, 통역인 등의 동반을 접수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마. 제출 서류

- 난민인정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난민인정신청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언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번역본 및 번역자 확인서(붙임4) 첨부
 - ※ 한국어 또는 영어 외 언어로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안내
 - 난민신청자가 번역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접수기관은 통역 예산 및 통역인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난민신청서상 '박해 관련 부분' 번역 및 첨부
 - 재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재신청자용 난민인정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여권(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4호)
 - 여권이 없거나 위·변조여권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출
 - ※ 위·변조여권의 입수경위 및 사용이유 등을 사유서에 상세하게 기재
- 외국인등록증
 -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시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cm × 4.5cm) 1장
-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 사진, 영상물 등(체포영장, 법원판결문, 신문기사 포함) 신청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서류

- ※ 참고문서 등 신청자가 제시한 서류는 복사한 후 사본에 원본대조필 확인인을 날인한 후 원본은 본인에게 반환. 단, 신청자가 원본 제출에 동의하면 원본 자료를 보관

○ 신체검사서

- 난민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일환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신체검사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님
- 다만,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대상은 정해진 건강검진 항목(결핵 등)이 포함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 보건소, 복심자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및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결핵, 매독 검사결과 포함

※ 난민인정 신청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자격 부여 등) 할 때 원본을 제출하도록 함(난민인정 신청 접수자에게도 사본 제출)

※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외국인등록 시 체류지 관할 청 등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체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기타 단체 등으로부터 무료로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신체검사서 내용 중 결핵, 매독 양성 반응일 경우 출입국관리시스템 참고사항에 등재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 결핵감염자 및 의심자 처리 등 난민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체류관리지침 적용

○ 기타 서류

-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동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혼인 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경우 그 허가서

바. 접수 시 확인·유의 사항

- ①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② 명백히 난민인정제한 사유에 해당 또는
- ③ 신청서 작성이 부실하더라도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 기재사항 등 확인

- 접수 담당 공무원은 난민인정신청서, 여권 등 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인적사항, 박해사유 등 기재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난민인정신청서 접수
- 신청서 상 ①한국 내 주소, ②연락처, ③전자우편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처의 경우 본인 이외에 연락할 수 있는 자(친구, 지인, 대리인*, 고용주 등) 등 비상연락망도 반드시 추가로 기재
 - * 대리인(변호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의 연락처 추가 기재

2) 신청자 적격 여부 확인

- 난민인정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난민인정 신청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4조의2에 따라 특정후견인이 신청 대리 가능
-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가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하였음을 자필로 쓰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타인의 대필 또는 컴퓨터 출력물 인정

3)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접수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상 부모와 동일한 사유(가족결합)라고 기재하였더라도 다른 박해사유 또는 독자적 박해 사유 유무를 확인 후 접수
 - 난민인정신청서 앞쪽 표지에 “독자적 난민사유 있음” 또는 “독자적 난민사유 없음” 등 기재

4) 가족결합 접수 시 유의사항

난민심사 거점기관이 아닌 곳에서 가족결합 난민인정 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할 난민심사 거점기관과 긴밀히 협력

- (주신청자 면접 이전 가족결합 신청) 접수단계에서 주신청자를 파악하여 주신청자와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주신청자 면접 완료 이후 1차 심사결정 이전 가족결합 신청) 주신청자를 파악한 후 주신청자와 함께 심사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
 - 면접이 필요한 경우 접수 당일 면접일자 지정
- (주신청자 이의신청 후 가족결합 신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신청자와 함께 이의신청 심의 진행
 - 면접이 필요한 경우 접수 당일 면접일자 지정
 - ※ 본부(난민심의과) 및 거점기관에 가족결합 사유 신청자 및 주신청자 명단을 보고(통보)

5) '체류허가 제한 심사 대상자' 유형 및 접수 시 조치사항

- (유형)
 -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 인정 신청을 한 경우
 - (2) 난민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아 종료된 사람이 재신청한 경우
 - (3) 난민법 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법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 (4)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 (5) 명백히 난민협약 상 난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재신청하는 경우(사인 간의 재산분쟁, 채권자의 위협, 범죄단체의 위협 등)
- (6)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사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난민인정 신청 하는 경우

○ (난민 접수 담당자 조치사항)

- 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신청자의 신청 사유, 체류실태, 과거 범법사실, 범위반 경위,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류허가 제한 대상 심사 보고서(붙임5) 작성
 - 체류허가 제한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체류허가 제한 대상자'로 입력
 - 체류허가 제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체류허가 제한 대상 심사 결과, 제한 대상자 아님'으로 입력
- ※ 난민인정 재신청자의 경우 기존 난민인정신청 당시의 자료와 비교·대조 등으로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충실히 검토

6) 허위 난민인정 신청 정보 수집 시 조치사항

- 허위난민 신청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관련 내용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신청 및 심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7) 출생년월일이 불분명한 경우 확인사항

- 본인이 진술한 출생년월일 또는 희망하는 출생년월일 부여하고, 본인 진술이나 희망하는 출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난민신청자 동의를 받아 부여
- ※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출생년월일을 부여하지 않도록 유의

사. 난민인정 신청 접수 시 조치사항

- 난민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교부

- 난민인정 신청 절차, 난민인정 신청 후 체류허가 절차, 난민신청자에 대한 지원(생계비, 취업허가 등) 등이 수록된 '난민신청자 가이드북'을 카카오톡 앱·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
 - ※ 휴대폰 미소지자 등을 위하여 난민신청자 가이드북 책자 비치
- 체류허가 절차 등을 안내 후 체류허가절차 등 안내확인서(붙임6) 제출
 - 난민인정 신청 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이미지 등록
 - ※ 보호 중인 난민신청자는 제외

아. 난민신청자의 접수 및 심사 관할

1) 원칙

- 체류지 관할 청등에서 난민인정신청서 접수
- 난민심사 거점기관이 아닌 청등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난민인정신청서, 난민회부심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체류지 관할 거점기관으로 이첩

2) 등록외국인

- 체류지 관할 청등이 아닌 다른 청등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지 관할 청등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 다만, 난민신청자가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 후 난민인정신청서 접수
- 등록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 후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 (면접 실시 전) 변경된 체류지 관할 거점기관으로 이첩
 - (면접 실시 후) 면접을 실시한 거점기관에서 계속하여 심사진행

3) 단기사증 소지자 및 불법체류 외국인

- 모든 청등에서 난민인정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난민인정 심사는 해당 청등의 관할 거점기관에서 진행

4)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난민신청자 8)

○ 보호된 후 난민신청자

- 보호소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 보호소 관할 거점기관에서 심사 진행

○ 난민인정신청 후 보호된 자

- (면접 실시 전) 해당 보호소 관할 거점기관에서 심사 진행
- (면접 실시 후) 면접을 실시한 거점기관에서 계속하여 심사 진행

○ 특별 보호해제, 보호 일시해제 된 자 등

- (면접 실시 전) 보호해제를 결정한 청등을 관할하는 거점기관에서 심사 진행

※ 보호(특별·일시) 해제 시 난민심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거점기관에 통보

- (면접 실시 후) 면접을 실시한 거점기관에서 계속하여 심사 진행

※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보호해제 전에 면접 진행

○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된 자

- 난민심사는 보호일시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되,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되는 경우 보호상태에서 난민심사 진행

2. 면접

가. 일반 난민신청자 면접

1) 면접 준비

가) 난민인정신청서 검토 및 질문서 작성

-
- 8) 5대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행위 (면접과정에서 본인의 진술 등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박해 사유로 난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명령 및 집행** (적용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3호 및 4호, 제46조 제1항 3호, 제62조 제4항)
- 강제퇴거 명령 집행정지 소송 제기자에 한해 집행정지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퇴거집행 여부 결정

- 난민인정신청서(진술서 포함)와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련 국가 정황 조사
-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난민면접조서 예상 질문 작성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해와 관련된 주요 사건 중심 ▪ 1문 1답 형식으로 간결한 문장과 통역이 가능한 표현 사용 ▪ 주어와 술어 등을 분명하게 하고, 시제를 명확하게 하여 질문 ▪ 가족결합의 경우, 신청과 면접의 시차를 고려하여 가족 구성원 변동에 관한 질문 준비(국내 혼인여부, 국내 출생자녀 등)

나) 출석 요구

- (기본원칙) 난민신청자와 대면·유선 연락 등을 통해 면접일시 협의 및 확정 후 출석요구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발급
 - 면접일정 조정 등을 위한 연락을 철저히 하고, 난민신청자 본인 연락 불가능 할 경우 비상연락망 상의 연락처, 임대인, 고용주 등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여 꾸준히 연락 시도
 - 출석요구서 발급 전 반드시 출국여부 및 체류지 변경 여부 확인
 - ※ 연락시도 및 연락여부 등에 대한 사실(일자, 시간 등 포함)을 반드시 출입국 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1차 출석요구서 발급
 -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이하 “난민심사관등”이라 한다)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면접 일정을 정하고 난민신청자와 면접 일정 조정 후 면접 일정에 따라 출석요구의 취지,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 발급
 - 난민신청자와 대면 또는 유선으로 면접일정을 정한 경우에는 출석요구서 즉시 교부 및 발송
- 2차 출석요구서 발급
 -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출석하지 않은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새로이 면접 일정을 정하여 출석요구서 발급하되, 1차 면접 지정일로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2차 면접일 지정

○ 3차 출석요구서 발급

- 2차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하여 출석하지 않은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새로이 면접 일정을 정하여 3차 출석요구서 발급하되, 2차 면접 지정일로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3차 면접일 지정

○ 출석요구서 공시송달

-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새로이 면접일시를 정하여 출석요구서를 공시송달(불임7)하되, 3차 면접 지정일로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면접일 지정

※ 게시의 범위는 난민인정 신청 접수번호, 접수일, 체류지 등으로 한정하여 난민법 제17조 인적사항 등의 공개금지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것

○ 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심사 종료(난민법 제8조 제6항)

- 연속하여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난민심사관 등은 난민인정 신청 직권종료 절차에 따라 난민인정심사 종료

※ 연속하여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로 중간에 출석에 응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새로 출석요구 횟수 계산

○ 출석요구서 발급대장 관리 등

- 출석요구서를 발급한 때에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출석요구대장(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입력 및 관리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접 일정 연기 또는 난민심사관등의 출장 면접 실시 등 고려

* 병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객관적 입증서류 요구

- 긴급을 요하여 출석요구서를 발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 구두의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난민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출석요구서 반송 시 유의사항

- 기존에 착신 정지,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접 일정 재조정을 위한 재연락을 시도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면접불출석 및 출석요구서 반송사실과 체류기간 연장 등 다른 사유로 사무소 방문 시 난민심사관등에게 연락 줄 것을 입력
- 반송된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2차·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말고, 최소 약 1주일 후 출석요구서 재발송

참고 판례

- 기존의 3회 출석요구서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원고의 출석불응이라는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시송달로 출석불응의 요건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은 새로 지정된 출석일시인 2019.12.10.의 1회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2020구단456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처분취소)
- 피고는 원고가 이의신청서상에 기재한 거주지로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함에도 송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거주지로 송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상에 기재된 원고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원고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를 ‘주소없음’으로 파악, 소재불명자로 처리하여 공시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직접 교부 내지 우송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시송달은 그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2009구합51742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2) 면접 및 통역 실시

가) 일반원칙

- 난민면접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면접관”이라 한다)은 난민전담 공무원으로서 난민신청자와의 사적 친분관계 등 난민심사의 공정성이 의심될 만한 사정이 없는 자여야 함
-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함
- 통역인은 난민면접에 필요한 통역능력이 충분한 자로서 난민신청자와의

사적 친분관계 등 통역의 공정성이 의심될 만한 사정이 없는 자여야 함

-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접을 하여야 함
-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성(性)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함
- 같은 성(性)의 통역인을 구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통역을 실시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통역하는 등 난민신청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통역인이 통역하게 할 수 있음
- 청각장애인이거나 언어장애인의 경우 통역인을 통해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음

나) 면접 전 고지 사항

- 면접 시작 시 난민면접조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안내 사항과 아래 사항을 난민신청자에게 고지

- 난민법상 난민의 요건에 대한 사항과 면접은 난민지위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 면접 중 진술은 어떤 경우에도 출신국 또는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통역자 또한 선서를 통해 비밀엄수에 대해 약속을 하였음
- 면접은 약 X시간 동안 지속될 예정이며 모든 면접내용(질문과 답변)은 면접조서에 기록되고, 면접 중 신청인은 진술한 내용에 대해 확인과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면접내용은 난민지위 결정의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관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는 등 면접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
- 난민신청자 본인을 위해 정직하게 진술하여야 하며 만약 면접 이후에 거짓된 진술, 사실의 은폐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의 인정을 받더라도 법령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

- 난민신청자는 면접을 통해 난민인정 신청의 진실성, 타당성 및 박해 사유 등에 관하여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을 설명
- 고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친 때에는 고지사항에 대한 설명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고, 난민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함

다) 통역인 선정

- 난민신청자의 사용언어, 신청사유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난민전문 통역인을 선정하되, 난민신청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 난민전문통역인 선정
 -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는 난민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난민통역인을 선정
- 면접 시작 전 통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8) 제출받음

라) 통역인 등 변경

- 난민신청자가 의사소통 문제, 성별, 친분관계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나 면접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역인 등 변경 요청서(붙임9)를 작성하도록 함
- 통역인 등의 변경사유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통역인 등을 변경하고 다시 면접을 진행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역인 등의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며 3회 이상 면접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면접 불출석자와 동일하게 처리

3) 면접 내용의 녹음·녹화

가) 녹음·녹화 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난민신청자의 면접과정 녹음·녹화 실시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회부심사 시 난민면담 포함
 - ※ 면접을 마치고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과정까지 포함
- 다만, 난민신청자가 면접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 녹음·녹화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난민면접조서 등에 녹음·녹화 생략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녹음·녹화 미동의 확인서(붙임10)를 기록에 첨부

- 온라인 화상면접 시 난민신청자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녹음·녹화 실시하되,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난민면접조서에 기록

나) 녹음·녹화 절차 및 자료의 생성

○ 사전준비

- 면접과정의 녹음·녹화를 실시하기 전에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여 원활한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 녹음·녹화장치의 위치, 녹음·녹화장치와 난민신청자·통역인 사이의 거리 등 사전 점검 실시

- 면접 녹음·녹화 전 신청자에게 녹음·녹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기록

○ 고지 사항

- 면접과정의 녹음·녹화 시 면접관은 아래 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고지사실이 녹음·녹화 되도록 조치

고지 사항

- 면접과정의 녹음·녹화에 대한 난민신청자의 동의 여부
- 녹음·녹화의 시작 시각 및 장소
- 면접과정에서 휴식 및 원하지 않는 경우 녹음·녹화의 종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 (예시) 지금부터 ○○○(인적사항)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시각 및 장소는 20○○.○.○. 10:00, ○○청 난민면접실입니다.
 - 신청인에 대한 난민심사 면접과정을 녹음·녹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일 신청인이 면접과정 녹음·녹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면접을 하는 도중 휴식을 요청할 수 있고, 면접과정의 녹음녹화 종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녹음·녹화 시 유의사항

- 면접과정 녹음 시 난민면접관, 난민신청자, 통역인의 진술내용이 정확하고 뚜렷하게 기록되도록 녹음장치와 난민신청자·통역인 간 거리 조정

- 난민신청자 녹화용 카메라는 신청자의 정면에서 촬영하여 신청자의 얼굴이 정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통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터뷰 시 통역인의 성명 대신 '통역인'으로 호칭하고 얼굴은 녹화되지 않도록 유의
- 면접관은 면접종료 시 녹음·녹화가 정상적으로 기록·저장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

○ 기기 오작동 등 녹음·녹화 중단 사유 발생 시 처리방법

- 면접과정에서 장비의 고장·오작동 등으로 녹음·녹화가 중단된 경우, 난민신청자에게 중단사유 고지 후 난민면접조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면접 재개 시에는 녹음·녹화 장비의 가동과 함께 녹음·녹화를 재개한다는 취지의 안내 실시
- 녹음·녹화 장비의 수리가 지체되거나 녹음·녹화를 재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녹음·녹화 없이 면접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면접 재개
- 면접과정에서 난민신청자가 휴식을 요청하는 경우, 휴식 시각 고지 후 녹음·녹화를 중단하고 면접 재개 시에는 녹음·녹화를 재개한다는 사실을 고지
- 면접 종료 후 녹음·녹화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관련 사실을 난민신청자에게 알리고 난민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면접 실시
- 난민면접 녹음·녹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심사 건이 확인된 경우, 해당 거점기관은 누락 사유와 조치사항 등을 정리하여 본부 (난민정책과) 보고

녹음·녹화 중단 시 고지 사항(예시)

▪ 갑작스런 사고 등

- 예기치 못한 컴퓨터의 고장(정전, 기기장애 등)으로 00시 00분경 녹음·녹화가 잠시 중단되었는데 이제 모두 복구되어 다시 녹음·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00시 00분입니다.

- 휴식 등 본인의 희망에 의한 중단
 - 신청인의 희망에 의하여 잠시 휴식을 위해(용무를 보기 위해) 녹음·녹화를 일시 중단하고, 약 5분 후에 이어서 조사하겠습니다.
 -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 신청인이 중간에 녹음·녹화를 거부하는 경우
 - 신청인이 조사과정에 대한 녹음·녹화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여 00시 00분에 녹음·녹화를 중단하겠습니다. 현재시각은 00시 00분입니다.

다) 녹음·녹화물의 관리

○ 녹음·녹화물의 보관

- 면접관은 면접을 종료하고 제작된 녹음·녹화물 CD/DVD를 해당 난민신청자의 파일철에 합철 보관
- 녹음·녹화장비 및 자료 관리담당자는 녹음·녹화물의 유출·분실·멸실 등을 방지하는 등 보관에 유의
- 면접관은 난민인정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난민심사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서류 및 녹음·녹화물을 편철하여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추후 기록물 이관 작업 시 기록물 담당 직원에게 인계하여 이관될 수 있도록 조치

○ 녹음·녹화물에 대한 감독

- 청장등은 녹음·녹화 장비 및 자료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본부 (난민정책과) 보고
 - ※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담당자 변경 시에도 본부에 담당자 변경 보고
- 청장등은 녹음·녹화 장비의 적절한 사용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실시
- 청장등은 녹음·녹화 장비의 사용실적 및 운용실태 등을 점검, 매월 녹음·녹화 실적을 본부(난민정책과) 보고

4) 신뢰 관계있는 사람의 동석 허용 (난민법 제13조)

- 난민심사관등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 관계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음
 - ※ (신뢰 관계있는 사람의 범위) 가족, 친구, 변호사 등 신청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 난민신청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어려움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난민신청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허용
- 신뢰 관계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
 - 난민신청자는 면접 과정에 신뢰 관계있는 사람과 동석을 희망하는 경우 동석신청서(붙임11)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함(팩스 신청도 허용)
 - 난민신청자 또는 변호사 등의 대리신청자가 동석자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단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 성별 및 국적을 밝혀야 함
 - 동석 신청은 면접 전일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면접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일 신청 허용(면접 지연에 따른 통역인 민원 방지), 긴급한 경우 면접 당일 신청도 예외적으로 허용
 - 동석자는 동석에 앞서 비밀 준수 서약서(붙임1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통역인에 대하여도 통역에 앞서 비밀 준수 의무 등을 확인시키고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동석자에게 고지할 사항
 - 난민심사관등은 난민면접을 시작하기 전 동석자에게 아래 사항을 고지하고, 이를 난민면접조서에 기재하여야 함

고지 내용

- 신뢰관계 있는 동석자는 난민심사관등의 질문에 난민신청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난민신청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알려주는 등 일체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신뢰관계 있는 동석자는 난민심사관등의 면접 진행을 방해하거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난민심사관등은 동석자가 면접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동석의 허용을 중단하고 면접실에서 퇴실할 것을 지시할 수 있음

○ 동석의 제한

- 신뢰관계는 난민신청자의 주관에 의한 것이므로, 동석자의 신분과 자격 등에는 제한이 없으나, 난민법 제13조에 따라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석을 제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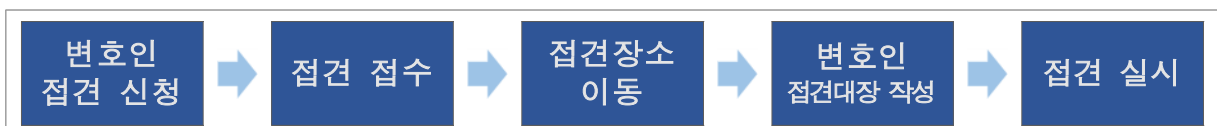
제한 사유(예시)

- 동석을 희망하는 자가 과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7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 난민신청자와 함께 동일한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면접이 예정되어 있어 면접에 참여함이 이후의 면접 및 심사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된 서류 등을 제공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난민심사관 등은 난민신청자로부터 동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동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동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게 동석이 불가함을 통지(붙임13)하여야 함

5) 변호사 조력권의 실질적 보장

○ 변호인 접견 절차



- 변호인 접견 신청은 접견 신청서(붙임14)를 작성하여 변호인 선임서 및 변호사 신분증 사본을 팩스 또는 메일 등으로 지방출입국·외국인청 담당부서에 사전 제출
- 접견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난민신청자에게 변호인 선임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 담당자는 변호사 신분증 확인 후 접견장소로 안내 및 이동
- 담당자는 변호인 접견장소에 비치된 접견 대장(붙임15)을 작성
- 접견 시간은 평일 09시~18시(12시~13시 제외) 사이에 실시, 다만, 청장 등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휴무일에도 실시 가능
- 면접 중이라도 부당한 면접 방법에 대한 변호사의 이의제기 허용
- 면접관의 승인 하에 면접 도중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허용 하되, 난민신청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행위는 제한
- 변호사가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허용하되 면접 과정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것은 제한

6)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참여

- 유엔난민기구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관할 청장등에게 요청하여야 함,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
 - 면접 참여는 '변호인 접견 절차' 준용
- 유엔난민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장등은 난민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7) 면접 시간 및 휴식

- 하루에 할 수 있는 면접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면접시간이 10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분간 휴식하여야 함
- 면접 시간이 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식사 후 면접을 재개하여야 함

8) 야간 및 공휴일 면접

- 야간 및 휴무일의 면접은 난민심사관등 및 난민신청자의 안전과 면접의 신뢰성·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다만, 난민신청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 사전에 청장등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9) 난민면접조서 기재사항의 확인

- 난민심사관등은 면접 내용을 난민면접조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함
- 난민심사관등이 면접을 마친 때에는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난민심사관등은 난민신청자에게 난민면접조서의 기재 내용에 오기나 틀림이 없는지 물어야 하고, 난민신청자가 내용의 추가·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진술을 난민면접조서에 기재하여야 함
- 난민심사관등은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확인을 마치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함
 -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면접조서에 기재
- 난민심사관등은 통역인에 대하여도 난민면접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함

10) 면접 종료 후 조치사항

- 난민신청자에게 가까운 청등에서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 등 심사결과 관련 서류를 교부받도록 안내
- 난민신청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결과 통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전자우편 통지 및 송달 동의서(붙임16)를 제출받음
 - 난민신청자가 전자우편 송달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이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를 자필로 기재
 - 난민신청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가 전송 및 확인이 가능한지 신청자와 함께 확인
 - 통역인을 통해 난민심사결과에 대한 통지가 난민신청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송부될 것이며, 지정한 전자우편에 도달된 때 난민심사가 종료됨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

나. 가족결합 신청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면접

1) 배우자

- 난민신청자의 배우자가 가족결합을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더라도 면접을 실시하여 다른 독자적 박해 사유가 있는지 확인

2) 미성년 자녀

- 가족결합만을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더라도 독자적 박해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 (10세 미만) 부모 면접 시 자녀에게 독자적 박해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호자가 대리 진술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접 실시

▪ 부모 면접 시 미성년자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지금부터는 자녀의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면접을 하겠습니다. 자녀 ○○○의 면접을 보호자 대리진술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호자 본인이 자녀의 이름을 말해 주세요”라고 고지한 후 진행

- (10세 이상 16세 미만) 신청사유가 가족결합이더라도 보호자 동석하에 면접을 실시하고, 다른 박해 사유가 있는지 확인

- 미성년자의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가족결합 외 다른 박해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난민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박해로 인한 트라우마, 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석 적극 고려

- (16세 이상) 신청사유가 가족결합이더라도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다른 박해 사유가 있는지 확인

○ 가족결합과 함께 다른 박해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보호자(부모 등) 동석 하에 예외 없이 면접 실시

-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진술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접 실시

다. 보호자(부모 등) 없는 미성년자 면접

○ 예외 없이 면접 실시

라. 교도소 수감 중인 난민신청자 면접

1) 면접 대상

○ 1년 이상 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난민신청자

2) 면접 장소

○ 난민신청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3) 심사 관할

○ 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난민심사 거점기관

4) 면접 절차

○ 사전에 교도소와 면접일정 유선 협의 후 협조요청 공문 발송

※ 협조요청 공문에 난민법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적시

○ 난민신청자에게 출석요구서 발송

○ 교도소 협조를 받아 난민신청자가 면접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 면접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출장 면접 실시

- 면접에 응할 의사가 없으면 3회 출석요구서 발송 후 심사종료

5) 참고사항

- 그 외 사항은 난민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
- 교정본부 보안과와 업무협약 및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난민담당자·통역인의 교도소 출입 및 면접장소 제공, 교도소 내에서 난민면접용 녹음·녹화장비 휴대 및 사용, 난민신청자의 면접 의사 유무 확인 협조 등

마. 면접 중 국내 입국 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행위자⁹⁾ 적발 시 조치사항

1) 적용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난민

9)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 F.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a)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문서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
 - (b)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
 -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

<UNHCR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154. 비호국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난민은 그 국가의 적법절차에 따르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협약 제33조 제2항은 “특히 중대한”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서 비호국 사회에 위협스러운 난민을 본국으로 추방 또는 귀환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UNHCR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5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제F항에 의거한 배제조항의 적용>

II. 실제적 분석, B. 제1조 제F항 제b호 :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 14. 특정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 판단할 때에는, 국내기준보다 국제기준이 더 적합하다. 행위의 성격, 실제로 입은 피해, 해당범죄 기소에 이용된 절차의 형태, 처벌의 성격,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러한 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고려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살인, 성폭행 및 무장강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좀도독질의 경우는 분명히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 15. (개인적 이유나 이득 등) 다른 동기들이 자행된 범죄의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중대한 범죄는 비정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절차적 문제

- 35. 제1조 제F항에 따른 입증정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신청인이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형사법 수준의 입증책임을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신빙성 있는 증인의 자백과 진술로 충분할 수 있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배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유죄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조를 하지 않아서 비호신청의 기본조차 입증할 수 없다면 배제를 고려할 필요 자체가 없을 수 있다.

신청자(면접과정에서 진술한 경우 포함)

※ 살인, 성폭행, 무장강도, 마약거래, 마약투약 등

2) 조치사항

○ (거점기관 난민담당자) 난민협약 제1조 F항 및 난민법 제19조에서 정한 난민인정의 제한(배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접 후 지체없이 대상자 명단(면접조서 포함)을 본부(난민정책과) 보고

○ (본부) 거점기관 보고 건에 대해 난민인정 제한(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난민인정 제한대상으로 결정되면 출입국관리정보 시스템에 '난민인정 제한(배제) 강제퇴거 대상'으로 입력

※ 이의신청 기각이 결정된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

바. 심사종료 후 출석하여 면접을 요구하는 경우 조치사항

○ (심사종료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해당 난민신청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유와 관계없이 새로이 난민인정신청서 접수 후 절차 진행

○ (심사종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심사종료를 취소하고 다시 난민인정 심사를 개시하여 난민인정 여부 결정

※ 심사종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인지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종료처분이 위법할 경우 심사종료를 취소하여야 함

3. 사실조사

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난민법 제9조)

○ 난민심사관등이 난민인정 심사를 할 때에는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나. 국가정황정보 조사

○ 국가정황정보(COI :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조사 및 활용

- 난민심사관등은 국가정황정보(COI :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를 조사하여 난민인정신청서 내용 및 면접 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 확인

- 난민인정 신청 사유 및 박해사항 등에 관한 신청자 진술과 그 국가의 객관적 정보 및 상황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 국가정황정보는 꾸준히 갱신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되도록 노력
- 국가정황정보가 필요하나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경우, 본부(난민심의과) 국가정황정보 조사팀에 의뢰하여 난민심사에 활용

○ 국가정황정보 활용 시 주의사항

- 국가정황정보 자료는 정보 생산주체·목적·주기, 정보생산자의 독립성, 정보의 객관성 등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여, 활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심사에 활용

※ 인용 시 반드시 원출처(primary source) 명시

- 국가정황정보는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충할 뿐 진술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난민신청자 각 개인의 박해사항*을 중심으로 심사

* 동일 국적, 동일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더라도 각 개인이 처한 박해상황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다. 국내 체류실태 등 조사 (난민법 제10조)

○ 난민인정신청서(진술서 포함)와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자료 검토

- 여권 발급지, 발급일시, 유효기간
- 우리나라 입국목적 자격, 체류기간
- 국내 초청자(초청 목적) 및 보증인
- 사증사항(소지 사증, 사증발급 경위 등)
- 과거 우리나라 출입국기록, 체류사실 또는 난민인정 신청사실 여부

○ 난민심사관등은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신청 사유와 관련하여 필요 시 국내에서 활동한 사항 등에 관하여 조사

- 체류실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과 등에 실태조사 의뢰

-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하거나 문서 등의 제출 요구
- 난민심사관등이 아닌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난민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난민전담공무원 지정 후 사실조사 실시

라. 난민인정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조사 (난민법 제19조)

- 난민인정의 제한 사유
 -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대한 사실조사
 - 난민심사관등은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시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제한사유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난민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사실조사 협조 요청
 - 조사 결과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불인정 결정

마.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난민법 제11조)

- 청장등은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사실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또는 출신지역의 국가정보
 - 난민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4. 신원검증

가. 난민신청자

1) 대상

- 14세 이상 난민신청자

2) 제출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범죄경력 등 본인확인서(붙임17)

3) 제출시기

- 난민 접수 또는 면접 시 제출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제3국 정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면접 시 제출하는 본인확인서 제출로 같음

* 국내 입국 전 제3국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상자

- 본인확인서는 면접 시 통역인 입회하에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요령에 대해 상세히 설명

※ 본국 또는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확인서는 제출 생략

4) 업무처리 절차

- (소속기관) 범법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본부(난민정책과)에 즉시 보고

- (본부) 소속기관에서 범법사항 등 특이사항을 보고하면 본부는 관계 기관에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관계기관에서 본부로 검증 결과를 회신하면, 본부 담당자는 난민 신청 접수사무소 기준으로 분류하여 거점기관에 회신 결과 배포

- (거점기관) 본부에서 배포한 신원검증 결과를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입력

5) 조치사항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입국금지자(입국금지기간 영구)에 해당하는 경우

- 난민법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에 따라 난민불인정 결정 및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조치(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등)

- 국제 테러범 및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
- 본국 또는 제3국에서 살인, 강도, 범죄조직, 마약,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

○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난민인정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범죄경력 등 본인확인서’를 확인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 위반에 따라 사범처리

나.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체류허가 대상

1) 대상

- 14세 이상이고 신원검증을 받지 않은 자로, 난민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 대상
 - ※ 신청인이 본국 정부 발행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거나 기존에 관계기관 검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제외

2) 검증시기

- 난민인정 및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하기 전
 - ※ 관계기관 검증에 상당 기간(1~2개월 남짓) 소요되는 점을 고려, 난민인정 및 인도적 체류허가 예정 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원검증 의뢰

3) 업무처리 절차(거점기관)

- 난민인정 및 인도적체류허가 예정자 명단을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관계기관에서 신원검증 결과를 회신하면, 거점기관 담당자는 회신 결과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본부(난민정책과) 보고

4) 조치사항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입국금지자(입국금지기간 영구)에 해당하는 경우
 - 난민법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에 따라 난민불인정 결정 및 입국규제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조치(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등)

- 국제 테러범 및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
- 본국 또는 제3국에서 살인, 강도, 범죄조직, 마약,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

- 난민신청자 범죄경력 등 본인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범죄경력 등 본인확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체류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 위반에 따라 사범처리

다. 신원검증의 자료 활용

- 난민심사 및 체류허가 시 난민법 제19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및 제46조(강제퇴거),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

5. 가족결합 심사 등

가. 가족결합 심사

1) 대상

- 난민신청자의 배우자(법률혼), 미성년 미혼자녀

2) 제출 서류

- 본국 정부 발행 가족관계 증빙 서류, 대한민국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 혼인신고 수리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기타 가족관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가족관계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실태조사 실시

3) 가족결합 신청자 처리기준

- 가) 원칙 : 난민신청자 개인별로 독자적인 난민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사

- 독자적인 난민사유 유무를 심사하여 난민인정 여부 결정
 - 독자적 난민사유가 없는 경우 아래 나) 배우자 가족결합 및 다) 미성년 자녀 가족결합 기준에 따라 처리
 - ※ 난민법 제19조의 난민인정 제한 사유 해당자는 제외

- (적용 기준일) 미성년 자녀가 난민인정 신청 후 성년이 된 경우, 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가족결합 여부 심사

나) 배우자 가족결합 (독자적 난민사유가 없는 경우)

- 난민인정 대상
 - 주신청자의 난민인정 결정일 이전에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우
- ‘난민인정자 가족(F-1-16)’ 체류허가 대상
 - 주신청자의 난민인정 결정일 이후에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우
- 이혼 등에 따른 난민지위 유지 여부
 - 배우자 가족결합으로 난민인정 이후 이혼, 별거, 사망하더라도 난민법 제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난민지위 유지

다) 미성년 자녀 가족결합(독자적 난민사유가 없는 경우)

- 난민인정 대상
 - (국내출생 자녀) 부모 일방이 독자적 난민 사유로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
 - (외국출생 자녀) 부 또는 모의 난민인정 결정일 이전에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우
- ‘난민인정자 가족(F-1-16)’ 체류허가 대상
 - (국내출생 자녀) 부모 모두 독자적 사유 없이 가족결합으로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
 - ※ 국내 출생자녀가 부모 국적국의 국적관련 법령으로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본부와 협의하여 난민인정 여부 결정
 - (외국출생 자녀) 부 또는 모의 난민인정 결정일 이후에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우

나.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민법상 만19세 미만) 심사

-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가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그의 정신적 발달 및 성숙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정신적 성숙도는 일반적으로 그의 개인적, 가족적,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함
- 반증이 없는 한 16세 이상인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두려움을 가질 만큼 성숙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통상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¹⁰⁾
- 미성년자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한 경우에는 객관적 요소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고, 난민 집단과 함께 있는 미성년자는 사정에 따라 난민이라는 정황일 수 있음
-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가지는 공포는 성인과 같은 비중을 가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의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다. 정신장애인 심사

- 심각한 박해를 경험했던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정신장애는 빈번히 나타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고, 일반적인 신청인보다 입증책임을 경감하여 판단
- 신청인이 표현한 두려움이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거나 과장된 두려움이라는 징후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진술보다는 객관적인 상황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함

10) <UNHCR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215. 미성년자가 더 이상 아동이 아닌 청소년인 경우, 그 청소년의 실제 성숙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의 경우와 다를 바 없어 난민지위의 결정이 더 용이하다. 반증이 없는 한 16세 이상인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두려움을 가질 만큼 성숙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통상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신청인의 가족, 친척 또는 신청인과 알고 지내는 사람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신청인이 특정 난민집단에 속할 경우 신청인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및 국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뢰성 판단

6. 난민 인정·불인정 결정

가. 심사보고서 작성

1) 심사보고서 작성·보고

- 난민심사관은 면접과 사실조사를 마치면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보고

2) 심사보고서 내용

- 난민인정 신청 사유, 본국에서의 활동사항,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존재 여부, 난민신청자 신청 사유 관련 국가정황 및 국내 체류실태 등
- 진술의 일관성, 국가정황 등 사정에 비추어 난민신청자가 귀국 시 박해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 미성년 신청자가 가족결합 외 독자적 박해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

3) 심사보고서 비공개¹¹⁾

- 난민인정 심사과정에서 생산된 내부 문서나 수집된 자료 등은 비공개

나. 심사결정권자

- 거점기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청장 등은 난민인정 여부 결정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음

11)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 즉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일체의 수사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이나 증인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이상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에 대하여만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있음

다. 심사결정 기간

1) 원칙

- 청장등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 가능
- 다만, 심사적체 해소와 인도적 사유 고려 대상에 해당하는 아래 2)에 해당하는 경우 가급적 해당 기간 내 심사를 종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형별 심사결정 기간

○ 체류허가 제한 심사 대상자 (11쪽 참고)

-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 (2) 난민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아 종료된 사람이 재신청한 경우
- (3) 난민법 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법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 (4)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 (5) 명백히 난민협약 상 난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재신청하는 경우(사인 간의 재산분쟁, 채권자의 위협, 범죄단체의 위협 등)
- (6)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사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난민인정 신청 하는 경우

- 최대한 신속히 처리, 신청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난민신청자에 우선하여 심사
-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신청사유, 법 위반 내용 및 정도, 난민인정 신청 횟수, 불법체류 기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사실조사를 생략
- 면접은 난민심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생략해서는 안 됨
 - ※ 다만, 신청사유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여 면접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면접 실시

- (난민법 제19조 각 호 12) 유형에 해당하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사
- (24개월 이상 장기심사 대기자) 우선 심사
- (보호 중 난민신청자) 가급적 15일 이내에 심사결정 하되, 통역 섭외 곤란 등 지체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 이내에 심사
- (미취학 아동)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난민인정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3개월 이내에 심사
- (가족결합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한 난민인정자의 가족) 신속절차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3개월 이내에 심사

3) 심사결정 기간의 연장

- 난민인정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난민심사관등은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와 명단을 출력하여 청장등의 결재를 받아 관리
 - 난민인정 심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종전의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하여 난민신청자에게 통지

라. 심사결과 기록관리 등

- 난민심사관은 심사보고서와 난민면접조서, 기타 난민신청자의 입증서류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이미지 등록
- 미성년 신청자가 가족결합 외 독자적 박해 사유가 없어 가족결합 원칙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한 경우 해당 내용을 출입국관리정보 시스템에 관리

-
- 12) 1. 유엔난민기구 외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2.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 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살인, 성폭행, 무장 강도, 마약거래, 마약투약 등)를 저지른 경우
 4.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난민 인정·불인정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난민법 제18조)

가. 대상별 조치사항

1) 난민인정자

- 난민인정증명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교부 및 난민인정 증명서 발급대장(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기재
- 난민인정자를 위한 한국 체류 가이드북(책자 또는 전자적 방식) 교부
- 생활실태서(붙임18) 및 인수증(붙임19)을 제출받은 후 출입국관리정보 시스템에 이미지 등록

2) 난민불인정자

가) 단순 불인정결정자

-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교부
 - 난민 불인정 결정의 이유(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 포함)를 기재한 난민 불인정 사유서(붙임20) 교부
 -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 기간,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기간 안내
 -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은 난민법 제44조에 따른 난민신청자 처우가 제한되는 점 등 안내
- 인수증(붙임19)을 제출받은 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이미지 등록

나) 인도적체류자

-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및 인도적 체류자 취업허가 안내문(붙임21) 교부
 - 난민인정 불허 사유, 인도적 체류허가의 의미, 체류절차에 관하여 안내하고,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 기간,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기간 등 안내

- 생활실태서(붙임18) 및 인수증(붙임19)을 제출받은 후 출입국관리정보 시스템에 이미지 등록

나. 난민인정심사 결과 서류 교부권자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다. 교부대상

- 난민법 제1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난민 신청자(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

*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소송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14조의2에 따른 후견인

대리인 제출서류

-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신청서 가족관계란에 기입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위임장 및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후견인은 위임장, 위임자 및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직접 교부할 수 없는 경우 13) 통지 방법

- 난민면접 종료 후 전자우편 통지 및 송달을 통한 난민인정 심사결과 통보방법에 동의하고, 방문기간 내 방문하지 않는 경우

- 난민심사 결과 통지서 교부 관련 방문(14일 이내) 안내 문자를 난민 신청자가 기재한 연락처로 전송
- 안내문자 전송 후 교부기간 14일 내 방문하지 않은 경우, 전자우편 통지 및 송달동의서(붙임16)에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서 등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송달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 14)에 따라 송달의 효과가 발생되므로, 전자우편으로 송달 후 공고절차 없이 난민심사 종결

13) '직접 교부한다'는 의미는 난민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출석하여 교부받는다는 의미임

14) <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난민면접 종료 후 전자우편 통지 및 송달을 통한 난민인정 심사결과 통보방법에 동의하지 않았고, 난민신청자(인정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없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¹⁵⁾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
 - 공고를 할 경우 송달을 받을 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
 - ※ 난민불인정결정 통지 공시송달문(붙임22) 및 이의신청 기각·각하 결정 통지 공시 송달문을 이용하되, 성명은 이니셜로 한정하여 난민법 제17조(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것
 -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송달문서 관리대장(붙임23) 관리
 -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¹⁶⁾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으로 공고일로부터 15일 이후 난민심사 종결

마. 보호 중 난민인정·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치사항

-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의뢰 청장등 및 보호소장에게 심사결과 통보
 - (거점기관) 장기간 보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결과를 결정 당일 즉시 보호의뢰 청장등 및 보호소장에게 난민인정결정서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서를 송부
-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체류자
 - (보호의뢰 기관) 보호의뢰 청장등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소장에게 송부하여 보호 해제토록 조치

15)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16)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보호기관) 보호소장은 보호 해제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지 관할 청등에서 6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를 받도록 안내

8. 이의신청 접수·보고

가. 이의신청 대상¹⁷⁾

- 난민법 제18조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난민 불인정결정통지서를 통지 받은 사람
- 난민법 제19조 각 호의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를 통지 받은 사람
- 난민법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난민인정취소·철회통지서를 통지 받은 사람

나. 이의신청 제기기간 및 방법

-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난민인정취소·철회통지서 등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함(난민법 제21조)
 - ※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민법 제157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민법 제161조)
- 이의신청서 및 소명 자료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본 및 번역자 확인서(붙임4)를 첨부하여야 함
- 이의신청을 조력하기 위해 변호사, 통역인 등 동반 가능

다. 행정심판과의 관계

- 이의신청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17)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4조의2에 따라 특정후견인이 신청을 대리
 ※ 민법상 성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라.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소명 자료(체포영장, 법원판결문, 신문기사 등)
 - ※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는 복사한 후 사본에 원본대조필 확인인을 날인한 후 원본은 본인에게 반환. 단, 신청인이 원본 제출에 동의하면 원본 자료를 보관
-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입증 서류 등)

마. 접수

- 이의신청서 상의 이의신청 사유, 체류지, 연락처(긴급연락처 포함), 전자우편 등 기재사항이 충실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청장등은 이의신청 접수증(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이의신청인에게 교부
- 접수담당 공무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의신청서 및 이의를 소명하는 자료 등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이미지 등록

바. 이의신청 처리 기간

-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
- 이의신청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난민법 시행령 제11조)

-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난민인정결정

-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각결정
-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 각하결정

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1) 난민인정자, 난민불인정자, 인도적체류자

- “7. 난민 인정·불인정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준용

2) 이의신청 기각·각하 결정자

-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통지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교부
 - 이의신청 기각 또는 각하 사유와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은 난민법 제44조에 따른 난민신청자 처우가 제한되는 점 등 안내
- 인수증(붙임19)을 제출받은 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이미지 등록
- 행정소송 제기기간* 등 안내
 - *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9.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및 철회 (난민법 제22조)

가. 개요

1) 의의

- 난민으로 인정받기에 부적합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거나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가 발생하면 난민인정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음

2) 취소·철회권자

-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1차 심사 결정을 한 청장등(원 처분청)
 - ※ 난민인정 취소·철회 사유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해당 외국인에게 난민인정 결정을 한 청장등에 통보(보고)

나. 난민 인정 결정의 취소

1) 의의

- 신청인이 당초 난민인정 기준에 미달하였거나 처음부터 난민협약 상 적용중지 또는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국제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에 난민인정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효과를 발생시킴
- 난민법 제2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것이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님
 - ※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이더라도 난민인정자가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상황이 인정된다면 난민인정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취소 사유

-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 위조되거나 변조된 타인명의의 여권, 신분증을 제출하여 허위의 국적, 성명 등으로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 난민인정 결정의 중요한 입증서류 등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허위 사실로 밝혀진 경우
 - ※ 박해의 위험성이 높은 국가의 국민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위조여권을 사용한 경우, 특정 인종, 민족으로 가장하기 위해 타인명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박해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위조된 수배전단을 제출하는 경우 등
- 거짓 진술로 인하여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 난민으로 인정된 박해 사실 또는 난민인정 신청 사유 등 난민인정 결정의 주요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 박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이 동성애자로 위장한 경우 등
-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3) 사실조사

- 난민심사관등은 난민인정 등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음
-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 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취소 통지

- 청장등은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한 때에 난민인정이 취소된 자나 그 대리인에게 난민인정 취소·철회통지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교부하고 난민인정증명서 회수
 - ※ 난민인정이 취소된 자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
 - ※ 대리인 교부의 경우 “7. 난민 인정·불인정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 참고
- 난민인정 취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 ※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행정심판) 또는 1년(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
- 체류 및 사범담당 부서 통보
 - 난민인정 결정 취소 시 관련 내용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 후 관련 부서 통보
- 관계기관 통보
 - 난민인정자로서의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에 취소사실 통보

다. 난민인정 결정의 철회

1) 의의

- 더 이상의 국제적 보호가 필요 없는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난민인정자의 지위를 중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

- 난민법 제22조제2항은 난민협약의 '적용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난민인정을 철회할 수 있음을 규정
- 난민인정의 철회는 이미 난민심사가 종료된 건에 대한 처분으로 난민 인정 심사가 진행 중인 난민인정 신청의 철회와는 구분
- 난민인정의 취소는 난민인정이 거짓서류나 진술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처음부터 난민인정 결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돌리는 처분임에 반하여, 난민인정의 철회는 유효하고 적법한 난민인정 결정의 효력을 장래에 중지하는 처분임

2) 난민인정 철회 사유

- 자국의 법률·제도·정치적 상황 등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국적국에 돌아가는 등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 국적국의 박해 등 사유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가 자발적으로 자국의 국적을 회복한 경우
-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 난민인정 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3) 사실조사

- 난민심사관등은 난민인정 등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음
-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

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대한민국 밖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교부(재외공관) 등을 통하여 사실조사 협조 요청

4) 철회 통지

- 청장등은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한 때에 난민인정자나 그 대리인에게 난민인정취소·철회통지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교부하고 난민인정증명서 회수

※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난민인정취소·철회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

- 난민인정 철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행정심판) 또는 1년(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

- 체류 및 사범담당 부서 통보

- 난민인정 결정 철회 시 관련 내용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 후 관련 부서 통보

- 관계기관 통보

- 난민인정자로서의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에 취소사실 통보

라. 난민인청 신청의 철회

1) 개요

- 난민인정 신청의 철회는 난민불인정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 자체를 무효화하여 심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난민인정 신청의 철회는 난민인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난민법 제22조 제2항의 난민인정 결정의 철회와는 구별됨

【 난민인정 신청의 철회 및 난민인정 철회 】

구 분	난민인정 신청의 철회	난민인정의 철회
적용법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난민법 제22조 제2항
대 상	난민신청자	난민으로 인정 받은 자
처분주체	신청자 본인	행정청
시 기	난민심사, 이의신청 단계에서 철회 가능	난민법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효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심사 중 신청을 철회한 경우 심사종료 ▪ 이의신청 중 난민인정 신청을 철회한 경우 이의신청 심사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난민인정자의 지위 적용 중지
이의신청	대상 아님	가능

- 난민인정 신청의 철회는 본인의 의사 또는 난민인정 심사 과정에서의 결격 사유 등으로 신청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으로 난민인정 신청의 철회는 크게 **자진철회**와 **직권종료**로 구분됨

2) 난민인정 신청의 자진철회

가) 자진철회 시기

- 본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
- ※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철회 가능

나) 자진철회 사유

- 박해의 원인이 해소되는 등 본국 상황이 바뀌어 스스로 난민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 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스스로 난민인정 신청을 포기하고 출국하기로 결정한 경우
- 기타 본인이 자진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다) 자진철회 절차

-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 철회 의사를 밝히면 청장등은 난민인정 신청철회서(붙임24)를 제출
 - ※ 난민인정신청 철회서에 철회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안내
- 난민인정신청서 철회 사실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난민 인정 심사 종료

3) 난민인정 신청의 직권 종료

가) 직권종료 사유

-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
 - ※ 연속하여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로, 중간에 출석에 응한 경우는 그 이후부터 기산
- 난민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 철회를 하지 않고 완전 출국했거나, 출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에 재입국하지 않은 경우
-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나) 난민신청자가 직권종료 후 출석하여 면접을 요구할 경우

- (심사종료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새로이 난민인정신청서 접수
- (심사종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종료 취소 후 난민인정 심사 진행

다) 이의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 철회를 하지 않고, 완전출국 했거나 출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 재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여부와 상관없이 난민인정 심사 절차 진행

보호 중 난민신청자 등 직권종료 절차

- (일반 난민신청자) 보호 중 난민신청자에게 보호소내 특정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 출석요구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 일시·장소에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고, 그 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출석 불응으로 처리

- 최초 출석요구서 발부 후 1개월 범위 내(최소 2주 경과후) 2차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1개월 범위 내(최소 2주 경과후) 3차 출석요구서 발부, 연속 3회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난민인정 신청 직권종료 절차에 따라 난민인정심사 종료
- 난민심사관등이 출석요구서를 발급한 때에는 출석요구서 발급대장(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

- (정신질환 난민신청자) 보호 중인 난민신청자의 병명과 면접심사가 불가능한 사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본부(난민정책과) 보고하고 면접일지 등에 관련사항 기재

4) 심사종료 등 현황 보고

- 난민인정 신청 종료(자진 철회, 직권종료) 현황을 매월 1회 본부 보고
※ 매월 5일 전까지 전월 현황 보고

10. 난민소송 제기 및 확정 시 조치사항

가. 난민소송 진행 상황 및 결과 등 입력

-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취소소송 제기,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
- 각 심급별 진행사항 및 결과, 판결문 이미지 등 등록

나. 난민소송 확정 시 조치사항

- 판결 취지가 난민인정을 하는 취지인 경우
 -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및 난민법 제18조(난민의 인정 등)에 따라 청장등은 원처분인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고 난민인정자 지위 부여
- 판결 취지가 면접 생략 등 절차위반인 경우
 - 판결의 취지에 따라 난민면접 재개 등 하자 치유 후 다시 난민심사결정

11. 자료 등의 열람·복사 (난민법 제16조)

가. 열람·복사 대상

-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열람이나 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음

나. 열람·복사(사본) 신청

○ (신청권자) 난민신청자

- 난민신청자가 자료 등의 열람·복사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아래 서류 제출

*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소송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14조의2에 따른 후견인

대리인 제출서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①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신청서 가족관계란에 기입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위임장 및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②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후견인은 위임장, 위임자 및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방법) 난민신청자가 자료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열람 하고자 하는 자료 등을 분명히 밝혀 기재한 열람·복사 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
 -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는 범위와 매수를 지정하여야 함
- (수수료) 난민법 시행규칙 제7조에 상당하는 금액(열람 1회당 500원, 복사 1매당 5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함
 - 청장등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 수수료를 면제한 때에는 열람·복사 대장(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함

다. 자료 등의 열람 장소

- 청장등은 난민신청자가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이하 “지정된 장소”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함
- 자료 등의 열람을 신청한 사람은 지정된 장소에만 자료를 열람하여야 하며, 자료 등을 반출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됨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자료 등의 열람자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열람에 참여하여야 함

라. 열람·복사 시기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면접이 끝난 후 곧바로 자료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함
 - ※ 난민인정심사 결정 또는 면접조서 등에 대한 상급자 결재 전이라도, 면접이 종료되고 면접조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면접조서 및 제출자료의 열람·복사 허용
- 자료 등의 열람·복사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열람·복사의 요청이 왜도하여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복사기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청자로 하여금 일시를 정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물을 수령하게 할 수 있음

마. 열람·복사의 제한

- 청장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의 자료 등 열람·복사의 요청을 제한할 수 있음
 - 동일한 자료의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¹⁸⁾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

※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자료 열람·복사의 용도 또는 목적에 맞지 않은 지나치게 많은 수량의 복사 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신청으로 인하여 업무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의 시기를 지정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복사물을 교부할 수 있음
- 기타 열람·복사로 인해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제한

바. 열람·복사 대장 작성 및 관리

- 열람 또는 복사 신청 내용과 처리 내용을 열람·복사 대장(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작성하여 관리

사. 자료 등의 외부 제공

- 원칙적으로 난민신청자 및 법률상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난민심사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는 제한됨
 - ※ 난민법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참고
- 다만 수사기관, 법원 등의 업무수행 목적 자료요청과 같이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제공 가능

아. 녹음·녹화물의 열람

- (신청권자) 난민신청자 및 대리인
 -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소송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14조의2에 따른 후견인
- (신청방법) 열람신청자는 관할 거점기관에 난민면접 녹음·녹화자료 열람 신청서(붙임25)를 제출, 열람 수수료 면제

· 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열람은 방문 신청,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한 신청을 허용하며, 방문 신청하는 경우 가급적 당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 당일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난민전담공무원은 신청자와 열람 일시 등을 협의하고 결과를 안내 및 녹음·녹화 열람신청 접수증(붙임26) 교부
- 난민심사 거점기관이 아닌 청등에서 열람 신청을 접수한 경우, 열람 신청자의 연락처 등을 난민심사 거점기관에 이송하여 동 신청자에게 열람 일정 등이 통지될 수 있도록 조치
- (열람 시 조치사항) 난민신청자 등은 관할 거점기관에서, 열람신청 시 지정한 일시에 열람 허용, 열람 시 신청권자 적격 및 열람신청 접수 여부 확인
 - 난민심사 거점기관은 난민면접실 등을 열람 장소로 지정
 - 난민면접 녹음·녹화자료 열람 대장(붙임27)에 작성하여 현황 유지
 - ※ 난민면접 녹음·녹화물 복사·제공은 난민인정 신청정보 유출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제한
- (열람 현황 관리) 청장등은 녹음·녹화 장비 및 저장 자료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며 담당자는 녹음·녹화자료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즉각 조치 가능하도록 자료 관리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필수

12. 인적 사항 등의 공개 금지 (난민법 제17조)

가. 공개금지 대상 및 범위

- 누구든지 난민신청자와 면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누구든지 난민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난민신청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 난민신청자, 통역인 등의 얼굴·음성 등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유출·공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됨

나. 열람·복사 시 유의사항

○ 난민면접조서 열람·복사를 허용할 경우, 면접에 참여한 통역인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어 통역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 통역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열람·복사 허용 시 통역인 인적사항 등은 비공개 처리

1. 일반사항

가. 출입국향 회부·불회부 심사의 의의

- 출입국향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이하 “출입국향 난민 신청자”라 한다)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에 앞서 정식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임¹⁹⁾

나. 관련 법령

- 난민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 적격

- 출입국향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외국인
 - 난민인정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4조의2에 따라 특정후견인이 신청을 대리

나. 신청 장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에서 정하는 출입국향을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다. 신청 시기

-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난민법 제6조 제1항)

19) 난민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난민신청자의 개념을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난민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그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입국향 회부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난민법상 난민신청자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 입국심사 과정에서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밝히면 지체 없이 난민업무담당자에게 인계
 - ※ 공항 환승객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를 전제로 난민 인정 신청하는 경우 포함
- 회부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난민신청자대기실에서 머무르도록 할 수 있음
 - ※ 난민신청자대기실이 없는 출입국항의 경우 그에 준하는 일정한 장소 제공
- 다만, 송환지시서가 발급된 이후 난민신청 의사를 밝히면, 난민신청 안내를 받을 때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고, 회부심사 진행

라. 신청 방법

-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서 제출
- 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함(난민법 제5조 제3항)
 - ※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경우 통역인을 통해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함(난민법 제5조 제4항)

마. 제출 서류

- 난민인정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 위·변조여권의 경우 입수경위 및 사용 이유 등을 사유서에 상세하게 기재
-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 사진, 영상물 등(체포영장, 법원판결문, 신문기사 포함) 신청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서류

※ 참고문서 등 신청자가 제시한 서류는 복사한 후 사본에 원본대조필 확인인을 날인한 후 원본은 본인에게 반환. 단, 신청자가 원본 제출에 동의하면 원본 자료를 보관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cm × 4.5cm) 1장

※ 사진이 없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바. 여권 미소지 또는 위·변조 여권 소지자

○ 위·변조 여권을 소지하거나 여권이 없는 사람이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회부 결정 및 입국불허 후 송환

※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출발지 탑승자 명단 등 정황 정보, 진술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신원 확인

○ 위변조 적발처리 및 사범심사 결정 후 위변조여권 인적사항은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리

○ 난민법 제20조에 따라 신원확인을 위하여 보호된 사람의 신원이 확인 되면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즉시 보호를 해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원확인이 지체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

※ 난민법 제20조에 따른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기간 종료 시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서 정한 보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보호 요건을 충족하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보호로 전환

3. 면담 및 사실조사

가. 출입국항에서의 면담 및 사실조사

○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청장등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면담 등을 통한 사실조사 시행

-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출입국항 난민면담조서(붙임28) 예상 질문을 작성하고, 필요 시 탑승항공기명 또는 선박명, 인적사항, 입국경위, 신청이유 등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 파악

- 출입국항에서의 면담은 회부 결정의 신속성 및 출입국항 운영의 특수성(연중 무휴 운영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공휴일 면담 허용
- 면담 과정은 녹음·녹화하는 것이 원칙
 - 다만, 난민신청자가 면담 과정 녹음·녹화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녹음·녹화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녹음·녹화 미동의 확인서(붙임10)를 제출

나. 변호인 접견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신청서 작성과 면담 등의 조력을 위해 변호인 및 통역인 등 동반 가능
 - ※ 접수 시 부모 등 보호자, 법률상 대리인, 통역인 등의 동반을 접수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 출입국항 등 여건에 따라 장소를 활용하되, 가급적 접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대면상담 보장, 가림막, 건강상태 고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
- 접견 절차는 'Ⅱ. 난민인정 신청 및 심사절차, 변호인 접견 절차' 준용

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면담 참여

- 유엔난민기구에서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담 참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관할 청장등에게 요청하여야 함.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음
 - 면담 절차는 'Ⅱ. 난민인정신청 및 심사절차, 변호인 접견 절차' 준용
- 유엔난민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부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신청자에 대한 면담 참여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 유엔난민기구의 면담 참여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유엔난민기구의 면담 참여 및 거부한 경우 이를 접견 대장(붙임15)에 기록하고 본인 서명

4. 회부·불회부 결정

가. 결정권자

- 출입국향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나. 결정 기한

-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 7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함(난민법 제6조 제3항)
 - ※ 7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여 입국을 허가한 경우 신청자에게 체류지 관할 청등에서 다시 난민인정 신청 하여야 함을 안내

다. 회부 결정의 효력

-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시행령 제5조 제6항)
 - ※ 회부 결정일에 회부를 결정한 청등에 난민인정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난민인정 신청 불요

라. 불회부 사유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 해당 여부)

-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테러 혐의로 입국이 규제된 자
 -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자
 -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으로 강제퇴거 명령 또는 출국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위에 준하는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난민인정심사 회부 시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기·멸실하거나, 브로커 등에게 제공한 자
- 국적,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및 선박 등의 탑승수속 시 사용한 여권의 국적, 성명 및 탑승지, 여행경로 등에 관한 질문에 거짓된 진술로 일관하거나 지속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난민심사관의 신원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신분 은폐를 위해 선박 등에 탑승 시 사용한 여권 등을 고의로 파기·멸실시킨 경우에는 파기·멸실시킨 정당한 사유 파악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입국심사 과정에서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밝힌 경우는 제외

- 거짓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기 위하여 위조여권을 사용한 자

※ 난민인정 신청을 하기 위하여 자국 탈출 수단으로 위조여권, 위조 초청장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지체없이 스스로 진술한 경우 등은 제외

- 난민인정 신청 사유 등에 관하여 거짓된 진술로 일관하는 자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 박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제3국에서 체류하다가 온 자

※ ‘안전한 국가’란 난민법상 난민인정 신청사유로 인한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국가라 할 수 있으며, ‘안전한 국가 출신’이라 함은 난민신청자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한 국가가 이러한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인 경우임

-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란 안전한 국가의 국적 소지 여부와 상관 없이 안전한 국가를 거쳐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를 말함

- ‘그 안전한 국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지, 그 국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안전한 국가에서 직접 또는 안전한 제3국에 체류하다가 온 경우에도 그 국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납득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5) 과거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 '중대한 사정의 변경'은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의 변경을 의미함

6) 난민법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

-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에 국한되는 등 난민법에 따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 5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신청자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난민법 상 난민개념에 해당하지 않아, 주장 자체로 난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신청자 진술의 중요 부분에 모순이 있거나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아 '명백한 허위 난민인정 신청'으로 불

수 있는 경우

- ※ ‘중요 부분’은 난민에 해당하는 원인 사실, 즉 박해와 관련된 진술 또는 자료를 말하며, 박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에 대한 진술 등은 제외

5. 회부·불회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가. 회부 결정 시 조치사항

1) 결과 통지, 접수증 교부 및 외국인등록 안내

- 청장등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교부
- 입국신고서 또는 난민인정신청서 상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위치 등을 설명하고,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 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철저히 안내

2) 입국심사

-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입국심사
 - ※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사증으로 입국심사를 하고, 사증이 없는 경우 일반외국인 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처리
- 조건부 입국허가
 - (대상) 여권 미소지, 위·변조여권 소지, 그 외 청장등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기간) 90일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하고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허가기간 연장 가능
 - (조건)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따를 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조건부입국허가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23호서식)를 발급하고, 조건부입국허가서 발급대장에 기재
 - ※ 난민은 자국 대사관 등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여권 발급을

조건으로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는 것은 부적절

※ 필요 시 법무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난민지원시설(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등)로 주거 제한

○ 위·변조여권 행사 또는 여권 미소지자의 입국기록 생성

- 난민인정심사 회부 시, 본인진술 또는 정황조사에 의해 밝혀진 인적 사항으로 입국기록 생성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명 또는 위·변조여권을 행사한 사람의 출입국심사 기록 등은 행사한 여권상의 인적 사항이 아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저장

3) 결과 보고 및 통보

○ 청장등은 조사보고서(심사보고서), 출입국항 난민면담조서(붙임28) 등을 첨부하여 회부심사 결과를 본부(난민정책과)에 보고

○ 난민인정신청서, 면담조서 등 관련 서류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이미지 등록 및 난민신청자의 체류지 관할 거점기관에 이첩 및 통보

※ 회부를 담당한 기관의 담당자는 회부된 자의 외국인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입국신고서 또는 난민인정신청서(입국신고서가 없는 경우) 상 체류지 관할 거점기관에 이첩

나. 불회부 결정 시 조치사항

1) 불회부결정통지서 교부

○ 청장등은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2서식)에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 중에서 해당되는 사유를 표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서(붙임29)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통역(전화통역 등)을 통해 불회부 사유 안내

○ 인수증(붙임19)을 제출받은 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이미지 등록

2) 입국재심사무실 인계

○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 교부 후 입국재심사무실로 인계하여

입국심사 절차 진행

3) 입국심사

- 입국 재심업무 담당자는 불회부 결정된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허가 여부 결정
- 위·변조여권 행사 또는 여권 미소지자의 경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및 입국불허 시, 별도 입국기록 생성 불요

다.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제기자 처리

1) 일반원칙(소송 제기 시)

-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청 등 사정을 고려하여 출국대기실, 환송구역 등에 대기하도록 안내하고,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 요청

2) 소송 진행 중 조치사항

- 하급심에서 국가 승소,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청 등 사정을 고려하여 출국대기실, 환송 구역 등에 대기하도록 안내하고,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 요청
- 하급심에서 국가 패소, 국가가 항소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난민인정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원고 승소 확정'을 조건으로 입국허가(조건부 입국허가)
 - ※ 국가승소가 확정되면 조건부 입국허가 기간 연장 불허하고 출국 안내, 국가 패소가 확정되면 난민인정심사 회부결정 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심사
 - ※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확정 전 체류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시도하면 강제퇴거 명령·보호조치 됨을 고지. 그럼에도 난민인정신청 하면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고 조건부 입국허가 조건 위반으로 보호조치 후 난민심사 진행

3) 소송 확정 시 조치사항

- 국가승소
 - 항공사·변호인·UNHCR 등과 협의하여 자발적 출국 유도, 송환 거부 시 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조치

※ 유아동반 등 인도적 고려 필요시 강제퇴거명령은 하되 보호조치(보호명령) 없이 항공사에 적극적인 송환집행(항공보안요원 동반 등) 지시

○ 국가패소

- 난민 인정심사 회부 결정을 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심사

6. 난민임시상륙허가 (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

가. 허가권자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나. 신청대상

○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으로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사람

다. 제출 서류

- 난민임시상륙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별지 제30호의3 서식)
- 소명자료(신청인 자격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cm × 4.5cm) 1장

라. 허가 기간

- 90일의 범위에서 상륙허가
- 허가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어 상륙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90일의 범위에서 허가기간 연장(연장횟수는 제한 없음)

마. 허가 절차

- 청장등은 난민 임시상륙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 하여 난민임시상륙허가 승인 여부 결정
- 법무부장관이 난민임시상륙허가를 승인하면 청장등은 난민임시상륙

허가서를 발급하고, 난민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거소 지정

- 청장등은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5 서식)에 기재

7. 출입국항 자료 등의 열람·복사

가. 대상

- (열람·복사 대상) 본인이 제출한 자료, 출입국항 난민면담조서
- (열람 대상) 녹음·녹화자료

나. 신청권자

- (회부 결정된 사람) 난민신청자가 난민면담조사 등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
- (불회부 결정된 사람) 불회부 결정된 사람은 난민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난민신청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난민법 제16조에 따른 열람·
복사 청구권이 없음

- 다만,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본인이 제출한
자료 및 난민면담조서의 열람·복사, 면접 녹음·녹화 자료 열람 허용
※ 신청방법, 수수료, 대장 관리 등 기타 규정은 “II. 난민인정 신청 및 심사절차,
11. 자료 등의 열람·복사”에 따라 처리

1. 체류관리 일반원칙

가. 체류기간의 계산

-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민법 제157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민법 제161조)

나. 체류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불법체류기간 등 계산

- 난민인정 신청, 난민인정 결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 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도록 안내

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범위

○ (원칙)

- 난민인정자(F-2-4) 3년, 인도적체류자(G-1-6) 1년, 난민신청자(G-1-5) 6개월
 - ※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가 세금 등을 체납하여 납부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를 하는 경우,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에 따른 체류기간 범위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
-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은 주 체류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 인도적체류자의 가족(G-1-12)은 주 체류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 난민신청자(G-1-5)가 대법원 소송 종료기한이 1~2개월 남은 경우에는 3개월 체류기간 연장
- 사범처리 과정에서 본부(이민조사과) 협의 하에 체류기간이 사전 결정된 경우에 동 결정된 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

- (예외) 위 기준과 달리 체류기간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는 결재권자(과장급 상당 이상)에게 사전 보고 및 결재 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원칙과 달리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사유를 충분히 안내

라. 각종 체류허가 등 수수료

1) 원칙

-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하게 징수(단,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2) 예외사항

가) 체류자격 부여

- (면제대상) 난민신청자등의 국내 출생자녀
- (입증서류) 국내병원 발급 출생증명서 등 국내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면제대상) 난민신청자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
- 취업을 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임산부, 9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난민법 제40조에 따른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주자

※ 상기 대상 외에도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부에 승인 상신하여 면제

- (입증서류) 진단서 등 각 대상별 관련사실 증명에 필요한 서류

마. 대상별 처리기준

1) 위변조 여권소지자 및 밀입국자 등

- 위·변조 여권 행사, 밀입국 또는 국내 출생 등으로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변조 여권 입수 경위, 밀입국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한 사유서 제출

※ 난민인정 신청 또는 최초 체류허가 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후 체류관리 과정에서는 사유서 제출 생략

2) 입국금지자

- (난민신청자) 최초 체류자격부여·변경·연장 시 본부(난민정책과) 승인을 받아 체류허가, 본부 승인을 받은 이후의 체류허가는 청장등의 권한으로 결정

※ 형사범으로 입국금지된 경우는 매 체류허가마다 본부 승인받아 체류허가

- (인도적체류자·난민인정자 및 그 가족) 최초 체류허가 시 본부(출입국심사과, 난민정책과)에 입국금지 특별해제 승인 상신, 입국금지 특별해제 후 체류허가

※ 입국금지 특별해제 대상 중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자'에 해당

바. 신원불분명 난민에 대한 기록관리

1) 공적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가) 적용대상 :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나) 업무처리 절차

○ 체류업무 담당자

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처리

- 공적증명서(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등)를 근거로 등록사항 변경 처리
- 생년월일 또는 성별 변경 시 외국인등록번호를 재부여하고 성명만 변경된 경우는 기존 외국인등록번호 유지

※ 외국인등록번호 재부여 시에는 인적사항 변경 관련 내용을 참고사항에 반드시 입력하여 관리(변경이력 확인 시 필요)

- 난민인정증명서 및 난민여행증명서(발급받은 자에 한함) 재발급 신청 안내

※ 등록사항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추후 사실관계 확인 시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이미지화하여 해당 등록정보에 저장

②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등 후속절차 진행

③ 난민업무담당자(사무소)에게 난민인정 신청 및 난민인정 기록 정정 요청(공문 시행)

※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추후 공문시행 가능

○ 난민업무 담당자

- ① 체류담당 부서에서 발송한 기록정정 요청 공문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 및 난민 인정 기록 정정
- ②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난민인정증명서 등 재발급
 - ※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의 경우 재발급 신청에 따라 재발급

2) 출생증명서 20), 졸업증명서 등 공적증명서는 아니지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 적용대상 : 난민인정자

나) 업무처리 절차

○ 난민업무 담당자

- ① 난민인정증명서 등 인적사항 변경 신청 접수
- ② 본인이 제출한 서류, 진술 및 정황조사 등을 통해 실제 인적사항 확인
- ③ 난민인정 신청 및 난민인정 관련 기록 수정
- ④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난민인정증명서 등 재발급
 - ※ 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청장등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할 것을 안내
- ⑤ 체류업무담당자에게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사항 기록변경 요청(공문 시행)

○ 체류업무 담당자

- 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처리
 -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발급된 난민인정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등록사항 변경
- ②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등 후속절차 진행

3) 본인 진술 이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가) 적용대상 : 난민인정자

나) 업무처리 절차

○ 난민업무 담당자

20) 출생증명서 발급기관이 국가기관이면 '1) 공적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

- ① 난민인정증명서 등 인적사항 변경 신청 접수
- ② 면접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해 인적사항 변경 가부 결정
- ③ 인적사항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난민인정 신청 및 난민인정 관련 기록 수정
- ④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난민인정증명서 등 재발급
 - ※ 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청장등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할 것을 안내
 - ※ 인적사항을 변경을 불허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사유 등 설명 후 종료
- ⑤ 체류업무담당자에게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사항 기록변경 요청(공문시행)

○ 체류업무 담당자

- 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처리
 -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발급된 난민인정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등록사항 변경
- ②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등 후속절차 진행

2. 난민신청자 체류관리

가. 체류자격 부여·연장·변경 등 (세분류 코드 G-1-5)

1) 체류자격 부여

가) 대상

- 난민신청자 중 국내 출생자·밀입국자 등 출입국관리법 제23조 해당하는 사람

- 기타(G-1)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 등으로 국내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충적·임시적으로 부여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cm × 4.5cm) 1장
- 난민인정신청 접수증(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가족관계 입증서류

※ 가족결합 사유 난민신청자에 한하며, 난민인정 신청 시 제출한 가족관계 입증 서류로 갈음 가능

○ 체류지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이하 '체류지 입증 서류'란 위 서류를 말함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35개 국가²¹⁾ 국민)

※ 이하 '결핵검진확인서'는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결핵검진확인서(진단서)를 말함

※ 난민인정신청 시 결핵이 포함된 건강진단서 제출한 경우 사본 첨부

※ 난민인정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자격변경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가능

다) 조치사항

○ 체류자격 부여 : 기타(G-1-5, 1년 이내)

※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체류기간 동일하게 부여

난민신청자의 미성년 자녀가 체류허가를 신청한 경우 처리기준

▪ 난민신청자의 미성년 자녀가 난민인정 신청 후 체류허가 신청한 경우

○ 국내출생자(출생 후 90일 이내)

- (주신청자가 합법 등록외국인) 체류허가(G-1-5, 1년 이내)

※ 주신청자의 체류기간을 참고하여 체류기간 등 부여

- (주신청자가 기한유예 또는 불법체류) 체류허가(G-1-5, 6월 이내)

※ 주신청자의 체류기간을 참고하여 체류기간 등 부여

21)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이상 '16.3.2.), 라오스('17.9.1.),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이상 '20.4.1.지정)

- 국내출생자(출생 후 91일 이후)
 - (17세 미만 22)이고 주신청자가 합법 등록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79조(허가 신청 등의 의무자) 위반 과태료 처분 후 주신청자의 체류기간을 참고하여 체류자격(G-1-5, 1년 이내) 부여
 - (17세 이상 19세 미만) 본 지침 “난민인정 신청 당시 불법체류자” 처리방법 준용(단, 보호 관련 사항은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
 - ※ 주신청자의 체류기간을 참고하여 체류기간 등 부여
- 국내출생자가 아닌 경우, 일반적인 체류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
- **난민신청자의 국내출생 미성년 자녀가 난민인정 신청을 하지 않고 체류허가 신청하는 경우**
 - (17세 미만이고 주신청자가 합법 등록외국인) 주신청자의 체류기간까지 체류 허가(G-1-99 부여 등)
 - ※ 단,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도과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라 허가신청 등 의무자 처분 후 체류허가
 - ※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
 - (17세 이상 19세 미만) 일반적인 체류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

2) 체류자격 변경 허가

가) 대상

- 난민신청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24조 해당하는 사람

나)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 한함)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cm × 4.5cm) 1장
- 난민인정신청 접수증(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가족관계 입증서류
 - ※ 가족결합 사유 난민신청자에 한하며, 난민인정 신청 시 제출한 가족관계 입증 서류로 갈음 가능

22) 출입국관리법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의 연령(17세 미만) 규정 준용

- 체류지 입증 서류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35개 국가 국민)

다) 조치사항

- 체류자격 변경 : 기타(G-1-5, 6개월 내지 1년)

라) 체류허가의 특례

-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난민인정 절차 희망자
 - 난민인정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체류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기존 체류자격(D-2, D-8 등) 유지 가능
 - ※ 다만, 체류자격 성질 상 난민인정 신청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체류자격(A계열) 소지자는 기타(G-1-5)자격으로 변경 조치

3) 체류기간 연장 허가

가)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절차(소송 포함)가 진행 중인 사람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 이의신청 제기기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80일(행정심판) 및 1년(행정소송) 이내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자
 -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도과하여도 접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제기기간 내 접수를 하였는지 확인

나)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 한함)

- 체류지 입증 서류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제기 관련 증명서류
 - 소송제기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인 경우 소접수증명원 또는 소계속 증명원, 이후 체류기간 연장인 경우 소계속 증명원
 - ※ 소송이 계속 진행 중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체류기간 연장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35개 국가 국민)
 - ※ 최초 연장인 경우에만 제출

다) 조치사항

- 허가기간 : 6개월
 - ※ 단,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장등이 법정기한(1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허가기간 부여 가능

4) 체류지 변경신고

- 일반외국인 체류관리 절차 준용

5) 체류허가 제한 심사 대상자 처리기준 (난민인정 신청 당시 합법체류자)

< 기본 원칙 >

- 청장등은 난민신청자의 체류실태, 과거 범법사실, 범위반 경위,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결정
- 난민인정 신청 시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체류허가 등 신청 시 기간이 초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관 사정에 따라 체류허가 신청 접수 등 사안별 조치
- 사안에 따라, 체류허가 할 사안이 있는 경우 체류허가하는 등 처분에 재량권 행사

가)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 통지 후 출국기한 유예 조치 대상

- 난민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아 종료된 사람이 재신청한 경우
- 난민법 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법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4개월 이내)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 명백히 난민협약 상 난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재신청하는 경우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사람이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 ※ 사무소 재방문에 따른 민원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 14일 이내 출국기한 명시)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출국기한유예(3개월 이내) 절차 동시 진행

나) (원 처분에 따른) 출국기한 유예 조치 대상

-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출국기한 유예 처분 권한 기관 : 최초 처분청이 아니더라도 체류지 변경사실이 확인되면 변경된 체류지 관할청 등에서 출국기한 유예

- (예시) 난민신청자가 A청에서 출국기한 유예처분 받고 B청 관할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B청의 사범(체류)담당자는 출국기한 유예 조치(3개월)하고, 변경된 주소지 서류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별도 기재
 - 제목 : 출국기한 유예자 체류지 변경
 - 참고사항 : 변경된 주소지 기재

나. 난민신청자 취업허가

1) 대상

-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난민신청자(난민법 제40조)
 - ※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 귀책사유로 인한 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청장등이 특히 인도적인 배려(임산부, 장애인 등 부양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허가 가능

2)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 한함)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서류

※ 난민신청자가 외국어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제출 및 절차 등 진행

3) 허가기준 등

- (취업 허용 업종) 아래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 업무

취업제한 업종

- 건설업(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건설업만 기재되어 있으면 취업 불가, 건설업·제조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건설업 취업불가 조건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스티커 하단에 “건설업 취업 불가” 날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난민신청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허가 절차)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절차 준용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스티커 하단에 “건설업 취업 불가” 날인

- 난민신청자가 그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 (유의 사항) 취업허가는 사전 허가사항임

- 난민신청자가 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제출 및 절차 등 진행

- 근무처(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기준」 적용

다. 법 위반자 사범 처리기준 등

1) 난민인정 신청 당시 불법체류자 처리 기준

- 청장등은 난민신청자의 체류실태, 과거 범법사실, 법위반 경위,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량권을 행사하여 심사결정

○ 통고처분(벌칙금) 면제 후 출국명령 대상

- 자진출석 후 최초로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로 난민인정 신청 후 체류 허가 등 신청일 기준 불법체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 (자진출석, 최초 난민인정 신청 한 자로) 합법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 하였으나 체류허가 등 신청 시 불법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도 위에 준하여 처리

○ 통고처분(벌칙금 부과) 후 출국명령 대상

- 자진출석 후 최초로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로 난민인정 신청 후 체류 허가 등 신청일 기준 불법체류 기간이 31일 이상인 경우
- ※ (자진출석, 최초 난민인정 신청 한 자로) 합법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 또는 불법 체류 기간이 30일 이내에 난민인정 신청 하였으나 체류허가 등 신청 시 불법 체류기간이 31일 이상인 경우도 위에 준하여 처리

○ 보호조치 대상

- 불법체류 상태로 단속에 적발된 후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불법체류 중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 불법체류 중 난민인정을 재신청 하는 경우
- ※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보호 해제 적극 검토
- 그 외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서 정한 보호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난민심사 진행 중 체류기간 도과자 처리 기준

- 청장등은 난민신청자의 체류실태, 과거 범법사실, 범위반 경위,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량권을 행사하여 심사결정

○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후 체류허가 대상

-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심사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연장

○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후 출국명령 대상

-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후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이 출국기한 도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 다만, 난민인정 절차 종료 시까지 3개월 이내에서 출국기한 유예

○ 보호조치 대상

-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사람으로,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출석한 경우
- 기타(G-1-5)자격 불법체류 후 단속에 적발된 경우
-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이 출국기한 도과 후 31일 이상인 경우 (다만,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도과기간에 상관없이 보호조치)
-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불법체류 중 단속에 적발된 경우
-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불법체류 중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 그 외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서 정한 보호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다만, 난민인정 심사 종료 시까지 강제퇴거명령 집행 유예

3) 불법취업자 처리기준

- 난민신청자가 취업제한 업종에 불법취업 하는 경우에는 일반 체류 외국인에 준하여 사범처리, 다만 취업허용 업종에 불법 취업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

가) 난민인정 신청일 이후 6개월 이내 취업한 경우(단속 포함)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외국인고용의 제한) 위반으로 통고처분

- 통고처분 불이행시 고발 조치
- 나) 난민인정 신청일 이후 6개월 경과 후 취업허가 없이 취업한 경우(단속 포함)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위반으로 통고처분
 - 통고처분 불이행시 고발 조치
- 다) 출국명령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자가 그 기한 내 취업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외국인고용의 제한) 위반으로 통고처분
 - 통고처분 불이행시 고발 조치
- 라) 체류기간 또는 출국유예기간 도과 후(불법체류 중) 취업 중 단속
 - 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조치 후 난민심사 진행
- 마) 범칙금 감면
 - 난민인정 신청 사유, 범칙금 부담 능력, 불법취업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감면 여부 결정

4) 벌금형 확정자 처리기준

- 가) 기본원칙
 - 벌금형이 확정된 난민신청자는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라 처리
 - 다만, 출국조치 대상은 난민인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 집행 보류
- 나) 난민인정 절차 종료 전 강제퇴거 집행
 - 연령, 범죄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범죄 경력,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 집행
 -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5) 국내 입국 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행위자 처리기준

가) 적용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난민 신청자(면접과정에서 진술한 경우 포함)
 - ※ 살인, 성폭행, 무장강도, 마약거래, 마약투약 등

나) 조치사항

- 강제퇴거 명령(보호조치) 및 퇴거 집행
 - 입국규제 관련사항은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리
 - ※ (적용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62조 제4항
-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소송이 인용된 경우에는 본안 소송 확정시까지 퇴거 집행 보류

다) 업무처리 절차

- (체류업무 담당)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난민인정 제한(배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사범업무 담당부서로 인계
- (사범·보호업무 담당) 난민인정 제한(배제) 강제퇴거 대상자를 강제퇴거 명령(보호조치)하는 경우 또는 퇴거 집행 이전, 지체 없이 본부(난민정책과, 이민조사과) 보고
- (출입국항 조치사항)
 - 난민인정 제한(배제) 대상자가 출국하였다가 입국할 경우 입국불허 조치
 - 난민인정 제한(배제) 대상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사범심사 결정(출국 명령) 후 출국 조치
 - ※ 출입국항에서 입국불허 또는 출국명령 조치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본부(난민정책과)에 보고
- (기타 사항)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으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난민인정의 제한(배제) 강제되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본부(난민정책과)에 보고하고 본부 지시에 따를 것

6) 신원확인 등 난민신청자의 보호 및 해제절차

가)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 (대상)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원을 은폐하여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기하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한 자
 - 난민법상 신원확인의 대상은 난민신청자이므로, 출입국항에서 회부 여부를 심사 중인 사람은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대상이 아님
 - ※ 다만, 난민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여 조건부 입국허가한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
- (절차)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
 -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의 연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원확인이 지체 되는 경우 10일 범위에서 청장등으로부터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 보호기간 연장
 -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의 해제) 난민신청자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10일 이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 하여야 함
 - (보호 관련 규정의 준용)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에 관하여 난민법령 및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
- (행정사항)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신원확인을 위해 보호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나) 보호의 일시해제

- (대상) 보호 중인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승소 (1심 또는 2심)한 경우, 기타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가 필요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

- (절차)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보호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보증금 부담능력이 없는 자는 난민신청자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감액 또는 신원보증인의 보증으로 보호 일시해제

7) 체류허가 및 사범처리의 특례

- 인도적 사유 등 개별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법 위반 사실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 승인 상신 하여 처리

라. 난민소송 제기자 등 처리기준

1) 난민소송 제기자

- 난민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 조치
 - 다만, 소송 제기자가 '체류허가 제한 심사 대상자' 유형에 해당하면 아래 '3)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반복적 소송제기자에 대한 조치사항' 준용

2) 난민소송 확정 시 조치사항

- (국가 승소) 체류기간 연장 불허, 불허결정 통지서에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출국기한 명시
- (국가 패소) 판결 취지가 난민인정을 하는 취지인 경우,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재처분(난민인정 결정) 여부 및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난민인정자 체류자격(F-2-4) 변경·부여 등 체류허가

3)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반복적 소송제기자에 대한 조치사항

- (예시) 추후보완 항소(상고)장 또는 (재)항고장 제출한 경우, 소송종료 후 같은 처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난민불인정처분 1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임

○ (조치사항)

- 체류기간연장 불허 후 소송절차 종료 시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 유예
- 출국기한 유예 중인 경우 소송절차 종료 시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 유예
- 이미 소송종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절차 종료 시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 유예

3. 인도적체류자 체류관리

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세분류 코드 G-1-6)

1) 체류자격 부여

가) 대상

-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으나 난민법 제2조 제3호(인도적체류자)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중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보호 중인 자, 밀입국자 등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cm × 4.5cm) 1장
-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체류지 입증 서류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35개 국가 국민)

다) 조치 사항

- 체류자격 부여 : 인도적체류자(G-1-6, 1년)
-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안내문(붙임21) 교부

※ 인도적 체류허가 시 안내문을 이미 교부 받은 경우는 생략 가능

2)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상

-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으나 난민법 제2조 제3호(인도적체류자)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중 체류자격 정정이 필요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사람

나)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cm × 4.5cm) 1장(등록증 재발급 시)
- 체류지 입증 서류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35개 국가 국민)

다) 조치 사항

- 난민신청자(G-1-5) 자격 소지자
 - 인도적체류자(G-1-6)로 체류자격 정정 후 체류기간 연장(1년)
 - ※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난민신청자가 체류자격 변동 없이 세분류 코드만 인도적체류자(G-1-6)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는 체류신청 및 허가사항 란에는 “자격변경”란으로 설정하여 입력할 것(정정 후 체류기간 연장 조치한 경우 연장 수수료 부과)
 -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안내문(붙임21) 교부
- 난민신청자(G-1-5) 자격 외 체류자격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인도적체류자(G-1-6, 1년)로 체류자격 변경
 -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안내문(붙임21) 교부
 - ※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가 기존 체류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불요

3) 체류기간 연장 허가

가) 대상

- 인도적체류자(G-1-6)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국내 체류를 허가한 인도적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

나)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

다) 조치 사항

- 허가기간 : 1년
-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안내문(붙임21) 교부
※ 인도적 체류허가 시 안내문을 이미 교부 받은 경우는 생략 가능

4) 체류지 변경신고 및 재입국허가

- 일반외국인 체류관리 절차 준용

5) 체류허가 취소 및 기간연장 등 불허기준

가) 체류허가 취소 또는 기간연장 등 불허 사유

- 거짓 서류의 제출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 본국의 사정 변경으로 본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경우
- 인도적 체류허가 이후에 난민인정의 제한, 취소 및 철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기타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인도적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없다고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나) 절차

- (체류허가 취소자)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 및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발부일로부터 30일 범위 내 출국기한)
-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 발급(발급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

나. 취업활동 허가(난민법 제39조) 기준

1) 기본원칙

- 통상적인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되, 전문직은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시 취업 가능
 - ※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서류

3) 허가 기간 등

- (허가기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계속 연장 가능)
- (취업허용 업종) 아래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 노무

취업제한 업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난민신청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조치사항)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 준용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내용과 허가기간 명시
- 건설업 취업의 경우,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사항 입력 시 '인도적체류자' 입력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 교부
 - ※ 건설업 취업 시 사전 의무사항인 '외국인노동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신청 시 대상자의 체류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

○ (유의사항) 취업허가는 사전 허가 사항임

- 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체류 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제출 및 절차 등 진행
- 근무처(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기준」 적용

4) 조치 사항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내용과 허가기간 명시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 발급

다. 법 위반자 처리 방법

1) 일반사항

-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위반한 자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

2) 인도적체류자 불법취업자 처리방안

가) 일반원칙

- 인도적체류자가 취업제한 분야에 취업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단, 건설업 취업자의 경우 적발 시 통고 처분 후 체류허가), 취업제한 분야 이외 취업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

나) 인도적체류자가 취업허가 없이 취업한 경우(단속 포함)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위반으로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 통고처분 불이행시 고발 조치

라.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기준 (세분류 코드 G-1-12)

1) 기본원칙

- 인도적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인도적체류자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고자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아 가족여부를 확인 후 인도적체류자 가족(G-1-12)으로 체류자격 부여(변경)

※ 인도적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독자적인 난민인정 신청 사유 없이 오로지 가족과 함께 체류하고자 난민인정 신청하는 경우, 난민인정 신청 접수 없이도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허가 신청 안내

-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를 인정하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은 불인정
- 인도적체류자의 가족 등이 난민인정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도적체류자 가족(G-1-12) 체류허가 불허

2) 체류허가 대상 가족의 범위

- 인도적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배우자) 본국에서 합법적인 혼인관계가 인정(공적 서류 입증)되어야 함

※ 다만, 체류자격 변경 시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공적인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의 구체적 경위 및 진정성 등을 실태조사 후 예외적으로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 인정

※ 인도적체류자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새로운 배우자와 혼인(중혼)한 경우에는 국내 민법에 따라 배제

- (자녀) 배우자가 없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 한함
- (부모, 형제자매)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부모의 경우 국내에 동반 입국하여 함께 난민인정 신청 시 신병치료, 자녀양육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에 포함(개별적으로 입국한 경우는 제외)

3) 체류자격 부여·변경 허가

가)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cm × 4.5cm) 1장
- 가족관계 입증서류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혼인신고 수리증명서 등 혼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부부 및 친생자 관계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실태 조사 등을 거쳐 가족관계의 진정성 확인 후 체류허가
- 체류지 입증서류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35개 국가 국민)

나) 조치사항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 기타(G-1-12, 1년 이내)
 -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적체류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부여

4) 체류기간 연장 허가

가)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나) 조치사항

- (허가기간) 인도적체류자가 국내 체류하는 동안 매회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

5) 취업활동 허가

-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가 절차 및 기준 준용

6) 불법체류 중 신청자 처리기준

- (불법체류기간 계산) 체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 (통고처분 면제 대상) 자진출석한 사람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불법체류일이 30일 이내인 경우
- (통고처분 대상) 원칙적으로 상기 통고처분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4. 난민인정자 체류관리

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세분류 코드 F-2-4)

1) 체류자격 부여

가) 대상

- 난민법 제2조 2호(난민인정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보호 중인 자, 밀입국자 등 출입국관리법 제23조 해당하는 사람
 - ※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된 후 입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 회수

나)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 난민인정증명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cm × 4.5cm) 1장
- 체류지 입증 서류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35개 국가 국민)

다) 조치 사항

- 체류자격 부여 : 난민인정자(F-2-4, 3년)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부여
 - 보호 중 난민인정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호해제 후 난민 인정자 체류자격 부여 23)

2)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상

- 난민법 제2조 2호(난민인정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사람

나)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 난민인정증명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cm × 4.5cm) 1장
- 체류지 입증 서류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35개 국가 국민)

다) 조치 사항

- 체류자격 변경 : 난민인정자(F-2-4, 3년)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부여

23)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보호된 외국인의 형을 면제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고 보호를 해제하여야 함

3) 체류기간 연장 허가

가) 대상

- 난민인정자(F-2-4) 체류자격 가진 사람 중 국내 체류를 허가한 난민 인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

나)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

다) 조치 사항

- 허가기간 : 3년

4) 체류지 변경신고 및 재입국허가

- 일반외국인 체류관리 절차 준용

5) 난민인정자의 취업 활동

-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나. 영주자격(F-5) 변경허가 (세분류 코드 F-5-27)

1) 허가권자

- 법무부장관
 - 난민인정자가 영주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본부(난민정책과)에 승인상신

2) 대상

-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F-2-4)으로 아래 2)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3) 허가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난민인정자(F-2-4) 체류자격으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을 것
 - ※ 완전히 출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체류 중이어야 하며, 재입국허가(면제 포함)를 받고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재입국한 경우는 국내 체류 기간으로 인정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 되는 경우
-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서 정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합격

4)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24)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25)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26)
- 신원보증서

24) 생명과 신체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경우, 국내출생 자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여권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또는 위·변조여권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여권 생략(자격변경 및 자격부여 시 제출한 사유서 확인)

25)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등 체류지 입증 서류

26)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체류 중 해외로 출국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

- 생계유지(연간소득) 요건 관련 서류 27) : 소득주체별 제출
 - ① 국세, 지방세 등 납세 완납 관련 공적증명서류(납세증명서 또는 체납 증명서 등)
 - ② 총수익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증명서류
- 기본소양 요건 입증 서류(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 여야 함)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5) 심사절차 등

가) 접수

- 영주자격 신청 당시 잔여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먼저 체류기간을 연장한 다음 신청을 받을 것
- 이 지침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발급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영주자격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함

나) 서류심사

- 미비서류는 등기로 보완요청

서 류	보완 기간
국내 발급	최초 10일 보완 기간 부여 → 미 보완시 10일 연장 → 미보완시 마지막으로 10일 연장
국외 발급	최초 30일 보완 기간 부여 → 미 보완시 30일 연장 → 미보완시 마지막으로 10일 연장

27)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1년(이하 “신청일의 전년도”라 함)의 소득 관련 서류일 것(세금 관련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신청연도의 전전년도의 소득 관련 서류 가능)

다) 실태조사

- 서류심사만으로 허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

6) 영주자격 변경 제한 대상 및 불허사유

○ 영주자격 제한대상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람
- 해외범죄경력 확인에 따른 영주자격 변경의 제한 대상자
- 범칙금 및 벌금형을 받은 자는 「체류관리 제한 통합기준」 적용

○ 영주자격 불허결정 사유

-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 요청기간 동안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 위반 혐의로 조사·수사·재판(민사 재판은 제외) 중인 사건이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종 결정(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취하)한 경우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사망한 경우

7) 심사 후 조치사항

가) 허가결정

- 허가요건을 충족한 경우 영주(F-5-27)자격으로 변경
- 심사보고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 및 허가 결정통지

나) 불허결정

-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 발부

8) 행정사항

- 영주자격의 심사절차 및 법적지위, 재입국허가, 영주자격 상실, 영주자격 취소, 영주자격 심사·불허 시 필요한 양식 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자격(F-5) 자격부여 대상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

다.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출입국관리법 제8장의2)

1) 일반사항

가) 발급 대상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은 자

나) 발급목적

- 난민인정자가 출국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다만,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급하지 않음

다) 발급 시기

- 신청대상자가 출국하고자 하여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을 한 때

라) 유효기간 등

-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체류허가 기간과 상관없음)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한 내 횟수 제한 없이 재입국 가능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 불요)
 -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국내 입국 기간을 한정할 수 있음
 - 입국기간을 한정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인에게 고지

- 체류기간 도과 후 입국한 경우 입국 시 청장등은 국적에 따라 사증면제 및 무사증 입국허가 또는 단기방문(C-3-1, 30일) 자격으로 입국허가
- ※ 입국 후 체류지 관할 청등에서 체류자격 변경(F-2-4) 절차를 받도록 안내

마) 신청 방법

- 발급 신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1서식)에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등에게 제출

바) 제출 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cm × 4.5cm) 1장
- 수수료 1만원

사) 심사

- 청장등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난민인정 사실 확인
 - 신청인의 난민인정의 취소 여부 또는 난민인정 취소대상인지 여부
 -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5 제4항28)에 따라 입국 기간(3개월 이상 1년 미만)을 특히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아) 발급 결정 및 발급 요청

- 청장등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조폐공사에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송부하여 난민여행 증명서 발급의뢰를 하여야 함
 - (난민여행증명서 허가 정보) 발급번호, 발급일자, 만료일
 -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출생지, 신청자 사진

28)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수 있음

※ 한국조폐공사는 접수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수단이 없으므로 데이터 송부 시 송신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청자 사진 규격 준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 단, 청장등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10(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제3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그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함

자) 교부

- 청장등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3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인수증에 서명을 하게 한 후 난민여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 난민여행증명서 교부 시 체류기간 내 재입국하도록 안내하고, 체류기간 내 재입국하지 않을 경우 체류자격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

2)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가) 신청

- 난민인정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제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제출 서류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의14서식)
-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다)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시기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 허가

※ (예시)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이 '22. 1. 31.인 난민인정자(체류기간 만료일 '22. 7. 31.)가 '22. 3. 1. 재외공관에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한 경우 '22. 7. 31.까지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허가

- 다만, 체류기간이 이미 도과된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 받도록 안내

라) 유효기간 연장 후 조치사항

○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란에 유효기간 연장사항 기재

○ 재외공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

○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보고를 받은 때에는 청장등에게 통보

3)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

가) 재발급 사유

○ 난민여행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

○ 난민여행증명서가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난민여행증명서의 사증란에 심사인을 날인할 공간이 없는 경우

- 위변조방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새로운 난민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던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함

▪ 다만, 난민여행증명서가 훼손되었거나 심사인을 날인할 공간이 없어 재발급하는 경우 등 구 난민여행증명서를 계속하여 소지할 필요가 있으면 구 난민여행증명서에 'USED' 날인 후 신 난민여행증명서와 붙여서 소지하도록 함

나) 신청 기한

-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다만, 14일이 지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음

다) 접수 기관

- (대한민국 안에서의 신청) 관할 청장등에게 재발급 신청
- (대한민국 밖에서의 신청)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은 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라) 제출 서류

-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1서식)
-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cm × 4.5cm) 2장
- 현재 가지고 있는 난민여행증명서
- ※ 분실 시 분실사유서 등 제출
- 수수료 1만원

마) 재발급 심사, 결정 및 요청 등

- 재발급 심사, 결정 및 요청은 동 지침의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심사, 결정 및 요청의 처리절차를 준용
- 단, 청장등이 대한민국 밖에 있는 신청인에게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하고 신청인에게 재외공관 등을 거쳐 그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함

바) 교부

- 청장등은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대장에 재발급 등의 사실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인수증에 서명을

하게 한 후, 교부하여야 함

- 신청인이 대한민국 밖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급된 난민여행증명서와 인수증을 우편으로 송부

- 재외공관의 장은 송부 받은 난민여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인수증에 서명을 하게한 후 교부하고, 교부사실을 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 분실 사유로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 시, 분실된 난민여행증명서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당사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음

4) 난민여행증명서 등 반납 등

가) 반납 대상

○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난민인정증명서와 난민여행증명서를 청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함

- 청장등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 통지를 받은 때

○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음

나) 반납기한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4일 이내의 기간

다) 반납명령 절차

○ 법무부장관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5서식)를 청장등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

라) 난민여행증명서의 효력 상실

○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한 때 또는 반납기한이 경과 한 때

마) 분실 또는 효력이 상실된 난민여행증명서에 대한 조치사항

- (분실) 난민여행증명서 분실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접수한 청장등은 분실 내용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효력 상실)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교부한 청장등은 반납자인적사항에 반납명령일자, 반납기한, 반납명령이유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분실 또는 효력이 상실된 난민여행증명서 사용자에 대한 조치사항)
 - 출국 시 조치대상 난민여행증명서 행사사실을 적발한 경우, 출국보류, 새로운 난민여행증명서로 출국하도록 안내
 - 입국 시 조치대상 난민여행증명서 행사 사실을 적발한 경우, 본인여부 확인 및 분실 난민여행증명서 행사 경위 등 조사 후 입국조치여부 결정
- ※ 舊 난민여행증명서는 “USED” 날인

5) 보고사항

- 청장등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현황을 정기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법 위반자 처리기준

- 난민인정자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마. 난민인정 취소 및 철회된 자에 대한 조치사항

1) 난민인정이 취소된 자

가) 체류 담당 부서

- 출국자(등록증 미반납) : 난민인정 결정 취소된 자가 출국한 경우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 입력 후 출국일 기준으로 완전출국 기록정리

- 국내 합법체류자 : 난민담당자로부터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석
요구서 발부 및 참고사항 입력

출석자	더 이상 국내 체류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 후 사범담당자에 인계	
불출석자	출석요구서 반송 시	출석요구서 공시송달 (출입국관리법 제91조 제2항) ⇒ 체류허가 취소 및 소재불명 입력 ⇒ 체류허가 취소 통지 공시송달
	출석요구서 정상 수령 후 불출석 시	체류허가 취소 ⇒ 체류허가 취소 통지 송달 (반송 시 공시송달)

나) 사범담당 부서

- 체류허가 취소 후 사범과에 인계된 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출국명령

다) 행정사항

- 난민인정이 취소된 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관련 절차 종료 시까지 3개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 유예

2) 난민인정이 철회된 자

가) 체류담당 부서

- 출국자(등록증 미반납) : 난민인정 결정 철회된 자가 출국한 경우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 입력 후 출국일 기준으로 완전 출국 정리
- 국내 합법체류자 : 난민담당자로부터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석
요구서 발부 및 참고사항 입력

출석자	더 이상 국내 체류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 후 사범담당자에 인계	
불출석자	출석요구서 반송 시	출석요구서 공시송달 (출입국관리법 제91조 제2항) ⇒ 체류허가 취소 및 소재불명 입력 ⇒ 체류허가 취소 통지 공시송달
	출석요구서 정상 수령 후 불출석 시	체류허가 취소 ⇒ 체류허가 취소 통지 송달 (반송 시 공시송달)

○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자(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가
자진출석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14일까지 출국기한 명시

○ 출국기한 유예 신청 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처리

나) 사범담당 부서

○ 체류허가 취소 후 사범과에 인계된 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출국명령

다) 행정사항

○ 난민인정 철회된 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관련
절차 종료 시까지 3개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 유예

바. 난민인정자의 가족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등

1) 가족 범위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배우자) 본국에서 합법적인 혼인관계가 인정(공적 서류 입증)되어야 함

※ 다만, 체류자격 변경 시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공적인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의 구체적 경위 및 진정성 등을 실태조사 후
예외적으로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 인정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새로운 배우자와 혼인
(중혼)한 경우에는 국내 민법에 따라 배제

- (자녀) 배우자가 없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 한함

※ 성년인 자녀는 일반적인 입국심사 및 체류절차에 따라 처리

- 그 밖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은 아래 가족재결합·가족결합·가족
동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2) 난민인정자의 가족재결합 등 개념

- (난민인정자 가족재결합) 해외에 있는 난민인정자의 가족 구성원에게 국내에 입국, 난민인정자와 함께 체류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함
- (난민인정자 가족결합) 난민인정자의 가족 구성원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체류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난민인정자의 난민 인정 결정일 이전에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한함 29)
 - ※ 가족결합의 대상이 되는 자는 난민인정자에 한하며,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는 가족결합의 대상에서 제외
- (난민인정자 가족동거) 난민인정자의 난민인정 결정일 이후에 가족 관계가 형성된 가족 구성원에게 국내에서 난민인정자와 함께 체류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함

3) 난민인정자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가족재결합)

가) 사증발급 절차

- 난민인정자의 가족이 난민인정자와의 가족재결합을 위하여 입국하고자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단기방문(C-3, 90일) 체류자격으로 사증 발급
 -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을 받은 사실
 - 난민인정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난민인정자와의 가족재결합 희망 여부
- ※ 난민인정자가 미수교국가 국민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청장등에게 가족재결합 관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29) <UNHCR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183. 1951년 협약은 난민의 정의에 가족결합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회의의 최종문서의 권고안은 1951년 협약 또는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다수 국가에서 준수되고 있다.
184. 가장이 난민정의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그 부양가족에게도 난민의 지위가 부여된다. 그러나 정식 난민지위가 부양가족의 법적 지위와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 부양가족에게 난민지위가 부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난민의 부양가족은 비호국이나 다른 국가의 국민일 수도 있고, 해당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난민지위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인정자의 난민인정 사실 및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나) 사증발급 신청 시 확인 서류

○ 배우자 입증서류

-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결혼증명서 등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미성년 자녀 입증서류

- 여권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의 혼인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미성년 자녀의 혼인유무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만 제출

4) 난민인정자 가족에 대한 입국심사 (가족재결합)

가) 일반 절차

- 가족재결합을 희망하는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그 미성년 자녀가 출입국항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족재결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국심사

나) 입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처리절차

- 가족재결합을 희망하는 난민인정자의 가족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국 불허
- 다만, 입국금지대상자인 경우에도 인도적사유 등 입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국을 허가

다) 사증 없이 도착한 자에 대한 처리절차

○ 일반 외국인의 입국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

5) 난민인정자 가족의 난민인정 신청 접수 및 심사 (가족결합)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 난민인정자와 동일한 사유 등으로 난민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신청 접수 및 심사

-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결정 완료(단, 거점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난민인정자의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인 경우, '난민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가족결합 난민인정 대상으로 적용

6) 난민인정자 가족의 체류부여 및 자격변경 등 (가족결합, 가족동거)

○ 난민인정자의 가족이 체류자격부여 및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난민인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동거(F-1-16)으로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 방문동거(F-1-16) 체류자격 소지자가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 등 난민신청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 보장

○ 난민인정심사 결과 난민인정자의 가족결합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거주(F-2-4) 체류자격을 부여(변경)하고, 불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방문동거(F-1-16) 체류자격으로 체류허가

※ 난민인정자의 가족이 난민법 제19조에 따른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자 가족에게 부여하는 거주(F-2-4) 및 방문동거(F-1-16) 체류허가 불허

※ 자녀가 부모 국적국의 국적관련 법령으로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본부와 협의하여 체류허가 여부 결정

【 난민인정자 가족결합과 난민인정자 가족 동거 비교 】

구 분	난민인정자 가족 결합	난민인정자 가족 동거
대상	▪ 난민인정자의 <u>난민인정 결정일 이전에 가족관계가 형성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가족결합으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u>	▪ 난민인정자의 <u>난민인정 결정일 이후에 가족관계가 형성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u>

		▪ 난민인정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체류자격	거주(F-2-4)	방문동거(F-1-16)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매회, 최대 3년	▪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매회, 최대 2년
제출 서류	체류 자격 부여·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 주신청자의 난민인정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cm × 4.5cm) 1장 ▪ 난민인정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 등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35개 국가 국민)
	체류 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
취업허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활동의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취업 허가 절차 및 기준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활동 허가 위반자의 경우에도 인도적체류자 범 위반자 처리절차 준용

7) 난민인정자 가족결합 체류허가 특례 (가족결합)

- (대상) 난민인정자의 가족결합으로 거주(F-2-4)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내용) 이혼, 별거 또는 사망으로 해체되는 경우에도 가족결합에 의하여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가족은 난민법 제1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지위를 유지함 30)

※ 난민법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자의 난민인정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에 동반하는 가족들 모두 체류허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

30) <UNHCR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187. 난민의 가족결합이 이혼, 별거 또는 사망으로 해체되는 경우에도 가족결합에 의하여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부양가족은 정지조항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난민지위를 유지한다. 난민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희망하는 데에 단순한 개인적 편익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거나 스스로 난민으로 인정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불법체류 중 난민인정자 가족결합 신청자 처리방법 (가족결합, 가족동거)

- (불법체류기간 계산) 체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불법체류기간 계산
- (통고처분 면제 대상) 자진 출석한 사람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불법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통고처분 대상) 원칙적으로 상기 통고처분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름

1. 개요

가. 기본원칙

- (신청 및 접수) 난민인정자등³¹⁾의 처우 신청 관련,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는 체류지 관할 청등에서 접수·처리하고,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은 난민인정 신청을 한 청등에서 접수·처리
- (직접 신청 원칙) 대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신청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 허용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신청은 신청자의 배우자·직계 혈족에 한하며, 신청자의 배우자·직계혈족이 국내에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지정한 사람이 대리
 - 가구 단위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경우(예 : 생계비), 세대주 등이 가구를 대표하여 신청 가능
-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관련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름
 - ※ (예) 난민인정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지급의 절차와 기준은 동 법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처리절차에 따름
-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44조에 해당하는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그 처우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나. 처우 신청 접수 시 확인 및 조치사항

- 청장등은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신청 접수 시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
- 청장등은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지원과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담 및 실태조사 실시

31) ‘난민인정자 등’이란 난민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를 말한다.

다.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³²⁾

-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관련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불인정
 - 다만, 행정소송 제기는 가능

라. 부정 수익자 인지 시 조치사항

- (대상) 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난민법 제47조 제2호)
- (위법사실의 존재) 처우 신청자가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고발) 청장등은 위법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 청장등이 고발할 경우 사전에 본부(난민정책과) 보고
- (부정수익 환수) 법무부장관은 민사소송절차(부당이익 반환)에 따라 환수할 수 있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2. 난민신청자의 처우

가. 주요내용

- 생계비 등 지원(난민법 제40조 제1항)
- 취업허가(난민법 제40조 제2항)
- 주거시설의 지원(난민법 제41조)
- 의료지원(난민법 제42조)
- 교육의 보장(난민법 제43조)
- 특정난민신청자의 처우제한(난민법 제44조)

32) 난민법 제21조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에 대하여만 이의 신청을 인정하고 있음

나. 생계비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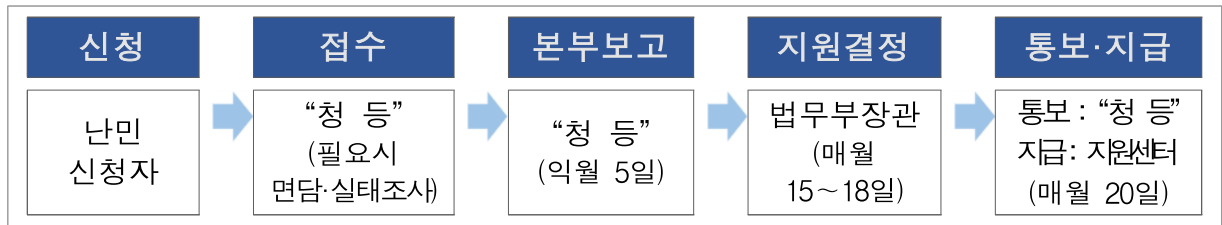
1) 관련 법령

- 난민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동법 시행령 제17조(생계비 등 지원),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생계비 지원 절차 등)

2) 기본원칙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생계비 지원(단, 취업허가가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 제외)

3) 지원 절차



4) 신청 접수

가) 대상 : 난민신청자

- 취업허가가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는 제외. 다만,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로 취업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나) 신청 기한

-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다만, 대상자 선정 및 지급일이 익월 20일인 점을 감안하여 접수

- ※ (예시) 난민인정 신청일이 1.4.이고 생계비 신청일이 6.4.인 경우 7.15~7.18에 지원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생계비 신청 당시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만 생계비 지원대상은 될 수 없음

다) 신청 방법

-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체류지 관할 청 등,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난민 신청한 청 등에 생계비 신청
- 가구 단위 신청자의 경우 주신청자의 신청서 ‘가족사항’란에 부양

가족을 기재하여 주신청자가 대표로 신청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민법상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부·모

※ 가구단위 신청자가 아닌 경우에도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을 '가족사항'란에 기재

○ 대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신청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 허용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신청은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하며,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이 국내에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지정한 사람이 대리

라) 제출 서류

○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제22호서식)

○ 처우 고지 확인서(붙임30)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없는 경우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 본인 명의 통장(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 통장)

○ 체류지 입증서류(단, 기재출한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병원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5) 접수 시 확인 및 조치사항

○ 확인사항

- 소득, 가족사항, 부양가족 유무, 부양가족의 소득 유무, 주거형태, 임신유무, 국내 체류기간 등

- 다른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 필요 시 추가 면접 또는 실태조사 실시

○ 조치사항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생계비 신청사항 입력 및 제출서류 이미지 저장

6) 선정 방법 및 배점기준표

가) 선정기준

- 생계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각 항목별 점수를 부과하여 일정점수** 이상자에게 지급

* 소득·자산, 주거, 임신유무, 연령, 국내 체류기간, 중대한 질병

** 예산 상황에 따라 점수 조정 가능

- 민법상 미성년인 난민신청자가 단독으로 생계비를 신청한 경우, 난민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생계비 지원 대상 충족여부 확인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 유무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생계비 지원 기간 중 자산·생활여건 등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심사 시 반영
- 가구 단위 신청자의 경우 가구 단위로 심사함

나) 선정요소별 배점 기준표

① 소득 및 자산 기준

- '가구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직계 가족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하되, 미성년 형제·자매는 한 가구로 보아 합산

※ (예)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의 소득 인정액 합산

- 자산은 자산 100원 당 소득 5원으로 환산하여 소득 인정액에 합산

가구 소득 인정액(원)					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0,000 미만	200,000 미만	300,000 미만	400,000 미만	500,000 미만	3
100,000 ~250,000	200,000 ~450,000	300,000 ~550,000	400,000 ~700,000	500,000 ~850,000	2
250,000 ~생계비 지원금액	450,000 ~생계비 지원금액	550,000 ~생계비 지원금액	700,000 ~생계비 지원금액	850,000 ~생계비 지원금액	1

② 주거 형태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종교단체·민간지원시설·친구집 등) 1점 가산
- ※ 전·월세 임차 등은 일정한 주거에 포함, 월 30만원 이상 지급하고 숙박하는 여관, 고시원 등도 일정한 주거에 포함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주 신청자 중 공간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한 경우 1점 가산

③ 임신 유무 : 임신한 경우 5점 가산

④ 연령(미성년자, 고령자)

연 령	점 수
5세 미만 및 부양자	각 5
5세 이상 15세 미만 / 65세 이상 및 부양자	각 3
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부양자	각 1

⑤ 국내 체류기간 (난민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난민인정 신청일 까지의 출입국 기록에서 국내 체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국내 체류기간	점 수
30일 미만	5
30일 이상 90일 미만	3
90일 이상 6개월 미만	1

※ (예시) 난민인정 신청일이 2018. 1. 1.인 경우, 2017. 1. 1.~2018. 1. 1. 기간 중 국내 체류 합산 기간

⑥ 질병 유무 : 중대한 질병 및 장애가 있는 경우 10점

※ 중대한 질병 및 장애는 근로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것이 진단서 등으로 확인이 되고 청장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예시 : 좌측 수지 5개 절단, 00 암으로 입원 중)

다) 합산 점수가 동점인 경우 선정 우선 순위

① 중대한 질병 및 장애가 있는 경우(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함)

- ② 센터 입소를 희망하였으나, 입주 공간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한 자
- ③ 임신 중인 자
- ④ 5세 미만 및 그 부양자
- ⑤ 5세 이상 1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및 그 부양자
- ⑥ 국내 체류기간이 단기인 자
- ⑦ 여성

7)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가) 지원금액

- 지원센터 비입주자는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 지원액을 참고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매년 고시), 지원센터 입주자는 비입주자 지급액의 50% 이하 금액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감액될 수 있음

- 가구단위 신청자에 대해서는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5인 가구 해당 금액 지급
-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 생계비 지원 대상이 되는 인원내 해당되는 금액만 지급

* (예) 국내출생자녀의 부모 등 가족은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이 지나 생계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부부가 따로 입국하여 배우자는 생계비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등

- 지원센터 비입주자로서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던 사람이 지원센터에 입소할 경우, 지원센터 입주자 기준 지원 금액 지급

나) 지원방법

- 매월 15일~18일 본부에서 지원 대상·기간 등 결정 후 지원센터에서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 가능

-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좌가 없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 생계비 지급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음

8) 지원 기간

- (원칙)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비는 지원하지 않음
 - 다만, 부득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 (예시) 난민인정 신청일이 1.4.이고 생계비 신청일이 2.8.이면 지원기간은 6월 까지 4개월 지원, 난민신청일이 1.4.이고 생계비 신청일이 1.4.이면 지원기간은 6월까지 5개월 지원(최장 5개월까지 지원)
- (예외) 생계비 지원 기간의 연장
 - 생계비 지급 대상자 중 임산부, 고령자, 중대 질병자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지원기간을 연장하되, 3개월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 가능
 - ※ 가족 중 취업허가 대상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나, 취업허가 대상자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시 자녀출산 등)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

9) 지원 중단 등 수급자 관리

가) 지원 중단 사유

- 생계비 신청자가 출국한 경우 33)
- 난민인정 또는 인도적체류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 불법취업으로 단속된 경우
- 국내법 위반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비 지원액 이상의 지원을

33)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완전출국하는 경우 휴면예금 발생으로 국고손실 방지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출입국지원센터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생활태도 및 학습태도 불량으로 별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센터장의 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강제퇴소 당한 경우

나) 지원 중단 및 환수 사유

-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 수급 적발 시

10)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난민법 제44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및 난민법 시행령 제21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소득 인정액이 생계비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등의 지원을 받고 있어 청장등이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점수 산정 결과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체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소득이 있는 등 청장등이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순수한 사인 간의 분쟁, 체류연장 목적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 등 난민법상의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다. 취업 허가

1) 관련 법령

- 난민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동법 시행령 제18조(취업허가)

2) 취업허가의 주요 내용 및 절차

- 난민신청자의 취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IV. 난민인정자 등 체류관리, 취업허가”에 따름

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이용

1) 관련 법령

- 난민법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 동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1168호)

2)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은 지원센터를 통해 난민신청자 등의 숙식·의료 등 기초 생계와 한국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음(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호)

3) 이용대상 및 처리 절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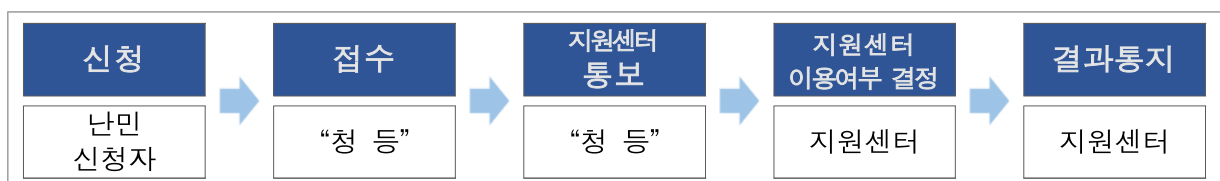
가) 지원센터 이용 대상자

-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자
- 난민신청자
- 인도적체류자
- 난민인정자(재정착난민 포함)
- 위 이용대상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나) 이용기간 및 이용제한

-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이용
 -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지원센터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용기간 연장
-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센터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음

다) 지원센터 이용 절차



- 청장등은 지원센터 이용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원센터 이용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지원센터 장에게 통보

※ 신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 입증 서류 첨부. 다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청장등이 난민인정신청서, 여권 등으로 확인하여 가족관계 서류에 갈음하여 판단

○ 지원센터 장은 지원센터 이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센터 이용 여부 및 이용 기간을 결정

○ 지원센터 장은 신청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라) 지원센터 이용 관련 기타 사항

○ 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름

마. 의료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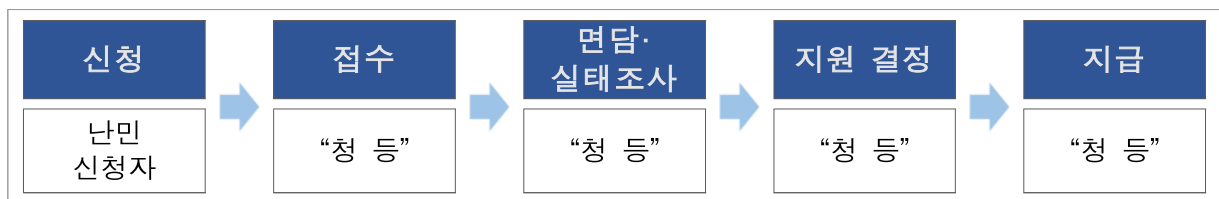
1) 관련 법령

○ 난민법 제42조(의료지원), 동법 시행령 제20조(의료지원)

2) 의료지원의 주요 내용

○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난민신청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난민신청자가 받은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청장등은 지원금액 등 결정 시 본부와 사전 협의



가) 건강검진 비용 지원

○ 청장등은 난민신청자의 건강검진 신청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항목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

※ 기본적 항목은 결핵, 매독 등으로 함

나) 긴급 의료비 지원

○ 청장등은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난민신청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음

다)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

- 청장등은 난민신청자 등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 의료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난민신청자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붙임31 참고) 제공

※ ① 보건복지부 시행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별첨 자료 등 참고,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 ‘세부조건별 찾기’ → ‘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 사업기관’ 참고

라) 관계기관 협조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이 청장등에게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청장등은 난민신청자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

3)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가) 대상자

-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재정착난민 포함)

나) 신청 방법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체류지 관할 청등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청등에서 건강검진비 및 의료비 지원 신청

- 의료비 지원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자 범위)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변호사 등 신청자가 지정한 사람

다) 제출 서류

- 의료 지원 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 진단서(건강검진 비용 지원 시 제출 불요)

- 진료비 명세서

- 병원 통장사본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없는 경우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 (대리신청 시) 의료지원 신청 위임장(붙임32)
- 6개월간 통장거래내역서

라) 접수 시 확인 및 조치사항

- 확인사항
 - 소득, 가족사항, 부양가족 유무, 부양가족의 소득 유무 등
 - 다른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 ※ 필요시 면접 또는 실태조사 실시

- 조치사항
 - 난민신청자 등에게 제출받은 서류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이미지 등록 및 의료비 지원 신청 사실 입력

5) 지원 금액 및 지원방법

- (지원금액) 본인 부담금 5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진료비(단, 건강검진 비용은 5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 (한도) 1인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초과금액 진료비 지원
 - ※ 청장등이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유서 등 첨부
- (지원 방법) 청장등은 의료지원 필요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본부 (출입국기획과, 난민정책과)에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금액 결정 후 해당 청 등 계좌에 지원 금액 입금, 해당 청장등은 병원 계좌에 지원 금액 입금

6) 의료비 지원 제외 사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 자동차사고, 제3자의 가해행위 등
-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 및 수술(성형, 예방접종 등)

- 치과의 경우 미용 목적의 부정교합의 교정, 보철류(크라운, 브릿지, 틀니 등), 스케일링
- 한의원의 경우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의 투약,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 보조기, 보청기, 의수·의족, 의안, 콘택트렌즈 등의 재료비
- 마약중독 등 향정신성 의약품
-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 만성적 질환에 대한 치료비

바. 교육보장

1) 관련법령

- 난민법 제43조(교육의 보장)

2) 주요 내용

-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³⁴⁾을 받을 수 있음

※ 난민신청자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소관사항임을 안내

사.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1) 관련 법령

- 난민법 제44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동법 시행령 제21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2) 특정 난민신청자의 범위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후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34)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

3) 처우 제한의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은 특정난민신청자에 대해 생계비 지원,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건강검진 비용지원)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난민신청자에게도 생계비 지원,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을 할 수 있음

3.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가. 주요 내용

- 취업활동의 허가(난민법 제39조)
- 주거시설의 지원(난민법 제41조, 제45조)
- 의료비 지원(난민법 제42조)

나. 취업활동의 허가

1) 관련 법령

- 난민법 제39조(인도적체류자의 처우)

2) 주요 내용

- 인도적체류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인도적체류자의 취업허가' 절차 준용

다. 주거시설의 지원

1) 관련 법령

- 난민법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2) 주요 내용

-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주거시설의 지원은 '난민신청자의 지원센터 이용 절차' 준용

라. 의료 지원

- 인도적체류자의 의료비 지원은 '난민신청자의 의료지원 절차' 준용

4. 난민인정자의 처우

가. 주요 내용

- 사회보장(난민법 제31조)
- 기초생활보장(난민법 제32조)
- 교육보장(난민법 제33조)
- 사회적응교육(난민법 제34조)
- 학력인정(난민법 제35조)
- 자격인정(난민법 제36조)
- 배우자 등 입국허가(난민법 제37조)

나. 사회보장

1) 관련 법령

- 난민법 제31조(사회보장)

2) 주요 내용

- 사회보장의 의의(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난민법 제31조)

-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35)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음

3)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난민인정자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은 관련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름

다. 기초생활보장

1) 관련 법령

- 난민법 제32조(기초생활보장)

2) 주요 내용

- 기초생활 보장의 의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36)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음(난민법 제32조)

35)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3)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

가) 대상자

- 난민인정자

나) 신청 및 심사 결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청장등은 처우 신청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함을 안내

라. 교육의 보장

1) 관련 법령

- 난민법 제33조(교육의 보장), 동법 시행령 제13조(교육 관련 지원), 동법 시행규칙 제13조(교육비 지원 추천 절차)

2) 주요 내용

-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음
-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 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37)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음

※ 교육비 지원 여부는 교육부에서 결정

3) 교육비 지원 추천서 발급 신청 접수 등

가) 지원대상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37)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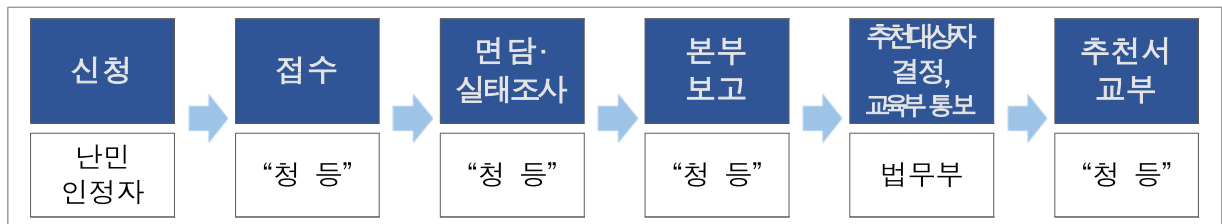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나) 신청방법

- 교육비 지원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지원절차



라) 제출 서류

-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입학(재학) 증명서 1부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청장등이 난민 인정신청서, 여권 등으로 확인하여 가족관계 서류에 갈음하여 판단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난민인정증명서

마) 접수 시 확인 사항 및 조치사항

- 확인사항
 - 소득, 가족사항, 부양가족의 소득 유무, 다른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지원 여부 등
- 조치사항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신청 사항 등을 입력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본부 (난민정책과)에 보고

바) 교육비 지원 추천 여부의 결정 및 통보

- 법무부장관은 교육비 지원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비 지원 추천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교육비 지원 추천서(난민법 시행규칙 별표 제19호서식)를 발급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통보
 - 단, 학교와 학년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함을 안내
 - 청장등은 교육비 지원추천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처리내용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마. 사회적응교육

1) 관련 법령

- 난민법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14조(사회적응교육)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2) 주요 내용

-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음

3) 사회적응교육의 실시

-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청장등이 실시
-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름

사회통합 프로그램

-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바. 직업훈련

1) 관련 법령

- 난민법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직업훈련),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직업훈련 추천 절차)

2) 주요 내용

-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원하는 난민인정자 가운데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 제12조 38)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음

3) 직업 훈련 추천서 발급 신청 접수 등

가) 지원대상

- 난민인정자

나) 신청방법

- 직업 훈련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는 직업훈련 추천 신청서(난민법

3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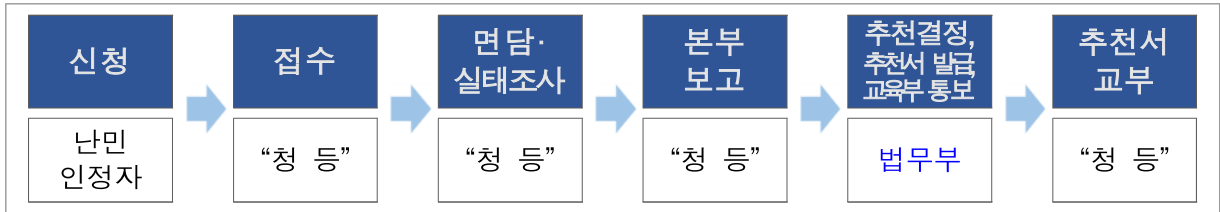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지원절차



라) 제출 서류

- 직업훈련 추천 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자격증 등 직업훈련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난민인정증명서

마) 접수 시 확인 및 조치 사항

- 확인사항
 - 직업능력 개발 훈련 대상자 여부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필요성 등 확인
 - 조치사항
 - 법무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직업훈련 추천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직업훈련 추천서(난민법 시행규칙 별표 제21호서식)를 발급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
 - 청장등은 직업훈련 추천서를 신청자에게 교부
-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결정

사. 학력인정

1) 관련 법령

- 난민법 제35조(학력인정), 동법 시행령 제16조(학력인정의 기준 등)

2) 주요 내용

- 난민인정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

3) 접수 시 안내사항

- 난민인정자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소관사항 임을 안내
- 법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자의 학력인정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면담 및 사실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신청자의 학력인정 관련 정보를 제공
 - ※ 학력인정 여부는 교육부에서 결정

아. 자격인정

1) 관련 법령

- 난민법 제36조(자격인정)

2) 주요 내용

-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음

3) 접수 시 안내사항

-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해당 자격을 관할하는 기관의 소관사항임을 안내
 - ※ 의사, 약사 등 보건자격의 인정은 보건복지부가, 기능사 등 기술자격의 인정은 산업인력관리공단 소관사항임
- 법무부장관은 자격인정 소관 기관으로부터 자격인정 관련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면담 및 사실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외교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자. 주거시설의 지원

1) 관련 법령

- 난민법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2) 주요 내용

- 난민인정자에 대한 주거시설의 지원은 '난민신청자의 지원센터 이용 절차' 준용

차. 의료 지원

- 난민인정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난민신청자의 의료지원 절차' 준용

카. 난민인정자 등 처우 관련 유관기관

- 난민법에 규정된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향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 필요
- 처우별 소관 부처

구 분	처우 내용	관계 부처
난민인정자	사회보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교육의 보장	교육부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지원	고용노동부
	학력 및 자격인정	교육부, 고용노동부
	배우자 등 입국허가	외교부
인도적체류자	취업활동 허가	고용노동부
난민신청자	취업허가	고용노동부
	주거시설 지원	행정자치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교육의 보장	교육부

1. 관련 규정

- 난민법 제29조

2. 주요내용

- 유엔난민기구가 아래 사항에 대하여 통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함
 -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의 상황
 -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 상황
 - 난민 관계 법령(입법예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유엔난민기구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아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함
 - 난민신청자 면담³⁹⁾
 -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참여
 -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의견 제시
- 법무부장관 및 난민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39) 출입국향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이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면담을 요청할 경우에도 포함

1. 관련규정

- 난민법 제47조

2. 처벌 대상

- 난민법 제17조(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를 위반한 사람
 - 난민신청자와 난민법 제13조에 따라 면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정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 ※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상기 난민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난민신청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경우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정보를 출신국에 제공하는 경우
 - ※ 난민신청자 신분의 특성상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접수와 면접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물론, 통역인, 변호인, 언론·출판인 등 모든 사람이 동 조항의 적용 대상임
-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3.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난민법 제47조(벌칙) 위반자 고발

- (고발권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 (고발절차)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발 조치
 - ※ 신분선탁범 등 출입국사범에 해당되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처리

○ 시행일 : 2022. 10. 11.

-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기존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난민정책과-680, '20. 4. 17.)”은 폐지

IX

시행규칙 별지 목록

난민법 별지목록	
제1호	난민인정신청서
제2호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
제3호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제3호의2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
제4호	출석요구서
제5호	출석요구 대장
제6호	난민면접조서
제7호	열람·복사 신청서
제7호의2	열람·복사 대장
제8호	난민인정증명서
제9호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
제10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제11호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제13호	난민불인정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제14호	이의신청서
제14호의2	이의신청 접수증
제15호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통지서
제16호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제17호	난민인정 취소·철회 통지서
제18호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
제19호	교육비 지원 추천서
제20호	직업훈련 추천 신청서
제21호	직업훈련 추천서
제22호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제23호	주거시설 이용신청서
제23호의2	의료 지원 신청서
제24호	난민지원시설 이용신청서
출입국관리법 별지목록	
제23호	조건부입국허가서
제30호의3	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신청서
제30호의5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
제34호	통합신청서
제43호의2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제126호의11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제126호의1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
제126호의14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제126호의15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

X

붙임자료

목 차		Page
1	게시자료(난민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	4
2	체류지 청 등 게시자료(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절차 등)	4
3	출입국항 청 등 게시자료(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절차 등)	4
4	번역자 확인서	8
5	체류허가 제한 대상 심사 보고서	12
6	체류허가절차 등 안내확인서	13
7	출석요구서 공시송달문	16
8	통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9
9	통역인 등 변경 요청서	19
10	녹음·녹화 미동의 확인서	19
11	동석신청서	23
12	비밀 준수 서약서	23
13	동석불허결정 통지서	24
14	접견 신청서	25
15	접견 대장	25
16	전자우편 통지 및 송달동의서	27
17	범죄경력 등 본인확인서	33
18	생활실태서	41
19	인수증	41
20	난민 불인정 사유서	41
21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안내문	41
22	난민불인정결정 통지 공시송달문	43
23	송달문서 관리대장	43
24	난민인정신청 철회서	52
25	난민면접 녹음·녹화자료 열람 신청서	56
26	난민면접 녹음·녹화자료 열람 신청 접수증	57
27	난민면접 녹음·녹화자료 열람 대장	57
28	출입국항 난민면담조서	61
29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서	67
30	처우 고지 확인서	118
31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126
32	의료지원 신청 위임장	127

난민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

□ 일반적 권리

-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습니다. (난민법 제3조)

□ 난민인정 신청 절차상 권리

-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가 있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소송 포함)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가 면접을 받을 때에는 **같은 성(性)의 공무원으로부터 면접을** 받을 수 있으며, **면접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는 면접 시 **같은 성(性)의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는 면접 시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는 난민면접이 끝난 후 면접조서의 내용을 통역 또는 번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는 유엔난민기구에 면담을 요청하거나 면접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처우에 관한 권리

- 난민신청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생계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난민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와 미성년자인 가족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의 의무

- 난민신청자는 난민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RSR Applicants' Rights and Obligations

General

- No applicants for Refugee Status Recognition(RSR) will be subject to a forced retur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Refugee Convention** and Article 3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uthority: the Republic of Korea's Refugee Act, Article 3)

Procedure

- Applicants may seek help from a refugee claim intake officer **if they are unable to complete application forms** due to a disability or illiteracy.
- Applicants may **stay in the ROK** until their pending cases, including appeals against negative decisions, are adjudicated.
- Applicants may request that the **interview be carried out by a same-sex officer** and be audio- or video-recorded.
- Applicants may ask for a **same-sex interpreter** for the interview.
- Applicants have the right to **the assistance of an attorney**.
- Applicants may be accompanied by a **trusted individual** during the interview at their request, unless such presence endangers the fairness and integrity of the interview.
- Applicants may check over the record of their statement in a language they understand through translation or interpretation after the interview is completed.
- Applicants may request **access to view or copy** the interview report or other documentation that they submitted.
- When their claims are denied, withdrawn, or cancelled, applicants may appeal to the Minister of Justice.
- Applicants may ask for consultation with the UNHCR or its presence during the interview.

Treatment

- Applicants may receive living and other expenses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 Applicants may use a refugee reception center under certain requirements.
- Applicants may be entitled to medical assistance within a limited range.
- Applicants and their minor family members may have access to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on the same level as Korean nationals.

Obligations

- Applicants must faithfully participate in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pursuant to the Refugee Act, Article 8(6). If they fail to attend interviews three times or more, their cases may be discontinued and closed.

حقوق والتزامات مقدم طلب اللجوء

□ حقوق عامة

○ لا يجوز ترحيل مقدم طلب اللجوء قسرا ضد إرادته وفقا للمادة الـ33 من اتفاقية اللاجئين والمادة الـ3 من اتفاقية مناهضة التعذيب. (المادة الـ3 من قانون اللاجئين)

□ حقوق إجرائية أثناء تقديم طلب اللجوء

○ يجوز لمقدم طلب اللجوء أن يحصل على المساعدات من الموظف الحكومي الذي يعمل في الشباك، إذا كان هو أميا أو غير قادر على ملء استمارة طلب اللجوء بسبب الإعاقة.

○ يجوز لمقدم طلب اللجوء أن يقيم في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حتى وقت الإنتهاء من إجراءات طلب اللجوء (وهي تشمل الإجراءات في الدعوى المتعلقة بالقرار عن رفض قبول اللجوء).

○ يجوز لمقدم طلب اللجوء أن يحضر المقابلة مع الموظف الحكومي بنفس الجنس وتسجيل الصوت أو الفيديو في المقابلة.

○ يجوز لمقدم طلب اللجوء أن يطلب مترجما بنفس الجنس في المقابلة.

○ يجوز لمقدم طلب اللجوء أن يحصل على المساعدة من المحامي.

○ يجوز لمقدم طلب اللجوء أن يطلب حضور شخص موثوق بقدر أن هذا الحضور لا يعوق عدالة المقابلة.

○ يجوز لمقدم طلب اللجوء أن يتأكد من مضمون محضر المقابلة من خلال خدمة الترجمة بعد الانتهاء من المقابلة.

○ يجوز لمقدم طلب اللجوء أن يطلب مطالعة أو نسخ أوراق محضر المقابلة والمستندات التي قدمها طالب اللجوء.

○ يجوز لمقدم طلب اللجوء الاستئناف ضد وزير العدل فيما يتعلق برفض أو إلغاء أو سحب طلب اللجوء.

○ يجوز لمقدم طلب اللجوء أن يطلب المفوضية السامية للأمم المتحدة لشؤون اللاجئين من المشورات أو حضورها في المقابلة.

□ حقوق المعاملة

○ يجوز لمقدم طلب اللجوء أن يحصل على نفقات المعيشة وغيرها طبقا لبعض الشروط المعينة.

○ يجوز لمقدم طلب اللجوء أن يستخدم المرافق لدعم اللاجئين طبقا لبعض الشروط المعينة.

○ يجوز لمقدم طلب اللجوء أن يحصل على المساعدة الطبية على نطاق محدد

○ يجوز لمقدم طلب اللجوء أطفاله غير البالغين أن يحصل على التعليم الابتدائي أو الإعدادي على نفس المستوى مثل المواطنين.

□ التزامات مقدم طلب اللجوء

○ يجب مقدم طلب اللجوء أن يلتزم بإجراءات طلب اللجوء جديا طبقا للمادة الـ8 والبيد الـ6 من قانون اللاجئين.

○ إذا لم يحضر مقدم طلب اللجوء المقابلة أكثر من 3 مرات متتالية رغم طلب حضورها، فيتم الانتهاء من إجراءات طلب اللجوء.

Les droits et obligations du demandeur d'asile

Le principe de non-refoulement

- Aucun demandeur d'asile ne doit être refoulé ou renvoyé contre son gr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33 de la Convention de Genève et l'article 3 de la Convention contre la torture.

Les droits au cours de la procédure de demande d'asile

- Le demandeur rencontrant des difficultés de remplir le formulaire dû à un handicap ou à l'analphabétisme peut demander de l'aide à l'agent au guichet.
- Le demandeur peut se maintenir sur le sol coréen jusqu'à la fin de la procédure de la demande d'asile, y compris la procédure judiciaire en cas de recours contre la décision de non reconnaissance du statut de réfugié.
- Le demandeur peut demander d'être assisté par un officier du même sexe que le sien. Il peut également demander à ce que son entretien d'asile soit enregistré ou filmé.
- Le demandeur peut demander d'être assisté par un interprète du même sexe que le sien.
- Le demandeur peut demander d'être assisté par un avocat.
- Lors de l'entretien, le demandeur peut demander d'être accompagné d'une personne de confiance à condition que sa présence ne nuise pas au bon déroulement de l'entretien.
- Le demandeur peut relire le compte rendu de son entretien dans une langue qu'il comprend avant fin de l'entretien.
- Le demandeur peut demander la consultation des documents qu'il a soumis et/ou du compte rendu de son entretien ou d'en faire une copie.
- Le demandeur dont la demande de reconnaissance du statut de réfugié a été rejetée ou dont le statut de réfugié a été annulé ou retiré peut faire appel auprès du ministre de la Justice.
- Le demandeur a le droit de s'entretenir avec l'UNHCR et d'être assisté par el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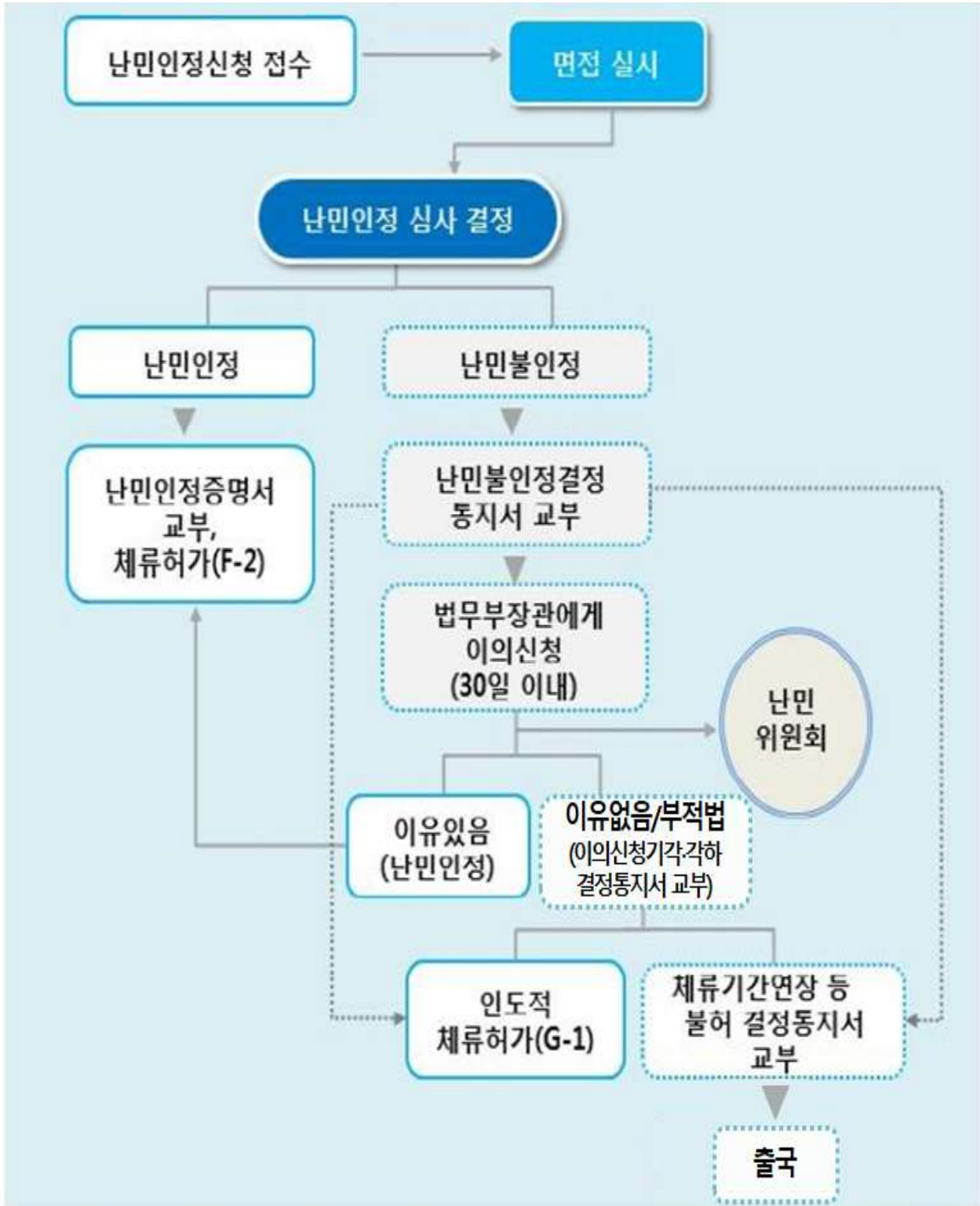
Les aides accordées au demandeur

- Le demandeur remplissant les conditions requises peut demander une allocation de subsistance.
- Le demandeur remplissant les conditions requises peut demander une place d'hébergement au Centre de soutien aux réfugiés.
- Le demandeur remplissant les conditions requises peut demander d'être pris en charge pour ses frais médicaux
- L'accès à l'enseignement des premier et second degrés pour le demandeur d'asile mineur ou son enfant mineur est identique à celui réservé aux nationaux.

Les obligations du demandeur

- Le demandeur d'asile est tenu de rester attentif au suivi de son dossier. L'absence trois de fois de suite à une convocation, notamment à un entretien d'asile, peut entraîner la clôture de son dossier conformément à l'article 8 de la loi relative aux réfugiés.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난민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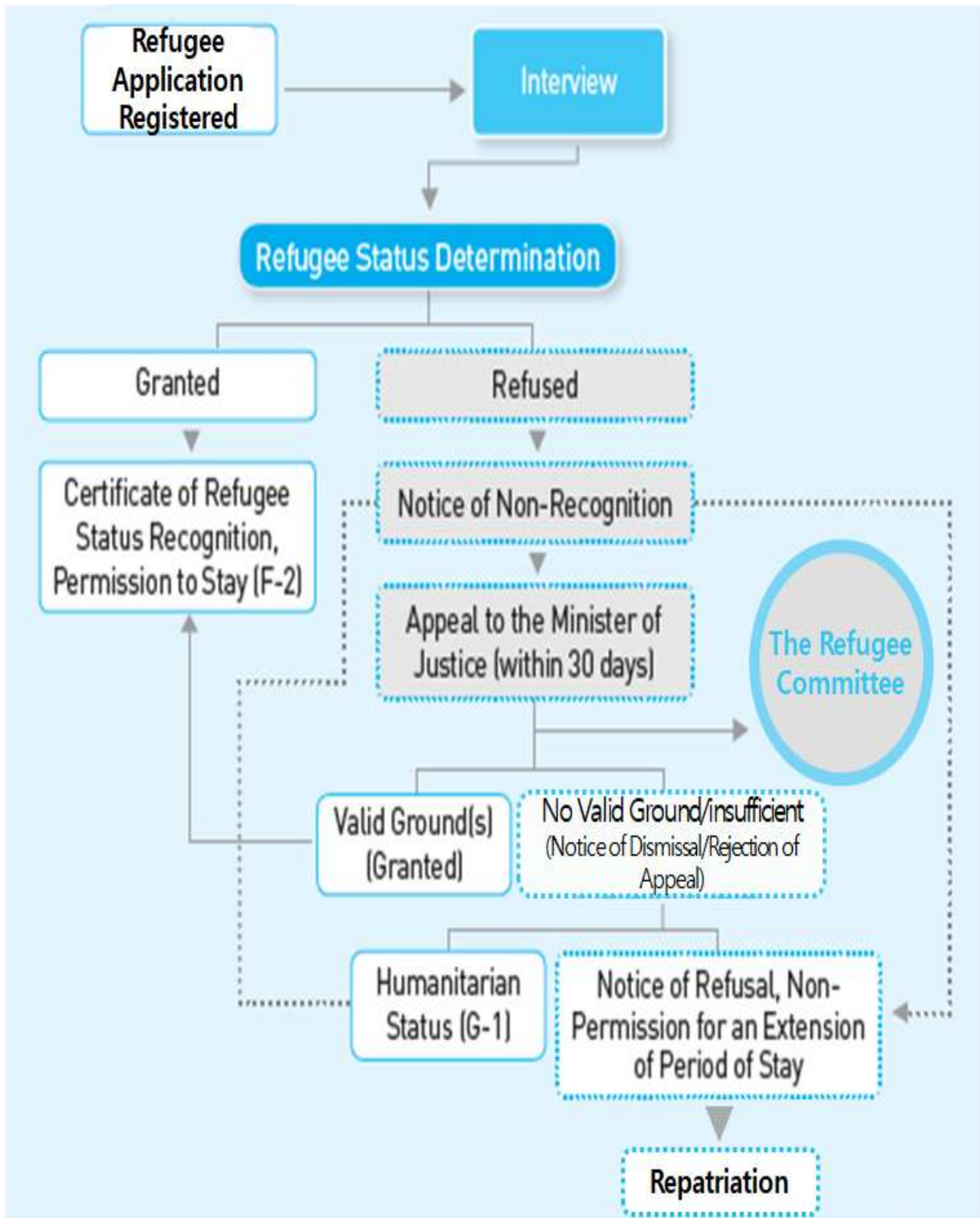
“難民”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난민인정 신청 접수 방법

- 난민인정 신청은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 * 보호 중 난민인정의 신청은 체류지 관할과 무관하게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합니다.
-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난민인정신청서는 전국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도 게시)
 - * 난민인정신청서와 함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입증서류를 첨부합니다.
 - * 글을 모르거나 장애로 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으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난민인정신청서는 영어 또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난민인정신청은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 * 미성년자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민법상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인정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난민법 제47조)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and Asylum Procedure



Definition of Refug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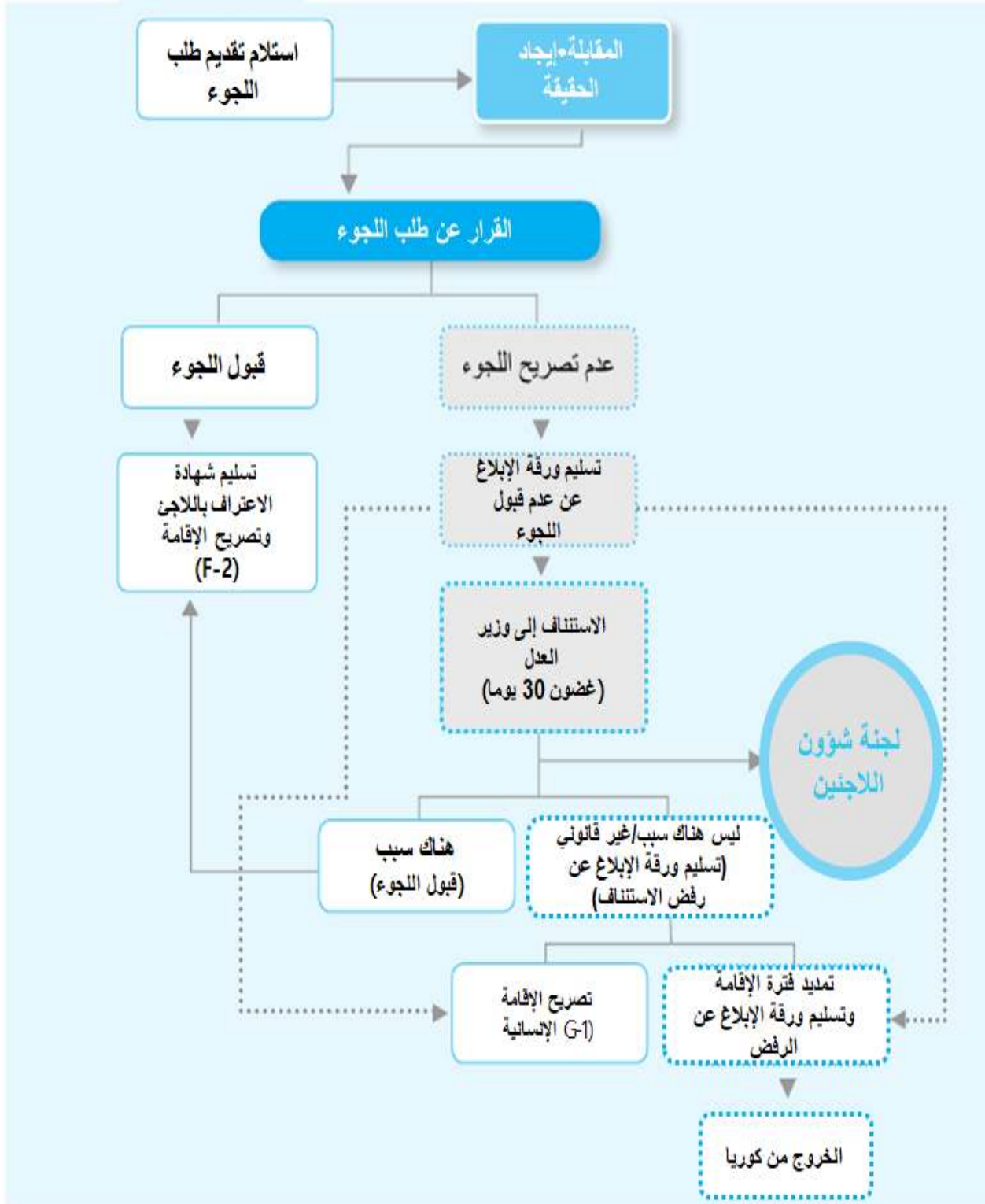
A "refugee" refers to an alien who is unable or unwilling to avail him/herself of the protection of his/her country of nationality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unwilling to return to the country of his/her former residence (hereinafter "the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prior to entry into the Republic of Korea.

How to Apply for Refugee Status

- **A refugee status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to the Chief of an Immigration Officer within jurisdiction.**
 - * Application documents are submitted to an Immigration Office for Application and transferred to an Immigration office for Determination.
 - * Application during detention must be submitted to the Director of an Immigration Processing Center regardless of applicant's residential jurisdiction.
-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must be submitted to apply for refugee status.**
 - * An applicant must provide the passport, and Residence Card (if available), and supplementary documents (if available), for reference in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 * Please ask for assistance if you are illiterate or unable to fill the application due to disabilities.
- **The application should be filled out in either Korean or English. In case of writing in the applicant's native language, a translated version must be attached.**
-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by proxy is not allowed, the person directly concerned in the application him/herself must apply for the procedure.**
 - * A refugee status application for a minor can be applied by him/herself or by legal representative.

A person who was recognised as a refugee or permitted by means of **submitting false documents, giving false statements or by withholding facts** sha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not exceeding one year or fines not exceeding 10 million Korean Won. (Article 47 of Refugee Act)

عملية طلب ومعالجة تصريح اللجوء



معنى كلمة اللجو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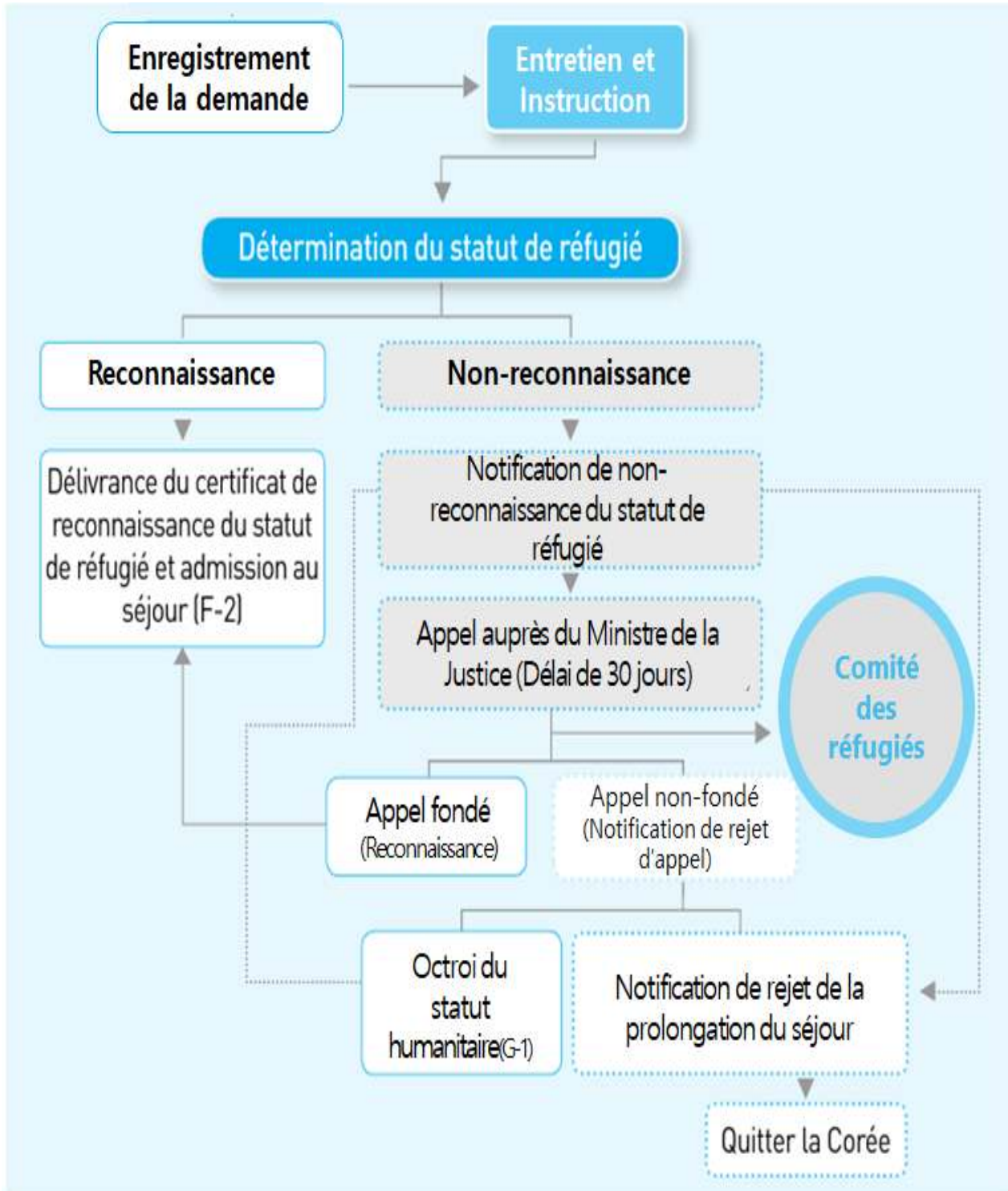
اللجوء يعني طلب الحماية من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وهو يشمل التالي : أي شخص يتعرض للاضطهاد بسبب العرق, الدين, الجنسية, أو لكونه عضوا في جماعة خاصة أو بسبب رأيه السياسي فلا يستطيع أن يحصل على الحماية أو لا يرغب في الحصول على الحماية من بلده أو أي شخص يشعر بالخوف من العودة للبلد التي كان يعيش فيها بعد دخوله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أو أي فاقد جنسية لا يرغب في العودة إلى بلده.

كيف تقدم بطلب للحصول على الصفة اللاجئ

- يجب تقديم طلب الحصول على الصفة اللاجئ إلى رئيس مكتب الهجرة ضمن نطاق الاختصاص.
- * يجب تقديم الطلب أثناء الاحتجاز لرئيس مركز الاحتجاز للأجانب بغض النظر عن نطاق الاختصاص عن السكن.
- يجب تقديم استمارة تصريح اللجوء إذا ارادت تقدم بطلب للحصول على الصفة اللاجئ.
- * يجب على المتقدم أن تقدم جواز السفر, بطاقة تسجيل الأجانب(إذا كانت متوفرة), وثائق تكميلية(إذا كانت متوفرة) كالمواد المرجعية في تحديد الصفة اللاجئ.
- * الرجاء طلب المساعدة إذا كنت أميا أو غير قادرة على ملء الاستمارة بسبب الإعاقة.
- يجب ملء الاستمارة باللغة الكورية أو بالانكليزية. في حالة كتابتك في اللغة الأصفية, يجب إعطاء نسخة المترجمة.
- لا يسمح طلب الصفة اللاجئ بالمتقدم بتبديل الوكيل فيجب على شخص أن يقوم بإجراءات بنفسه/ها.
- * بنسبة لطلب الصفة اللاجئ لقاصر(تحت السن القانوني), يمكن تطبيقه/ها من قبل ممثل قانوني.

يعاقب الشخص المعترف به كلاجئ بواسطة تقديم الوثائق الزنفة وتصريحات خاطئة أو حجب الحقائق بالسجن لمدة لا تتجاوز سنة واحدة أو غرامات لا تتجاوز 10 ملايين ون كورى.(المادة 47 من قانون اللاجئين)

La Procédure de demande d'asile en Corée



La définition du « réfugi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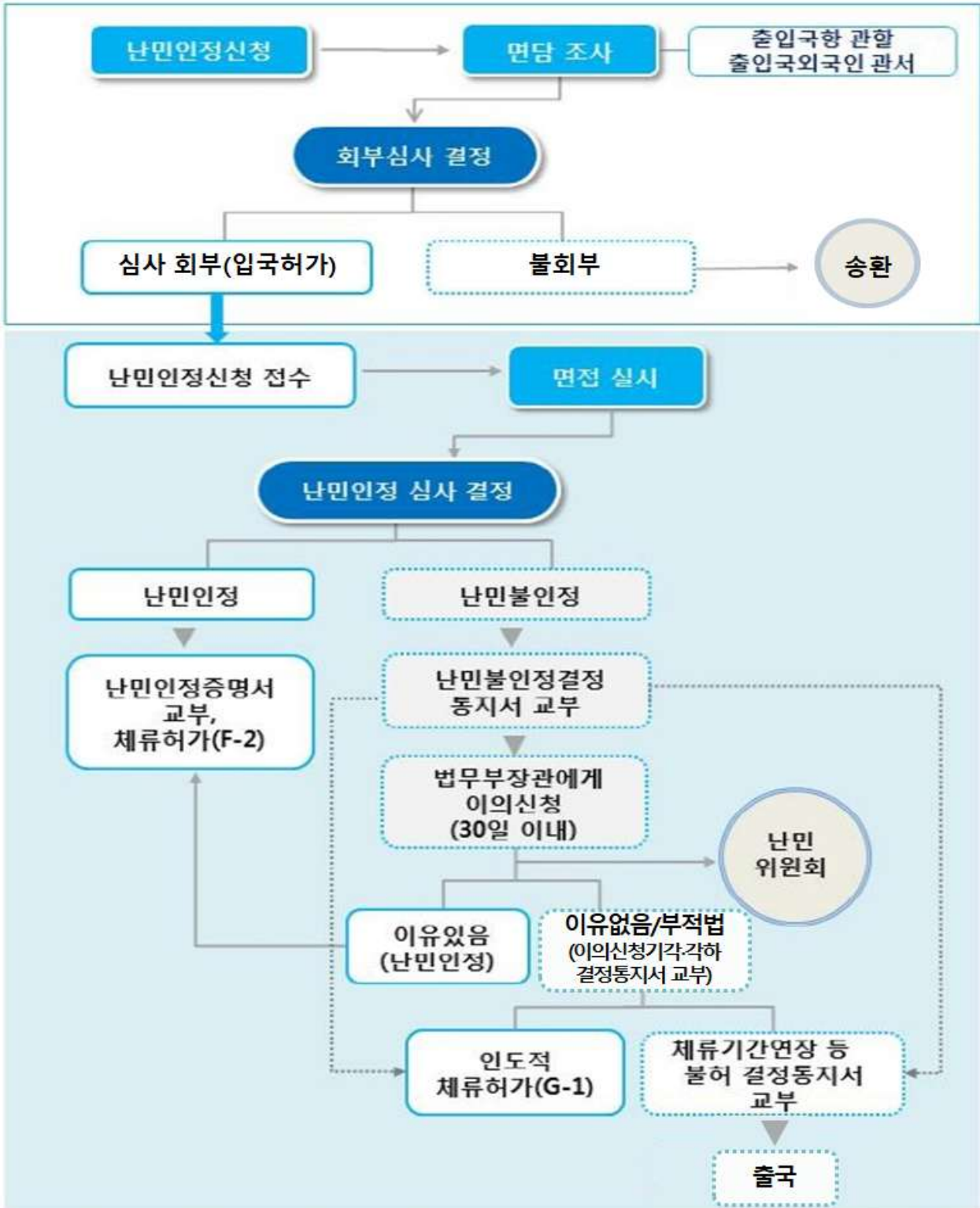
Un réfugié est une personne qui, par crainte d'être persécutée du fait de sa religion, de sa race, de sa nationalité, de ses opinions politiques ou de son appartenance à un certain groupe social, se trouve hors du pays dont elle a la nationalité et ne peut ou ne veut en réclamer la protection ou dans lequel elle a sa résidence habituelle et ne peut ou ne veut y retourner.

Comment demander l'asile

- Vous devez faire enregistrer votre demande d'asile auprès du **chef du bureau de l'immigration rattaché à votre lieu de résidence**.
 - * Si vous êtes placé dans un centre de rétention administrative, adressez-vous au chef de l'établissement.
- Si vous souhaitez demander l'asile, vous devez remplir le **formulaire de demande d'asile**.
 - * Vous pouvez trouver le formulaire dans les bureaux de l'immigration ou le télécharger sur le site officiel du Service de l'Immigration de la Corée (hikorea.go.kr).
 - * Avec le formulaire rempli et **des preuves documentées**, vous devez présenter le **passport** et/ou la **carte de séjour pour les étrangers**.
 - * Si vous ne savez pas lire ou écrire, vous pouvez demander l'aide d'un agent chargé de l'accueil pour remplir le formulaire.
- Le formulaire doit être rempli en coréen ou en anglais. Il est obligatoire, s'il est écrit en votre langue maternelle, que la traduction soit faite en l'une de ces deux langues.
- Vous ne pouvez faire la demande que pour vous-même.
 - * Si vous êtes mineur, votre représentant légal peut aussi se charger de votre demande.

Le fait d'utiliser de **fausses déclarations, de faux documents ou de dissimuler des faits** aux fins d'obtenir le statut du réfugié est puni au maximum d'un **an de prison** ou de **10 millions de wons d'amende**. (Article 47, de la loi sur les réfugiés)

출입국향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난민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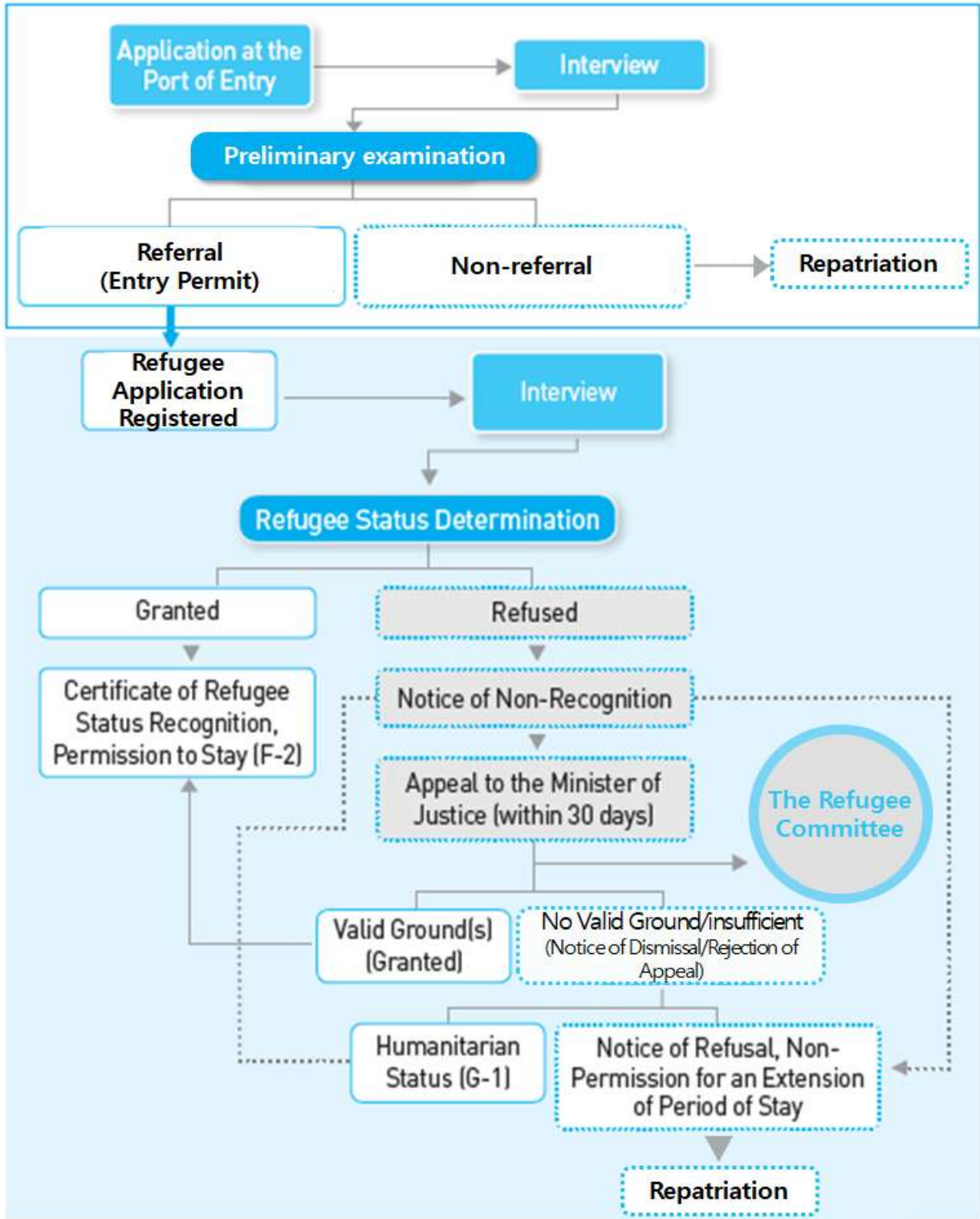
“難民”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 접수 방법

-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난민인정신청서에는 난민임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합니다.
 - * 글을 모르거나 통역이 필요하면 신청서 작성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난민인정 신청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하여야 합니다.
- 난민신청은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 난민신청은 그 신청의 대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면,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심사·결정하게 되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심사대기실에 머무르게 됩니다.
 - * 대기실에 머무르는 동안 난민신청자에 일정한 범위의 의식주가 제공됩니다.
 - * 난민신청자가 대기실에 머무르는 기간은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 받고 입국이 허가됩니다.

거짓된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인정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난민법 제47조)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and Asylum Procedure at Ports of Entry



Definition of Refug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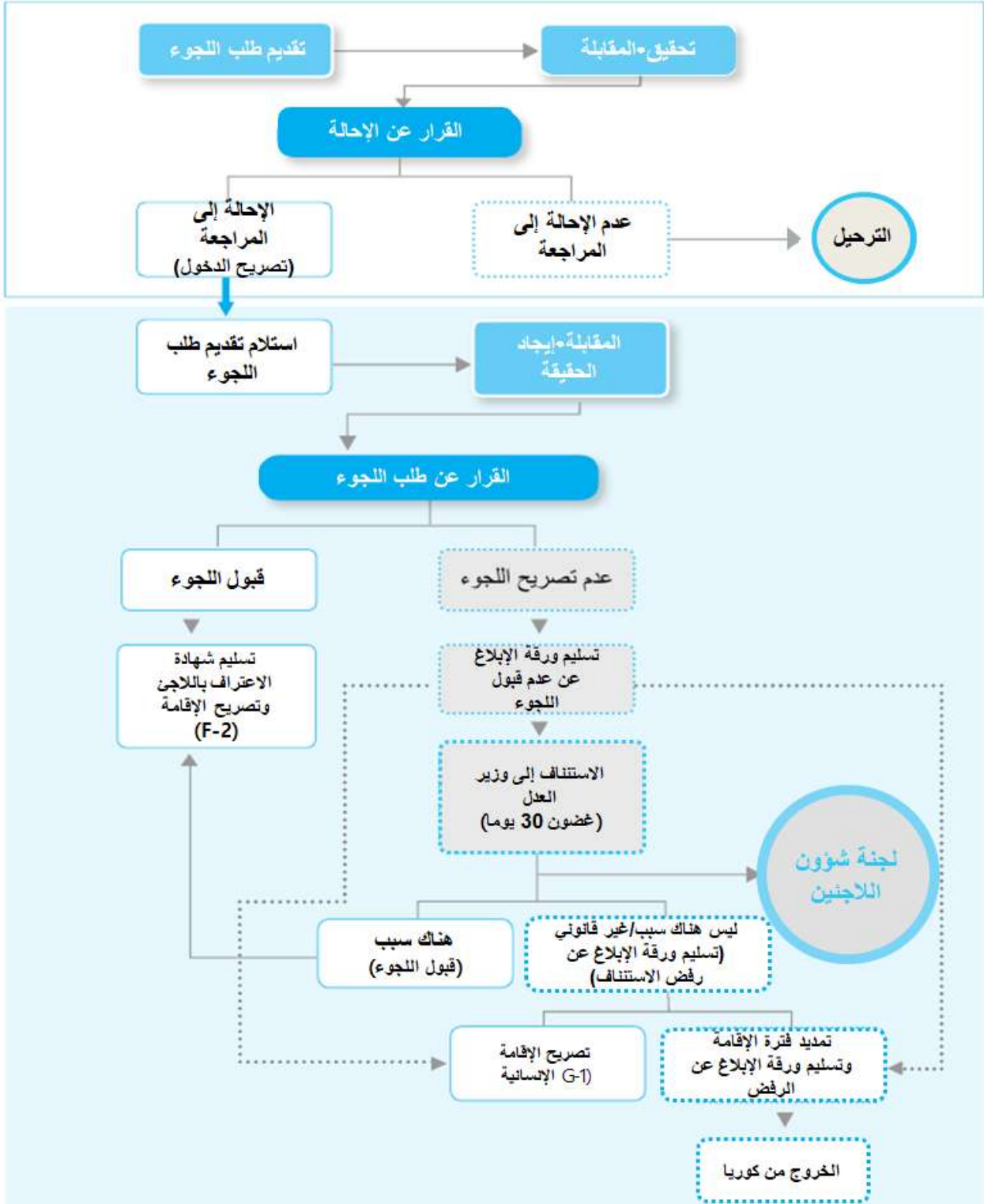
A "refugee" refers to an alien who is unable or unwilling to avail him/herself of the protection of his/her country of nationality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unwilling to return to the country of his/her former residence (hereinafter "the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prior to entry into the Republic of Korea.

How to Apply for Refugee Status at Ports of Entry

- **If you claim refugee, you must fill out the Refugee Status Recognition (RSR) Application form.**
 - * Please attach documentary evidence to prove your refugee claim.
 - * Please ask for assistance if you are illiterate or in need of an interpreter.
- **The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during the entry inspection.**
- **The RSR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to the head of the immigration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ort of Entry (POE) where you request asylum.**
- **Someone else cannot make your application on your behalf. Application by your delegate is not allowed.**
- **All POE applications are subject to preliminary assessment to determine whether to refer the case for further review, and you will stay in a designated waiting room during the procedure.**
 - * While pending, you will be provided with food, clothing, and accommodation.
 - * The period for staying in the waiting zone is no more than 7 days of the submission of your application.
- **If you are determined eligible, you will be issued a receipt for registering the application and then entry permission.**

If the fraud or false documentary evidence, statement, or concealment of facts affected the grant of refugee status, you will face imprisonment for up to one year or fines up to KRW 10 million. (Refugee Act, Art 47)

عملية طلب ومعالجة تصريح اللجوء في موانئ أو مطارات الهجرة



معنى كلمة اللجوء

اللجوء يعني طلب الحماية من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وهو يشمل التالي : أي شخص يتعرض للاضطهاد بسبب العرق, الدين, الجنسية, أو لكونه عضواً في جماعة خاصة أو بسبب رأيه السياسي فلا يستطيع أن يحصل على الحماية أو لا يرغب في الحصول على الحماية من بلده أو أي شخص يشعر بالخوف من العودة للبلد التي كان يعيش فيها بعد دخوله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أو أي فاقد جنسية لا يرغب في العودة إلى بلد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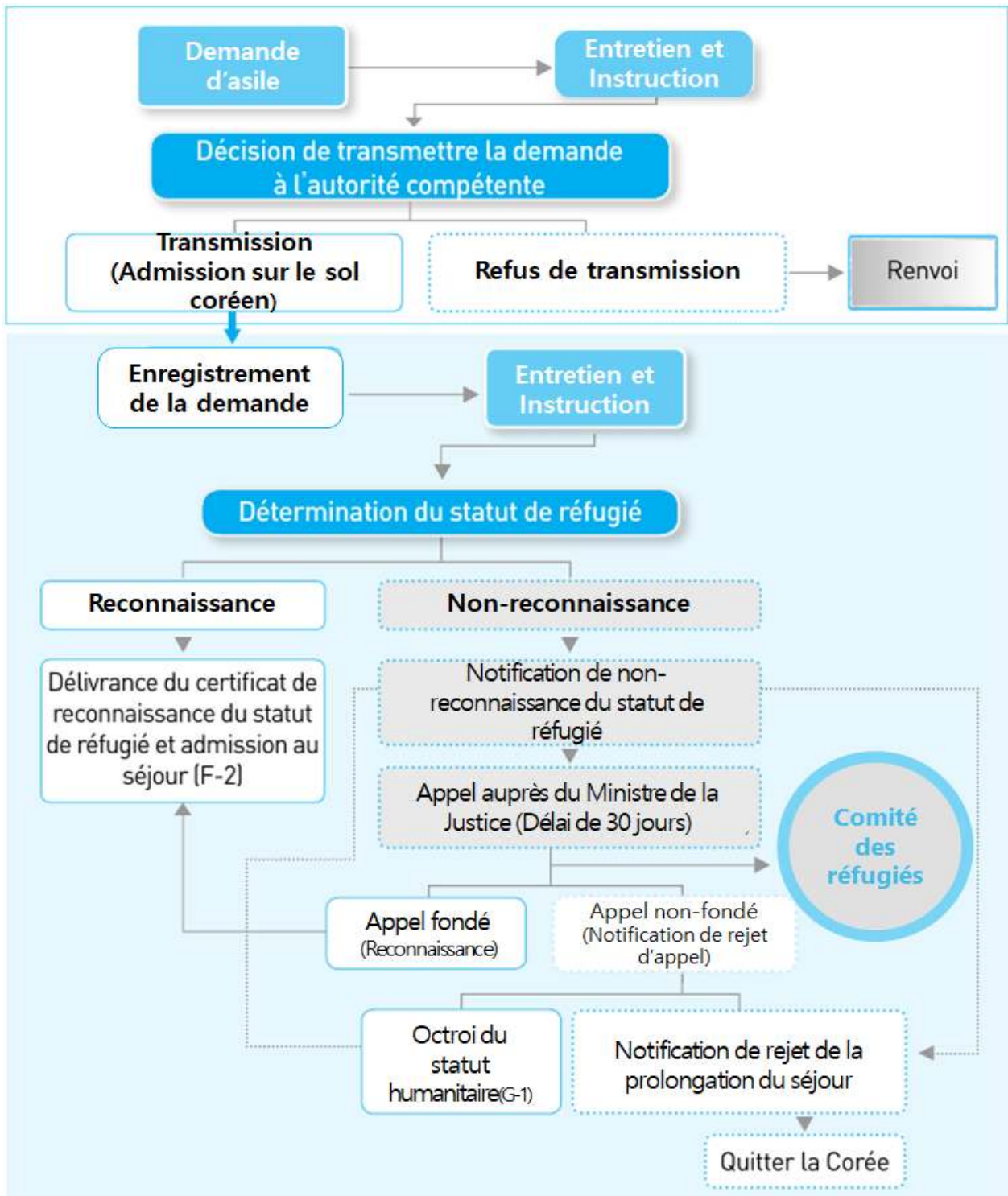
كيف تقدم بطلب للحصول على الصفة اللاجئ

- كل فرد راغب في طلب للحصول على الصفة اللاجئ يجب ملء استمارة تصريح اللجوء.
 - * يرجى إرفاق الأدلة المستندية كالمواد المرجعية في تحديد الصفة اللاجئ.
 - * يرجى طلب المساعدة إذا كنت أمياً أو بحاجة إلى المترجم.
- يجب تقديم استمارة التصريح أثناء التفتيش عند القدوم.
 - * إذا رفض الدخول نتيجة للتفتيش عند القدوم, من غير مقبول أن تطلب صفة اللجوء.
- يجب تقديم طلب الصفة اللجوء لموظفين مكاتب الهجرة.
- لا يسمح طلب للحصول على صفة لاجئ بالوكالة.
- الطلب في مواني أو مطارات الهجرة يقام بتقييم للأهلية. والمتقدم سيبقى في غرفة انتظار المخصصة خلال الاجراءات.
 - * أثناء فترة الانتظار, سيقدم للمتقدم الغذاء الأساسي, الكساء, السكن.
 - * المدة القصوى للانتظار ليست أكثر من 7 يوماً بعد أن قدمت استمارة طلب اللجوء.
- إذا تحدد المتقدم أن يكون مؤهلاً للعملية الإضافية, سيصدر له/ها الشهادة والدخول المسموح.

يعاقب الشخص المعترف به كلاجئ بواسطة تقديم الوثائق الزئفة وتصريحات خاطئة أو حجب الحقائق بالسجن لمدة لا تتجاوز سنة واحدة أو غرامات لا تتجاوز 10 ملايين ون كوري.(المادة 47 من قانون اللاجئين)

[붙임3-4 (붙어)]

La Procédure de demande d'asile à la frontière



La définition du « réfugié »

Un réfugié est une personne qui, par crainte d'être persécutée du fait de sa religion, de sa race, de sa nationalité, de ses opinions politiques ou de son appartenance à un certain groupe social, se trouve hors du pays dont elle a la nationalité et ne peut ou ne veut en réclamer la protection ou dans lequel elle a sa résidence habituelle et ne peut ou ne veut y retourner.

Comment demander l'asile

- Si vous souhaitez demander l'asile, vous devez remplir **le formulaire de demande d'asile**.
 - * Vous devez joindre les documents venant compléter votre récit.
 - * Si vous ne savez pas lire ou écrire, vous pouvez demander l'aide d'un interprète pour remplir le formulaire de demande.
- Dès votre arrivée à la frontière, **lors du contrôle de l'immigration**, vous devrez expliquer aux agents que vous souhaitez demander l'asile.
 - * Il est impossible de le demander après le refus d'entrée sur le territoire.
- Vous devez vous adresser **aux agents administratifs aux frontières** pour leur signaler votre souhait puis effectuer les démarches.
- **Vous ne pouvez faire la demande que pour vous-même.**
- Une fois votre demande déposée, les autorités compétentes l'étudieront, puis prendront leur décision quant à sa recevabilité. Vous serez placé en zone d'attente pendant le temps nécessaire à cet examen préliminaire de votre demande.
 - * Pendant ce délai, les autorités répondront à vos besoins fondamentaux tels que le logement, l'habillement et l'alimentation.
 - * La période maximum de maintien dans cette zone est de 7 jours à compter de la date de réception de la demande.
- Si votre demande fait l'objet d'une décision favorable à l'issue de l'examen préliminaire, les autorités vous délivront **un récépissé constatant le dépôt d'une demande d'asile**. Vous serez **autorisé à entrer sur le territoire coréen.**

Le fait d'utiliser de **fausses déclarations, de faux documents ou de dissimuler des faits** aux fins d'obtenir le statut du réfugié est puni au maximum d'**un an de prison** ou de **10 millions de wons d'amende**. (Article 47, de la loi sur les réfugiés)

[붙임4]

번역자 확인서

번역자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연 락 처	
주 소	

번역물 원본의 명의인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번역 대상물	
--------	--

첨부한 번역 내용은 원본의 문구에 맞게 사실대로 번역하였으며, 번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모든 법적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번역자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

[붙임5]

체류허가 제한 대상 심사 보고서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인적 사항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난민인정 신청 횟수		<input type="checkbox"/> 최초 신청 <input type="checkbox"/> 재신청 <input type="checkbox"/> 3신청 <input type="checkbox"/> 4회 이상 신청			
해당 유형 (☑)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	<input type="checkbox"/>			
2	난민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아 종료된 사람이 재신청	<input type="checkbox"/>			
3	난민법 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법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재신청	<input type="checkbox"/>			
4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 또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	<input type="checkbox"/>			
5	명백히 난민협약 상 난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재신청	<input type="checkbox"/>			
6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사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난민인정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 사유					
체류 실태					
범법사실 등					
인도적 사유					
심사 의견					
심사일시 :		년	월	일	심사자 : 급 ○ ○ ○ (인)

[붙임6]

체류허가 절차 등 안내 확인서

(Stay Permit Procedure&Others Acknowledgement)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따라 출국명령(벌칙금 처분 포함), 보호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체류기간 등을 확인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확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If you wish to stay legally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pending refugee application, you must visit the immigration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your stay ("the Office") to acquire a valid stay permit, pursuant to the Immigration Act. If you fail to comply with this procedure explained within, you may be subject to disadvantages, such as detention and a return order with fines. Therefore, you must check your visa expiration date and visit the Office to request extension, renewal, or others, if necessary.

By signing below, I confirm that I have understood and agree to the information in this form.

작성일자(Date) (20 , ,)

작성자 성명/서명(Name/Signature) (/)

※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서명은 반드시 자필 기재 요

※ Write the date, your name and signature in your own handwriting.

[붙임7]

공고 제20 -

공 고

Public Notice

○ 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 번	신청번호 (Application NO.)	신청일자 (Date of Application)	주 소 (Address)	비고
1	IC-BG-21-000000	2021.04.17.	경기도 (Gyeonggi-do)	출석요구 request to appear Refugee Office
2	PS-BG-22-000000	2022.04.17.	부산 (Busan)	출석요구 request to appear Refugee Office
3	SU-BG-22-000000	2022.01.11.	서울 (Seoul)	출석요구 request to appear Refugee Office

귀하가 신청한 난민인정신청과 관련하여 조사하고자 하오니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난민과에 2022년 00월00일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하실 때는 외국인 등록증, 신청접수증, 여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You are hereby requested to appear at Refugee Office, OOO immigration office by th of 2022, in connection with your application.

You are requested to carry foreigners registration card, receipt of application and passport when appearing at the office.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

Chief of ○○ Immigration Office

[붙임9-2 (영어)]

REQUEST FOR CHANGING INTERPRETER/OTHER

- ▶ If you have a connection with the Interpreter or the Interviewer, inform the Interviewer prior to the interview and submit the completed Request for Changing Interpreter/Other Form.
- ▶ If you have reasonable doubts to question the accuracy or integrity of interpretation or interview, you can ask for changing the Interpreter or Interviewer. Such request, however, will be refused when you fail to establish good cause.
- ▶ If the information provided on this form is found false, you may be subject to disadvantages regarding you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or immigration and resid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Receipt No.

1. Request for changing the Interpreter

1-1) Name of the Interpreter

1-2) Nationality of the Interpreter

1-3) Reasons for your request

- Acquaintance or connection Relevance to my refugee claim
 Issues as to communication Cultural or religious reason (e.g. gender/sex)
 Fairness/Integrity of interpretation in question (Specify: _____)

2. Request for changing the Interviewer

2-1) Name of the Interviewer

2-2) Reasons for your request

- Acquaintance or connection Relevance to my refugee claim
 Cultural or religious reason (E.g. gender/sex)
 Fairness/Integrity of Interview in question (Specify: _____)

YYYY

MM

DD

Applicant (Name/Signature):

Interpreter (Name/Signature):

Interviewer (Name/Signature):

Confirmed by Refugee Officer:

Request: Approved / Denied

※ Reasons for Denial :

[붙임10]

녹음·녹화 미동의 확인서

- ▶ 난민면접(또는 면담)은 긴 시간 동안 통역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난민 면접(또는 면담)의 전 과정을 녹음·녹화하고 있습니다.
- ▶ 녹음·녹화된 파일은 언제든지 열람신청을 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신청은 난민신청자 본인과 본인이 권한을 위임한 법적 대리인만 할 수 있습니다.
- ▶ 만약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의신청, 소송 등 불복절차를 이용하게 될 경우, 녹음·녹화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난민신청자 본인이 녹음·녹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서식을 작성함으로써 녹음·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본인은 난민면접(또는 면담)과정을 녹음·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난민신청자 성명/서명:

담당통역인 성명/서명:

담당면접관 성명/서명:

난민심사관 결재:

[붙임11]

동석신청서

Application to Accompany Asylum Seeker

난민신청자 인적사항 (Asylum seeker's Personal information)	성명(Name in Full)		생년월일(Date of Birth)	성별(Gender)	
	외국인등록번호(Resident registration No.)				
	국적(Nationality)	난민인정 신청접수번호(Refugee application receipt No.)	난민인정 신청일(Date of Refugee application)		
	담당난민심사관(Refugee official in charge)		난민면담예정일(Scheduled date of an interview)		

동석인 인적사항 (companion's Personal Information)	성명(Name in Full)		생년월일(Date of Birth)	성별(Gender)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Resident registration No.)				
	국적(Nationality)	직업(Vocation)	근무처 명(Name of Workplace)		
	대한민국 내 주소(Address in Korea)		전자우편(E-mail)		
		연락처(Contact Number)			
관계(Relation) [] 가족(Family member) [] 친지(Relative) [] 친구(Friend) [] 변호인(Lawyer) [] 기타					

신청일(Date)	신청인 서명 또는 인(Signature/Seal)
-----------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Identity Card (Resident Registration Card, Residence Card, Pass port)) 2. 비밀준수서약서 (An Oath of Confidentiality)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officer in charge, as specified under Article 36 of Electronic Government Act. *If you disagree, you shall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yourself.

동석인(Companion)	서명 또는 인(Signature/Seal)
----------------	-------------------------

접수일 (Date)	허가일자(Date of Confirmation)	허가여부 (Confirmation)	불허사유(Reason(s) for Non-Permission)
		[] 허가(Permission)	
		[] 불허(Non-permission)	

담당난민심사관(Refugee officer in charg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	-----------------------------

[붙임12]

비밀준수서약서 Oath of Confidentiality

[] 통(번)역인(Interpreter) [] 동석인(Applicant to Accompany) [] 기타(Others)		
성명(Name in Full)	생년월일(Date of Birth)	성별(Gender)
국적(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Resident registration No.)	
대한민국 내 주소(Address in Korea)	전자우편(E-mail)	
	연락처(Contact Number)	
직업(Vocation)	근무처 명(Name of Workplace)	근무처 주소 (Address of Workplace)

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난민신청신청 관련 통(번)역/동석을 통해 알게 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인터넷, 출판, 방송매체, 출신국 정부 등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I hereby agree not to disclose information below of any nature or kind that comes to my knowledge via various routes including as a translator and applicant's accompany respecting or relating to Refugee Applications to outside agents(Internet, Publications, media, applicant's Government of origin and etc).

- 아 래 -

1. 난민신청자의 인적사항
2. 주소, 전화번호
3. 사상, 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4.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5. 고유식별정보

- Confidential Information -

1. Personal information ;
2. Address, Phone numbers(s);
3. Ideology, Faith, Health Information;
4. Biometric Information, Criminal history;
5.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of Refugee Status Applicant

난민신청자 등의 인적사항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난민법 제17조, 동법 제 4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 person who has disclosed personal information of Refugee Applicant without his/her consent sha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not exceeding one year or fines not exceeding 10 million Korean Won pursuant to Article 17 and Article 47 of Refuge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서약일(Date)

서약인 서명 또는 인(Signature/Seal)

Date

2022년 0월 0일

동석불허결정 통지서

(Notification of Disapproval of Accompanying Asylum Seeker)

○ 성 명 _____	○ 성별 _____
Name in Full	Gender
○ 생년월일 년 월 일	○ 국적 _____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Nationality

귀하의 2022년 00월 00일자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we have decided not to allow your application to accompany asylum seeker by a trusted person on June 23 for the following reasons.)

1. 동석을 희망하는 자가 과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7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A person who have violated Articles 7, 11, 12, 12-2, etc.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n the past)

2. 난민신청자와 함께 동일한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면접이 예정되어 있어 면접에 참여함이 이후의 면접 및 심사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A person who is expected to impair the fairness of the subsequent interview and refugee status screening by participating in the interview because an interview is scheduled for the same reason with the asylum seeker)

3.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된 서류 등을 제공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A person with considerable grounds, such as suspected of providing false documents or instructing the asylum seeker to make false statements, etc. in order to obtain refugee recognition)

4. 기타(Others)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
 Chief of ○○ Immigration Office

[붙임14]


접견 신청서

접견 신청자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접견목적	연락처
난민인정 신청외국인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접견 희망일시		년 월 일, : : ~ : :				
<p>상기 난민인정 신청 외국인에 대한 접견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_____ , (서명)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 귀하</p>						

※ 구분란은 변호인, UNHCR 직원 등으로 기재

※ 변호사인 경우, 접견신청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서, 변호사 신분증(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6-2 (영어)]

Consent to Notification of Refugee Status Decision via e-mail			
<p>▶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of the Refugee Act, a certificate of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and a notice of decision of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shall be issued to the refugee applicant or the proxy thereof through the head of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or foreigner-related office, or served thereon under Article 14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p> <p>▶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ervice shall be made by means of mail, deliver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etc. and to the domicile, residence, place of business, office, or electronic mail address of a person entitled to receive service; service by mean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shall be made only where the person to receive service gives consent thereto; in such cases the person to receive service shall designate the electronic mail address, etc. to which service is to be made.</p>			
Case No.			
I (your name: _____) hereby consent to notification and service of documents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e-mail.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Contact email address :		@	Signature
Have you confirmed that the above written email is working?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Contact phone number to receive information regarding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I hereby confirm, following an interpreter's explanation on this form, that I will receive notification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under Article 18 of the Refugee Act by means of service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Date:		yyyy	mm dd
Applicant name & signature:			
Interpreter name & signature:			
Interviewer name & signature:			

大韩民国难民认定审查结果通知电子送达同意书

- ▶ 根据大韩民国《难民法》第十八条规定, 《大韩民国难民认定证明书》或《大韩民国不予认定难民决定通知书》通过地方法务部出入境外国人机关首长后, 直接送达给难民认定申请人或其代理人, 或者按照大韩民国《行政程序法》第十四条规定的方式向其送达。
- ▶ 根据大韩民国《行政程序法》第十四条规定, 送达应当采取邮寄送达、直接送达以及电子送达等方式, 送达地址包括受送达人的住所、居所、营业场所、事务所及电子邮件地址; 采用电子送达方式的, 应当经受送达人同意, 受送达人应当提供指定电子邮箱等电子送达地址。

受理编号

本人 () 同意, 选择以电子邮件等电子方式
接收韩国难民认定申请审查结果通知及送达文书。 是 否

本人指定电子邮箱地址: 12345 @ mail.com 本人确认 (签字)

通过上栏指定电子邮箱可否接收并确认其他电子邮箱所发的电子邮件 可 否

可接收难民认定审查相关通知的电话号码

通过翻译员的说明, 本人已了解, 按照大韩民国《难民法》第十八条规定的难民认定审查结果通知
将采用按照大韩民国《行政程序法》第十四条规定的电子送达方式进行, 特此确认并同意。

年 月 日

难民认定申请人 姓名/签字:

翻译员 姓名/签字:

面试官 姓名/签字:

[붙임16-4 (아랍어)]

استمارة الموافقة للإرسال أو الإخبار بالشبكة الإلكترونية فيما يتعلق بنتيجة مراجعة طلب اللجوء	
<p>◀ يتم إرسال شهادة قبول اللجوء أو ورقة الإبلاغ عن عدم قبول اللجوء لطالب اللجوء أو وكيله عن طريق رئيس مكتب الهجرة الإقليمي طبقاً للمادة الـ18 من قانون اللاجئين. وترسلها لكم طبقاً للمادة الـ14 من قانون الإجراءات الإدارية.</p> <p>◀ طبقاً للمادة الـ14 من قانون الإجراءات الإدارية، يتم إرسالها عن طريق البريد، أو الصليم المباشر، أو الشبكة الإلكترونية وغيرها. وذلك إلى عنوان السكن أو مكان العمل أو المكتب أو البريد الإلكتروني للشخص الذي سيحصل عليها في حالة موافقة هذا الشخص فقط. وفي هذا الحين، على هذا الشخص أن يتم بتحديد عنوان البريد الإلكتروني الذي سيتم إرسالها إليه.</p>	
رقم التسجيل	
انا ()	<input type="checkbox"/> لا <input type="checkbox"/> نعم (أوافق على الحصول على وثيقة نتيجة مراجعة طلب اللجوء عن طريق البريد الإلكتروني(E-mail) بالشبكة الإلكترونية.
عنوان البريد الإلكتروني(E-mail):	@ (التوقيع)
ما إذا كان يمكن التأكد من إرسال عنوان البريد الإلكتروني المحدد(E-mail)	<input type="checkbox"/> لا <input type="checkbox"/> نعم
رقم الهاتف الممكن الحصول على المعلومات المتعلقة بمراجعة طلب اللجوء	
<p>لقد تأكدت أنني أوافق على أنه يتم إرسال الإبلاغ أو الإخبار عن مراجعة طلب اللجوء (وذلك طبقاً للمادة الـ18 من قانون اللاجئين) باستخدام الشبكة الإلكترونية (وذلك طبقاً للمادة الـ14 من قانون الإجراءات الإدارية) بعد أن سمعت الشرح من المترجم</p>	
سنة	شهر
يوم	
اسم طالب اللجوء/ التوقيع	
اسم المترجم/ التوقيع	
اسم محقق اللجوء/ التوقيع	

[붙임16-5 (붙어)]

Notification du résultat de la demande d'asile par les réseaux d'information et de communication	
<p>▶ Le certificat de reconnaissance du statut de réfugié et la notification de non-reconnaissance du statut de réfugié sont soit délivrés par un bureau régional de l'immigration au demandeur d'asile ou à son représentant conformément à l'article 18 de la loi sur les réfugiés soit notifiés en application de l'article 14 du Code de la procédure administrative.</p> <p>▶ Selon l'article 14 du Code de la procédure administrative, la notification est effectuée par courrier, délivrance ou en utilisant les réseaux d'information et de communication à l'adresse, au domicile, au lieu de travail, au siège social ou à l'adresse électronique de son destinataire. Cependant, la notification par les réseaux d'information et de communication ne peut être effectuée qu'avec l'accord de son destinataire qui fournit son adresse e-mail.</p>	
N°	
<p>Je, (_____), accepte de recevoir la notification des résultats de ma demande d'asile par voie électronique, notamment par courriel (e-mail). Oui <input type="checkbox"/> Non <input type="checkbox"/></p>	
L'adresse e-mail : _____ @ _____	(Signature)
L'adresse e-mail indiquée peut-elle envoyer et recevoir des courriels ?	Oui <input type="checkbox"/> Non <input type="checkbox"/>
Le numéro de téléphone pouvant recevoir des notifications :	
<p>Je déclare accepter, en toute connaissance de cause grâce à l'assistance de l'interprète, que la notification relative à ma demande d'asile prévue par l'article 18 de la loi sur les réfugiés soit effectuée par la voie électronique conformément à l'article 14 du Code de la procédure administrative.</p> <p style="text-align: center;">Date :</p>	
Demandeur d'asile (nom et prénom)	(Signature)
Interprète (nom et prénom)	(Signature)
Officier (nom et prénom)	(Signature)

[붙임16-6 (러시아어)]

<p>Согласие на получение уведомления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результатов процедуры определе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через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е сети</p>		
<p>▶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18 Закона о беженцах,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признании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и уведомление о решении о непризнании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выдаются заявителю или его доверенному лицу через главу местного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ли управления по делам иностранцев или вручаются и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14 Закона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оцедурах.</p>		
<p>▶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14 Закона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оцедурах, уведомлени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работы, офиса или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лицу, имеющему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уведомления посредство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сетей. Услуга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уведомления через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е сет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только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лицо, получающее услугу, дает на это согласие; в этом случае лицо, получающее услугу, должно указать адрес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и т.д.</p>		
<p>Номер дела</p>		
<p>Я (ФИО:) даю согласие на получение уведомления о процедуре определе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через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е сети, включая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p>		<p>Да <input type="checkbox"/> Нет <input type="checkbox"/></p>
<p>Адрес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 <i>12345 @ mail.com</i></p>		<p>(Подпись)</p>
<p>Я подтверждаю, что вышеуказанный адрес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действителен.</p>		<p>Да <input type="checkbox"/> Нет <input type="checkbox"/></p>
<p>Номер телефона для получения уведомления о процессе рассмотре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p>		
<p>Я подтверждаю, что после объяснения переводчика, мне понятно, что я получу уведомление о результате признания или непризна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18 Закона о беженцах посредством услуги через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е се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14 Закона об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роцедурах.</p>		
<p>Год</p>	<p>Месяц</p>	<p>Число</p>
<p>Заявитель (ФИО) / Подпись: Переводчик / Подпись: Ответственное лицо / Подпись:</p>		

◆ **마약의 종류** (일부 예시)

■ 총 478종(마약류 384종, 임시마약류 94종)

- ☞ **향정신성 의약품(257종)** : 메트암페타민(필로폰), LSD 등
- ☞ **마약(126종)** : 코카인, 헤로인(양귀비, 아편, 코카잎에서 추출)
- ☞ **대마(1종)** : 대마와 그 수지 및 이들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
- ☞ **임시마약류(94종)** : 카트 등

◆ **주요 마약류**

			
필로폰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대마수지	MDMA(엑스터시)	케타민

※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청(홈페이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18]

생활실태서

Report on Current living condition

[]	난민인정자(Recognized Refugee)	[]	인도적체류허가자 (Individual with Humanitarian status)	[]	난민인정자 등 가족 (Family member of Recognized Refugee and etc.)	
신청자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성명(Name in Full)			생년월일(Date of Birth)	성별(Gender)	
				외국인등록번호(Resident registration No.)		
	국적(Nationality)			종교(Religion)		
	대한민국 내 주소(Address in Korea)			전자우편(E-mail)		
				연락처(Contact Number)		
거주형태(Residential Type)						
<input type="checkbox"/> 자가(One's own house) <input type="checkbox"/> 전세(Lease on a deposit basis) <input type="checkbox"/> 월세 Monthly Rent <input type="checkbox"/> 기타 (Others)						
취업사항 (Vocational Information)	구분	<input type="checkbox"/> 정규직(Full-time)		<input type="checkbox"/> 시간제(Part-time)		
	근무처 명(Name of Work Place)			연락처(Tel. No. of Workplace)		
				근무처주소(Address of Workplace)		
	월평균 급여액 (Monthly Income)					
지원 사항 (Information on Assistance)	생계비 지원 (Living Expense Assistance)	구분 (Content)	기초수급대상 (Area(s) for Basic Assistance)		기관 지원 (Assistance by Organization(s))	개인 지원 (Assistance by Individual(s))
			<input type="checkbox"/> 생계(Living Expense), <input type="checkbox"/> 급여 (Wage), <input type="checkbox"/> 의료 (Medical Assistance)		ex)난민인권센터, UNHCR 등 (NANCEN, UNHCR, etc),	
			지원금액 (Amount of Assistance)			
	현물지원 (Assistance by Materials)					
동반가족 (Accompanying Family)	성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관계 (Relation)	직업 (vocation)	주소 및 연락처 (Address and Contact No.)	
작성일(date) 20 . . .			서명(Signature)			

[붙임20]

난민 불인정 사유서	
신청인 성명	
난민 신청 사유	
심사결과	
이 유	
년 월 일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안내문

- 인도적체류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업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 취업허가 신청당시 인도적체류자 자격(G-1-6)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유의사항
 - (취업제한 업종)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음
 - (전문분야 취업) 외국어강사, 통역 또는 번역 등 전문적인 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격증,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취업허가 절차	
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사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수수료(12만원) -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서류 ▪ 제출장소 :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② 허가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받은 경우 : 허가 받은 업종·기간 내에서 취업 시작 ▪ 허가 받지 못한 경우 : 업종변경, 서류보완 등 이후 재신청
③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①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사전 신청 절차에 따라 사전 신청 ※ 허가받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롭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 취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Notice on Permission for Employment of Humanitarian Status Holders

- **If a humanitarian status holder meets all conditions below, he/she may obtain permission for employment and engage in wage-earning employment.**
 - the person is given permission to stay on humanitarian grounds
 - the person is on the G-1-6 visa when applying for permission for employment
- **Note**
 - (Prohibited Places for Employment) A refugee status applicant may be prohibited from working in a business which may be prejudicial to good public morals and public order such as speculative and gambling businesses, or in a business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it necessary to prohibit employment activities.
 - (Employment in professional field) If a refugee status applicant wishes to work in a field which requires professional skills including as foreign language instructor, interpreter or translator, he/she shall meet the qualifications such as certificates stipulated in relevant laws.

Procedures to Obtain Permission for Employment	
①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activities beyond your given status prior to the start of 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quired docu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lication, fees(KRW 120,000) - Passport, Residence Card - Employment contract, work related documents such as business licenses ▪ Where to Submit : Local immigration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your place of stay
② Decision whether to grant permi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 permitted : Engage in wage-earning employment within the permitted field and period ▪ If not permitted : Re-apply for permission for activities beyond your given status after changing business field or complementing documents
③ If workplace has chang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activities beyond given status as mentioned in ① ※ This shall apply even if you are within the authorized period of stay.

※ You may be subjected to punishment for violating relevant laws if you engage in wage-earning employment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for employment.

الإعلان الخاص بتصريح العمل لطالب اللجوء

- يستطيع اللاجئ الأنساني أن يحصل على تصريح العمل في حال توفر كل الشروط التالية
 - عندما حصل على تصريح الإقامة كاللاجئ الإنساني
 - عند التقدم للحصول على تصريح العمل، يجب أن يحتفظ بصفة اللاجئ الإنساني (G-1-6)

○ ملاحظات

- (أنواع الوظائف المحدودة) وأنشطة المضاربة وغيرهما من الأعمال ضد التقاليد والعادات الأخلاقية أو النظام الاجتماعي. وقد يفرض وزير العدل الحد من العمل وفقا لقراره
- (الحصول على العمل في المجالات المتخصصة) عندما يريد طالب اللجوء أن يعمل في المجالات المتخصصة بما فيها مدرس اللغة الأجنبية أو المترجم وغيرهما، يحتاج إلى المؤهلات التي ينص عليها القانون ذو الصلة. ويحتاج إلى الشهادة ذات الصلة

إجراءات تصريح العمل في كوريا الجنوبية

<p>طلب تصريح العمل مسبقا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الوثائق أو الأوراق - استمارة طلب تصريح العمل، العمولة (١٢٠٠٠٠ كوري ون) - جواز السفر، بطاقة التسجيل للأجانب (أي دي كارد) - الوثائق المتعلقة بالأعمال بما فيها عقد العمل، وشهادة تسجيل الأعمال وشهادة السجل التجاري وغيرها ▪ مكان التقديم - مكتب الهجرة القريب من عنوانكم
<p>قرار عن إعطاء تصريح العمل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في حال تصريح العمل: من ممكن أن يبدأ العمل في أنواع الوظائف المسموحة في الفترة المسموحة بها ▪ في حال عدم تصريح العمل: يجب أن يقوم بإعادة الطلب بعد تغيير أنواع الوظائف وتكميل الوثائق الإضافية
<p>في حالة تغيير مكان العمل 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يجب أن يقوم بتقديم الطلب مسبقا طبقا لإجراءات رقم ① ※ يجب أن يحصل على تصريح العمل مجددا حتى لو لم تنتهي فترة العمل المسموحة بها

إذا عمل طالب اللجوء بدون تصريح العمل، ستعاقب حسب القانون المتعلق به ※

Autorisation de travail du bénéficiaire du statut humanitaire

○ **Tout bénéficiaire du statut humanitaire peut solliciter une autorisation de travail s'il satisfait les conditions suivantes**

- La demande est en cours d'instruction depuis plus de 6 mois et
- Le demandeur est bien titulaire du statut humanitaire (G-1-6) au moment du dépôt de sa demande d'autorisation de travail

○ **Remarques**

- (Métiers limités aux étrangers) Des emplois susceptibles de nuire à l'ordre public et aux bonnes mœurs, notamment ceux se rapportant au jeu de hasard, et toute activité que le ministre de la Justice juge nécessaire de contrôler l'accès sont limités aux étrangers.
- (Secteurs professionnels) Pour l'exercice des emplois professionnels, notamment l'enseignement des langues étrangères, l'interprétation ou la traduction, le demandeur doit avoir obtenu au préalable le permis exigé et satisfaire les qualifications requises par la loi.

Procédure de la demande d'autorisation de travail	
① Demande préalable de travail pour les activités non couvertes par le statut de séjo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èces justificatives à joindre à la deman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mulaire de demande), frais(120,000 KRW) - Passeport, carte de résident étranger - Contrat de travail, immatriculation de l'entreprise au Registre du Commerce ■ Lieu du dépôt de la demande : Bureau local d'immigration territorialement compétent en fonction de votre domicile
② Autorisation de trava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 la demande est acceptée, : Le demandeur peut travailler dans la limite du secteur et de la durée autorisés ■ Si la demande est rejetée, : Le demandeur peut déposer sa nouvelle demande en changeant le secteur de travail ou en complétant son dossier
③ Changement du lieu effectif de trava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ut changement du lieu de travail devra d'office faire l'objet d'une nouvelle demande préalable suivant la procédure de ① « Demande d'autorisation préalable de travail pour les activités non couvertes par le statut de séjour » ※ NB : Le demandeur devra recevoir une nouvelle autorisation de travail même si la date de validité de son permis de travail n'est pas encore arrivée à son terme.

※ NB: L'exercice de toute activité sans autorisation de travail préalable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une activité illégale et faire l'objet d'une sanction.

[붙임24-1 (영어)]

난민인정신청 철회서

(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인적사항 (Withdrawer's Details)	
국적(Nationality)	
성명(Full Name)	
생년월일(연. 월. 일) Date of birth(yy.mm.dd)	

철회사유 (Reasons of Withdrawal)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I wish to withdraw my application for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due to the reasons stated below;

■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세요 (중복체크 가능)

Please check the relevant spaces (Multiple checks are allowed.)

- 개인사정으로 완전출국 (Departure due to personal circumstances)
- 난민 신청 사유 소멸 (Ceased circumstances to apply for refugee status)
- 다른 자격으로 체류 허가 (Permission to stay with different status)
- 기타 (Other) :

철회일자 (Date of withdrawal)	
철회자 성명/서명 (Name/Signature of withdrawer)	
확인자 성명/서명 (Signature of official in charge)	

※ 인적사항, 철회사유,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 기재 요

※ The blanks for withdrawer's details, reasons of withdrawal, name and signature shall be filled in by the withdrawer.

[붙임24-2 (중국어)]

난민인정신청 철회서

(撤回难民认定申请申请书)

인적사항 (个人信息)	
국적 (国籍)	
성명 (护照或其他旅行证件 上的英文姓名)	
생년월일(연. 월. 일) 出生日期 (年. 月. 日)	

철회사유 (申请原因)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本人因以下原因申请撤回难民认定申请。

■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세요 (중복체크 가능)

请在相应的[]内打钩 (可选多项)

- 개인사정으로 완전출국 (因个人原因彻底从韩国离境)
- 난민 신청 사유 소멸 (难民认定申请理由消失)
- 다른 자격으로 체류 허가 (已获得其他在韩滞留资格)
- 기타 (其他, 请详细说明):

철회일자 (申请日期)	
철회자 성명/서명 (申请人姓名/签字)	
확인자 성명/서명 (工作人员姓名/签字)	

※ 인적사항, 철회사유,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기재 요
※ 个人信息、申请原因、姓名及签字栏必须由本人亲笔手写

[붙임24-3 (아랍어)]

난민인정신청 철회서

سحب طلب اللجوء

인적사항 (المعلومات الشخصية للمنسحب)	
국적 (الجنسية)	
성명 (الاسم الكامل)	
생년월일(연. 월. 일) تاريخ الميلاد (سنة. شهر. يوم)	

철회사유 (أسباب السحب)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سأقوم بسحب طلب اللجوء للأسباب التالية

■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세요 (중복체크 가능)

يرجى اختيار الأسباب ذات الصلة (ممکن اختيارات متعددة)

- [] 개인사정으로 완전출국 (خروج نهائي من كوريا بسبب الشؤون الشخصية)
- [] 난민 신청 사유 소멸 (الظروف المتوقعة لتقديم طلب اللجوء)
- [] 다른 자격으로 체류 허가 (حصول على إقامة لحالة مختلفة)
- [] 기타 (إلخ) :

철회일자 (تاريخ السحب)	
철회자 성명/서명 (اسم وتوقيع المنسحب)	
확인자 성명/서명 (اسم وتوقيع المسؤول الرسمي)	

※ 인적사항, 철회사유,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 기재 요

※ يجب كتابة المعلومات الشخصية وأسباب السحب والاسم والتوقيع بخط اليد

[붙임24-4 (불어)]

난민인정신청 철회서

(Retrait de la Demande pour la Reconnaissance du Statut de Réfugié)

인적사항 (Informations Personnelles du Demandeur)	
국적 (Nationalité)	
성명 (Nom de famille et prénom)	
생년월일(연. 월. 일) Date de naissance(aa.mm.jj)	

철회사유 (Raisons du Retrait)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Je souhaiterais retirer ma demande pour la reconnaissance du statut de réfugié pour les raisons suivantes;

■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세요 (중복체크 가능)

Veillez sélectionner les choix pertinents. (Les réponses redondantes sont possibles.)

- 개인사정으로 완전출국 (Départ pour des raisons personnelles)
- 난민 신청 사유 소멸 (Les conditions applicables pour la demande du statut de réfugié ne sont plus d'actualité)
- 다른 자격으로 체류 허가 (L'obtention d'un permis de séjour d'un autre statut)
- 기타 (Autres raisons) :

철회일자 (Date du retrait)	
철회자 성명/서명 (Nom de famille et prénom/ Signature du demandeur)	
확인자 성명/서명 (Signature du fonctionnaire en charge)	

※ 인적사항, 철회사유,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 기재 요

※ Les champs concernant les informations personnelles, les raisons du retrait, le nom, le prénom et la signature du demandeur doivent être remplis par le demandeur

[붙임24-5 (러시아어)]

난민인정신청 철회서 (Отмена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на статус беженца)

인적사항 (Сведения о заявителе)	
국적 (Гражданство)	
성명 (Фамилия.Имя.Отчество)	
생년월일(연. 월. 일) Дата Рождения(ГГ.ММ.ДД)	

철회사유 (Причины отмены)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Я хотел(а) бы отменить свое заявление о признании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по следующим причинам;

■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세요. (중복체크 가능)

Пожалуй ста, отметьте нужны вариант. (Можно отмечать несколько вариантов)

개인사정으로 완전출국

(Выезд из страны по личным причинам без возвращения)

난민 신청 사유 소멸

(Отсутстви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снований для проше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다른 자격으로 체류 허가

(Получение уже другого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в стране)

기타 (другие) :

철회일자 Дата заявления	
철회자 성명/서명 Ф. И. О/Подпись заявителя	
확인자 성명/서명 Ф. И. О/ Подпись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лица	

※ 인적사항, 철회사유,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 기재 요

※ Обязательно личное написание всех сведений и указание причин отмены.

[붙임25]

난민면접 녹음·녹화자료 열람 신청서

신청자 (Applicant)	성(Family Name)	명(Given name)	여권번호(Passport No.)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대한민국 내 주소(Address in Korea)		난민신청자와의 관계(Relationship)

신청 자료 (Information Requested)	<input type="checkbox"/> 녹음(Sound recording)	<input type="checkbox"/> 녹화(Video recording)
----------------------------------	--	--

신청 목적 (Purpose)	
--------------------	--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Applicant's Nam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Immigration Detention Center

[붙임26]

난민면접 녹음·녹화자료 열람 신청 접수증

신청자 (Applicant)	성(Family Name)	명(Given name)	여권번호(Passport No.)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대한민국 내 주소(Address in Korea)		난민신청자와의 관계(Relationship)

신청 자료 (Information Requested)	<input type="checkbox"/> 녹음(Sound recording)	<input type="checkbox"/> 녹화(Video recording)
----------------------------------	--	--

일시 및 장소 (Date & Place)	
---------------------------	--

기타사항 (Others)	
------------------	--

년(Year) 월(Month) 일(Day)

위와 같이 열람·복사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pplication for Perusal(Copying) has been received.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Immigration Detention Center

[붙임28]

출입국향 난민면담조사서				
참석자	난민신청자	성명	국적	생년월일
	담당공무원	성명		생년월일
	통역인	성명	국적	생년월일
	기 타	성명	국적	생년월일
		난민신청자와의 관계		
일 시	시 작	년 월 일 시 분		
	종 료	년 월 일 시 분		
	휴 식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장 소				
사용언어				
[안 내]				
<p>◆ 난민의 정의</p> <p>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p> <p>◆ 이 면담은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사실만을 진술해야 하고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의 진술을 증명하여야 합니다.</p> <p>◆ 신청자가 면담과정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면접이 종료된 후에 통역인을 통하여 진술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p> <p>◆ 신청자는 면담 중 휴식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공무원에게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	--	--

	시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면담조서 내용확인	본인 확인란	본인은 면담기록이 본인의 진술내용과 일치함을 통역인을 통하여 확인하고 서명함
		※

난민신청자	(서명)
통역인	(서명)
담당 공무원	(서명)
난민심사관	(서명)

[붙임29]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서	
신청인 성명	
난민 신청 사유	
회부심사결과	
이 유	
년 월 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	

처우고지 확인서 Confirmation

본인은 난민법 제30조 내지 제44조의 처우를 신청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I hereby confirm and certify that I have been informed the following details regarding an application for treatments pursuant to Article 30 and/or Article 44 of the Refugee Act.

1. 처우신청과 관련된 진술 및 제출한 자료가 모두 사실과 부합합니다.

All statements and materials submitted by the applicant regarding an application for treatments are true in all respects.

2. 만약 허위 진술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지급된 생계비 등 각종 지원이 중단 및 환수 될 수 있습니다.

If the statements or materials given is found to be false, it may result in termination and/or recollection of the support (e.g. paid living expenses, etc.).

3. 처우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n the event of a change of circumstance which may affect the eligibility evaluation for support, an additional material(s) must be submitted.

4. 처우심사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수신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I hereby agree to receive to eligibility evaluation result via SMS.

2000 Year 00 Month 00 Day

Name : (Sign or Seal)

Registration Number (Date of Birth) :

Chief of ○ ○ Immigration Office

Confirmation

إقرار

본인은 난민법 제30조 내지 제44조의 처우를 신청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أقر بأنني قد أبلغت بكافة التفاصيل المتعلقة بطلب دعم المعاملة وذلك طبقاً للمادة 30 و/أو المادة 44 من قانون اللاجئين.

1. 처우신청과 관련된 진술 및 제출한 자료가 모두 사실과 부합합니다.

1. كافة الأقوال والمستندات التي عرضها مقدم الطلب بشأن طلب دعم المعامات صحيحة من جميع النواحي.

2. 만약 허위 진술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지급된 생계비 등 각종 지원이 중단 및 환수 될 수 있습니다.

2. في حالة اكتشاف أن الأقوال والمستندات المقدمة زائفة, من الممكن أن يسفر ذلك عن إنهاء و/أو استرداد الدعم. (نفقات المعيشية المدفوعة, الخ)

3. 처우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في حالة تغيير الظروف التي من الممكن أن يؤثر في تقييم الأهلية للحصول على الدعم, يجب تقديم المواد الإضافية.

4. 처우심사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수신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4. وبذلك أوافق على تلقي نتائج تقييم الأهلية عن طريق الرسائل القصيرة.

00 Year/عام 0 Month/شهر 0 Day/يوم

○ Name/اسم : (توقيع أو ختم)

○ رقم التسجيل الأجنبي(تاريخ الولادة)/Alien Registration Number(Date of Birth)

Chief of ○ ○ Immigration Office

Déclaration sur l'honneur

본인은 난민법 제30조 내지 제44조의 처우를 신청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À l'occasion de ma demande conformément à l'article 30 et 44 de la Loi sur les réfugiés, j'ai lu et j'approuve les conditions suivantes:

1. 처우신청과 관련된 진술 및 제출한 자료가 모두 사실과 부합합니다.

- 1) Je déclare sur l'honneur que les informations fournies sont exactes et sincères.
- 2) Je confirme l'exactitude de toutes les informations figurant sur ce document.

2. 만약 허위 진술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지급된 생계비 등 각종 지원이 중단 및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1) Au cas où mes informations et documents ne seraient pas corrects, le versement de l'allocation sera annulé et/ou être remboursé.
- 2) Je m'engage à ne plus recevoir et/ou à rembourser le versement de l'allocation au cas où mes informations seraient inexactes ou falsifiées.

3. 처우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En cas de modification de ce dossier, je dois joindre les pièces justificatives au bureau local de l'immigration, puisque tout changement de ma situation peut avoir une conséquence sur l'examen de ma demande.
- 2) Ayant une conséquence sur l'examen de ma demande, tout changement de ma situation doit être averti avec les pièces justificatives au bureau local de l'immigration.

4. 처우심사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수신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Je suis d'accord pour recevoir un SMS annonçant le résultat de l'examen de ma demande.

00 Year 0 Month 0 Day

○ Name : (Sign or Seal)

○ Alien Registration Number (Date of Birth) :

Chief of ○ ○ Immigration Office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 누가 지원해 주나요..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가 지원합니다.

○ 누구에게 지원해 주나요..

난민 등* 및 그 자녀,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중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소송 중인 자 포함), 인도적체류자

○ 몇 번까지 지원해 주나요..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일부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회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원이 결정됩니다.

○ 어디에서 진료를 받나요..

전국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인증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시(군)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느 부분까지 지원해 주나요..

입원과 수술진료(단순 외래 진료는 제외)에 대한 진료비용의 90%가 지원되며, 10%는 본인부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시.도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무료진료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 ○○○-○○○-○○○○)

Information on Medical Service for the Underprivileged and Labor Migrants

○ Who provide the medical servic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unicipal Governments of Cities and Provinces of Korea provide the service.

○ Who is qualified for the service?

Among recognized refugees/refugee applicants, labor migrants and their children, female marriage migrants without the Korean nationality and their children, those who are not qualified for medical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ing a health insurance or a medical benefit service.

○ How many times the service can be provided?

Financial support for medical examination not exceeding 5 million won at a time is provided, but the person receiving support shall partially pay for the expenses. If medical examination expenses exceed 5 million won at a time, and if a person receives surgery for more than once, medical institutions determine whether to provide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after undergoing review.

○ Where should we go to enjoy the service?

Local hospitals/clinics, Red Cross hospitals nationwide, The National Medical Center, and medical agencies and hospitals certified by mayors and governors of each city and province for this project.

(Also, you can receive the service at ○○○ hospital/clinic in the city of ○○○)

○ What is the coverage of the medical service?

90% of expenses for hospitalization and surgery us covered, but the person receiving support shall pay for the 10% of expenses(an outpatient with minor ailment(s) are not included).

○ If you want more detailed information,

Please contact nearby local hospitals/clinics, Red Cross hospital, National Medical Center, the Health and Sanitation Division of local government, public health clinics, or free clinics for more information.

(Tel : ○○○-○○○-○○○○, ○○○-○○○-○○○○)

[붙임32-1]

의료지원 신청 위임장

위임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 사유	

수임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신청인(신고인)과의 관계	연락처

상기 위임인은 의료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위임인이 부담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날인)

법무부장관 귀하

유의사항

위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m²]

[붙임32-2 (영어)]

Medical Claims Agent Consent

Applica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Residence Card No. for the foreign national)
	Address	Contact No.
	Reasons	

Age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Residence Card No. for the foreign national)
	Address	
	Relation to the Applicant	Contact No.

The Applicant mentioned above authorizes the Agent to act on his or her behalf in matters related to medical benefits claims and agrees to undertake all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rising there from.

YYYY MM DD

Applicant

(Signature)

To the Minister of Justice

Important Note

Please note that the person completing this form will be subject to all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rising from any false, fictitious, or fraudulent statements or information provided therein.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